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관세청



**우리 화장품 산업이 이 가이드북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은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K-뷰티 열풍을 이끌며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K-뷰티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소프트파워로 자리 매김했습니다.

K-뷰티의 혁신적인 제품력과 트렌디한 감각은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제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자 주력 수출 품목으로 공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102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성장세는 2025년에도 이어져 1~3분기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한 85.2억 달러로 동기간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一面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복잡성이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존재 합니다. 올해들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각종 관세·비관세 조치를 새로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품목관세 부가 방침을 발표하여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화장품 용기 또한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화장품 산업의 대외 수출 환경 또한 점차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 시 필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HS(Harmonized System) 분류 문제는 화장품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까다로운 비관세장벽 중 하나입니다. HS 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로, 관세율 결정, FTA 등 국제 무역의 모든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복잡하고 다양한 성분 및 제형 특성상, 정확한 HS 코드를 적용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잘못된 분류는 통관 지연, 추가 비용 발생, 심지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세청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화장품 HS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북은 화장품의 주요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세부 품목별 HS 코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제 수출입 사례를 통해 코드 분류의 기준과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가이드북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장품 산업이 이 가이드북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두 주자로서 그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관세청장

이승우



Chapter

화장품 개요

1.1 서론 3

1.1.1 화장품 개요 3

1.2. 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 6

1.2.1 화장품의 정의 6

1.2.2 화장품의 분류 8

1.3 화장품과 피부미용 10

1.3.1 기초 화장 미용법 10

1.3.2 색조 화장 미용법 12

1.4 화장품의 품질과 보증 14

1.4.1 화장품의 5대 품질 요소 14

1.4.2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 15

1.5 화장품 연구와 개발 기술 16

1.5.1 화장품 산업의 특성과 연구 분야 16

1.5.2 연구 개발의 흐름과 미래 16



Chapter

화장품 품목분류 개요

2.1 화장품 품목분류 실무 가이드 19

2.1.1 HS와 품목분류 개요	19
2.1.2 화장품의 품목분류 개요	26
2.1.3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	29
2.1.4 화장품 분류 시 유의사항	34



Chapter

화장품 유형별 품목분류 사례

3.1 화장품류 품목분류 사례 요약 41

3.2 화장품류 품목분류 사례 42

3.2.1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42
3.2.2 목욕용 제품류	54
3.2.3 인체 세정용 제품류	62
3.2.4 눈 화장용 제품류	88
3.2.5 방향용 제품류	105
3.2.6 두발 염색용 제품류	115
3.2.7 색조 화장용 제품류	128
3.2.8 두발용 제품류	149
3.2.9 손발톱용 제품류	170
3.2.10 면도용 제품류	180
3.2.11 기초화장용 제품류	186
3.2.12 체취 방지 및 체모 제거용 제품류	232

Contents



Chapter

화장품 부자재 및 미용 도구 품목분류 사례

4.1 화장품 부자재	241
4.2 미용 도구 및 기기	261



Chapter

화장품 성분 및 원료물질 HS code 연계표

5.1 화장품 성분	301
5.1.1 수성성분	302
5.1.2 유성 성분	304
5.1.3. 계면활성제(surfactants)	313
5.1.4 고분자(polymers)	315
5.1.5 분말 및 색재	318
5.1.6 향료	323
5.1.7 보존제 및 기타 성분	325
5.2 화장품 원료 물질 설명자료 및 품목분류 가이드	329



Chapter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6.1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요약	371
6.2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373



Chapter

참고자료

7.1 품목분류 관련 검색자료	471
7.2 화장품 종별코드 및 유형	475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일 / 러 / 두 / 기

1. 본 가이드북은 HSK 2025 기준으로 작성된 HS 10단위 코드이며, 분류 근거는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의 회신 근거와 수출입물품의 분석 회보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 품목분류 사례는 화장품 유형별 및 미용 도구(소품과 부자재)와 원료 물질, 오류사례 등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였으며, 화장품 유형별 분류 사례 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 분류사례 33개, 원료물질 연계 HS코드 782개, 품목분류 오류사례 50개 등 총 952개를 등재하였습니다.
3. 본 가이드북에 수록된 품목분류 사례는 제시된 자료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성분이 추가되거나,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규정의 변경,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세계관세기구(WCO)의 결정 등에 따라 제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가이드북은 목원대학교 화장품공학과 양재찬 교수(『화장품학의 이해』 저자)의 감수와 자료 협조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1

Chapter

화장품 개요

1.1 서론

1.2 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

1.3 화장품과 피부미용

1.4 화장품의 품질과 보증

1.5 화장품 연구와 개발 기술





1장

서론



1.1 화장품 개요

1.1.1 시대적 변화와 화장품 산업의 성장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은 인류에게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였으며, 과거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일들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인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의(衣), 식(食), 주(住)의 기본 욕구를 넘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각종 시각 매체의 발달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미(美)'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제 생활의 기본 개념은 의, 식, 주를 넘어 '의 · 식 · 주 · 美'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인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식생활을 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화장품, 미용 등을 통해 아름다움과 건강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미와 관련된 화장품, 피부미용, 성형의료 등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미래 전망 또한 매우 밝습니다. 정부 또한 화장품 산업을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하고 국가 유망 수출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의 핵심 유망산업 중 하나로 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화장품학은 단순한 제조 기술을 넘어 계면과학, 콜로이드과학, 피부생리학, 약학, 고분자 등의 자연과학과 사회문화, 소비자 심리학 등의 인문 사회학, 그리고 색채와 디자인 같은 미적 감성이 융합된 종합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융합을 바탕으로 현대의 화장품은 새로운 기술과 개념이 적용된 수많은 제품으로 개발되어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움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2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발전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은 2000년 약사법에서 분리된 「화장품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기능성 화장품'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후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화장품과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발전은 계속되어 2017년에는 탈모 방지, 모발 색상 변화, 제모,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습, 튼살 완화 등에 도움을 주는 제품군까지 기능성 화장품의 영역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 확대에 따라 연구자들은 안전하고 유효한 신소재 개발과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화 예방과 젊음 유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첨단 신소재와 공법, 의료기술을 접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이미 글로벌 선진국 수준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품질력은 K-팝, K-드라마 등 한류(Korean Wave)의 강력한 글로벌 확산과 시너지를 내며 화장품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은 전통적인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극적인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핵심 성장 축으로 부상하며 역대급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0억 달러(약 15조)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한국 화장품 산업은 15년 이상 높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한국은 수출 금액이 수입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화장품 강국(Beauty Powerhouse)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1.3 화장의 기원과 목적

화장은 인류의 역사와 그 시작을 함께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최초의 유적은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 왕조 묘에서 발견된 지방에 향을 넣은 화장수와 화장경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경우, 만주의 읍루인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돼지기름을 몸에 발랐다는 기록이 최초이며, 낙랑시대 고분벽화 속 눈썹 화장을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오래전부터 화장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화장을 했던 목적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햇빛, 해충, 추위 등 자연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읍루인들이 돼지기름을 바른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종교적 목적입니다. 신이나 악마의 존재를 믿었던 고대인들은 마귀를 쫓거나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과 신체에 색을 칠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미적 본능입니다. 인간 본연의 예뻐지고 싶은 욕망과 결점을 감추고 싶은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구분 및 위계 구분입니다. 남녀의 구분,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구분을 위해 화장을 한 사례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화장의 목적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체를 청결하고 매력적으로 가꾸어 돋보이는 것, 둘째는 결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부각 시켜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 셋째는 자외선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등이 목적이며, 마지막으로 미백, 주름 개선, 노화방지 등의 화장품과 의료적인 처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아름답게 나이 들고자 하는 '웰-에이징'의 욕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대의 화장은 심리적 만족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부여하여 사회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게 돋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화장품의 정의 및 분류



2.1 화장품의 정의

2.1.1 어원적 정의

영어 단어 'Cosmetics'는 '정돈하다, 장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머리, 피부, 안색을 좋게 하기 위한 조정품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유래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 신전에 향료를 바치던 노예 집단 'Cosmete'에서 유래했다는 설이고, 둘째는 자신의 결점을 제거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어야 한다는 그리스인들의 사상인 'Kosmetik (조화)'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통상적으로 화장품은 방향 화장품(향수 등)을 포함하는 '향장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2.1.2 법적 정의 및 분류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은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②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④ 모발의 색상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화장품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 가. 천연 화장품: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이며,
- 나.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각각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하고 있으며
- 다. 맞춤형 화장품: 기존 화장품에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추가·혼합하거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1.3 의약품 및 의약외품과의 차이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므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이며, 질병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이나 위생·예방이 목적인 의약외품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 1.1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비교

구분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사용대상	정상인	환자	정상인
사용목적	청결, 미화, 건강유지	질병진단, 치료	위생, 예방
사용기간	장기간, 지속적	일정기간	장기간, 지속적
사용부위	모든 부위	특정 부위	특정 부위
사용방법	외용제	내, 외용제	내, 외용제
성분표시	전성분	유효 성분	유효 성분
부작용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부분적으로 허용	원칙적으로 없어야 함
처방	임의 사용 가능	의사 처방	임의 사용 가능
제품			

2.2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은 사용 목적과 부위, 구성 성분, 기술적 특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2.2.1 사용 부위 및 목적에 따른 분류

- 가. 기초 화장용 (Skin Care): 세안, 정돈, 피부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수렴, 유연화장수, 로션, 크림, 에센스 등이 포함된다.
- 나. 색조 화장용 (Make-up): 결점 은폐 및 장점 부각을 위한 마무리 화장품으로,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나뉜다.
- 다. 두발 화장용: 모발을 세정, 정발, 보호하는 제품과 퍼머넌트웨이브(permanent wave) 및 염모제가 있고 탈모방지제나 두피 가려움 방지용 제품도 있다.
- 라. 바디(Body) 등 인체 세정용: 얼굴 외 신체 피부에 사용하며 세정, 방취, 제모, 비누 및 목욕 용 제품이 있다.
- 마. 방향용: 향기를 발산하는 제품으로 주로 바디에 사용되나 때에 따라서는 두발, 귀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향의 함량에 따라 향수, 오데 코롱, 샤워 코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바. 기타: 면도용, 영·유아용, 체취 방지용 등이 있다.

표 1.2 화장품 유형

화장품 유형	사용목적	주요제품
기초 화장용	세정, 정돈, 보호	수렴, 유연화장수, 에센스, 로션, 크림, 오일, 팩 등
색조 화장용	정돈, 보호	볼연지, 페이스파우더, 크림파운데이션, 립스틱 등
눈 화장용	정돈, 보호	아이브로펜슬,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
손발톱용	정돈, 보호	베이스코트, 네일에나멜, 네일폴리시, 네일크림 등



화장품 유형	사용목적	주요제품
목욕용	세정, 보호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소금류등
두발용	세정, 정발, 탈모 방지	헤어컨디셔너, 헤어토너, 헤어크림, 샴푸, 린스, 포마드 등
두발 염색용	염모, 탈색	헤어틴트, 컬러스프레이, 염모제, 탈염·탈색용제품 등
인체 세정용	세정	폼클렌저,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화장비누 등
면도용	세정, 정돈, 보호	프리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폼, 애프터세이브로션 등
방향용	방향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등
영, 유아용	세정, 정돈, 보호	샴푸, 린스, 스키н, 로션, 오일 등
체취 방지용	정돈, 보호	데오도런트,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
체모 제거용	정돈, 보호	제모왁스,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

2.2.2 기타 분류 기준

기술적 특징에 따라 가용화 제품, 유화 제품, 분산 제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분에 따라 한방, 유기농, 천연, 발효, 바이오 화장품 등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3장

화장품과 피부미용



화장품은 피부 건강 관리와 미용 효과 부여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만족을 충족시키는 제품입니다. 미용 효과는 사용자의 피부 특성과 제품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피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1 기초 화장 미용법

기초 화장은 세안, 정돈, 영양의 3단계로 구분되며 아침과 저녁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그림 1.1 기초 화장 미용 순서



3.1.1 세안 단계 (Cleansing)

- ① 유성 세안제: 클렌징은 피부 세정을 목적으로 피지나 먼지, 각질 및 색조 제품의 유성 성분을 깨끗이 제거하는 데 사용한다.
- ② 수성 세안제: 일반 비누보다 자극이 적으며 영양오일, 고단백질, 보습제, 보호제 등이 함유되어 세안 후 피부 당김을 방지하고 유성 세안제의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 ③ 세정용 화장수: 세안 제품의 잔여분 제거 및 피부에 유연 효과를 부여한다. 화장솜에 적당량을 덜어 피부 결을 따라 닦아낸다.

3.1.2 정돈 단계 (Toning)

- ① 마사지 크림: 피부를 마찰하여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부의 피로 해소 및 영양 공급을 한다. 3~5g 정도의 충분한 양을 사용하여 피부 결 방향으로 3~5분간 마사지한 후 닦아낸다.
- ② 팩: 수분 보충, 혈행촉진, 이물질 제거 효과가 있다. 온도가 낮은 부위(양볼→턱→코→이마)부터 바르고 건조 후 위에서 아래로 제거한다. 주 1~2회가 적당하다.
- ③ 수렴 화장수: 마사지와 팩 후 이완된 모공을 축소시켜 피부 결을 다듬어 주며 지나친 피지와 땀의 분비를 조절하여 준다. 화장솜에 충분량을 적셔 두드리듯 바른다.

3.1.3 영양 단계 (Nutrition)

- ① 에센스: 보습성분, 유연성분, 기름성분 등 농축 영양 성분을 함유하여 빠른 효과를 주며 피부 친화력을 증진한다.
- ② 보습 유액: 수분, 유분, 보습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의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 ③ 아이크림: 얼굴 중 가장 민감한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전용크림으로 눈가의 잔주름을 예방하여 준다.
- ④ 영양크림: 피부에 영양 공급 및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며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준다.

3.2 색조 화장 미용법

색조 화장은 맑고 투명감 있는 피부에 개성을 살리고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하여 색채효과 및 음영 효과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화장의 모든 기교와 방법이 이에 속하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가리며 개성미를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색조 화장을 통해 자신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Time), 장소(Place), 목적(Occasion)인 T.P.O.에 맞게 연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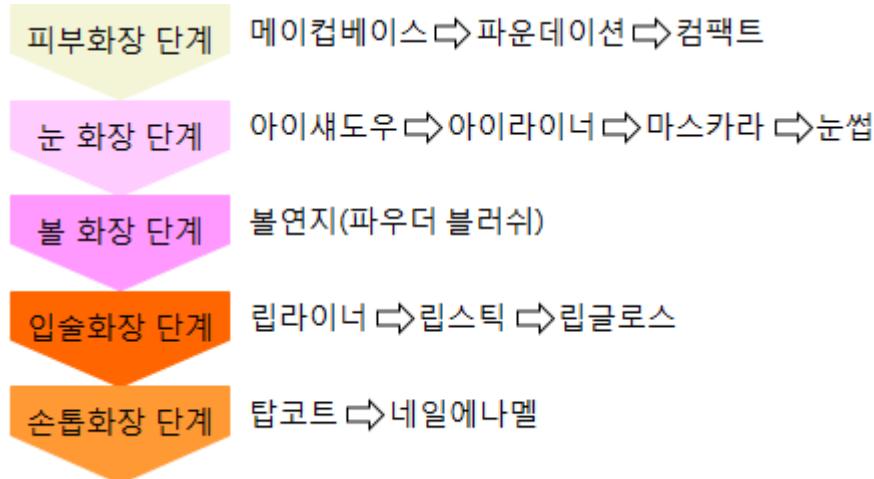


그림 1.2 색조 화장 미용 순서



3.2.1 베이스 메이크업

- ①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색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어 깨끗한 피부를 표현해 주고 파운데이션의 밀착감과 지속성을 높여 준다. 진주알 크기만큼 덜어 펴 바른다.
- ② 파운데이션: 피부의 기미, 주근깨, 잡티 등 결점을 커버하여 아름다운 피부색을 표현한다. 피부색과 조화되는 색상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 색을 섞어 사용한다.
- ③ 페이스 파우더: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제거해 주어 깨끗하고 차분한 피부로 표현해 주며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3.2.2 포인트 메이크업

- ① 눈썹: 개성에 맞는 눈썹을 그려주어 얼굴에 맞는 인상과 풍부한 색감을 준다.
- ② 아이섀도: 눈에 아름다운 색감과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나타내며 개성과 분위기에 따라 인상적인 눈매를 연출한다. 경계선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감 있고 섬세하게 펴 발라준다.
- ③ 아이라이너: 눈매를 선명하게 한다. 액상형과 펜슬형을 이용하여 눈의 형태에 맞게 그린다.
- ④ 마스카라: 속눈썹을 길고 짙게 표현한다. 위아래 속눈썹을 꼼꼼히 쓸어준다.
- ⑤ 볼 화장 (Blush): 혈색을 부여하고 얼굴 윤곽을 수정한다. 광대뼈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펴 바른다.
- ⑥ 입술 화장: 입술 윤곽을 잡고 안을 채워 색감과 생기를 부여하며 입술 보호 효과도 있다.
- ⑦ 손톱 화장: 계절과 의상 등을 고려하여 네일 에나멜을 바른다.

4장

화장품의 품질과 보증



화장품은 매일 장기간 반복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품질 관리는 정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정성적 평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4.1 화장품의 5대 품질 요소

4.1.1 안전성 (Safety)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다. 의약품처럼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기에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합니다.

4.1.2 안정성 (Stability)

화장품은 물과 오일이 섞인 유화 제형이나 가용화 제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리화학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분리, 침전, 변색, 변취, 미생물 오염 등의 품질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유효 성분의 효능 감소를 막기 위해 캡슐화, 리포솜 등의 안정화 기술이 적용됩니다.

4.1.3 유효성 (Efficacy)

소비자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눈에 띠는 미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의약품에 비해 작용이 경미하지만, 소비자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고 체감 가능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1.4 사용성 (Usability)

피부에 발랐을 때의 발림성, 흡수성, 촉촉함, 향취 등 감각적인 요소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 중 하나이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1.5 이미지 (Image)

화장품은 심리적 만족을 주는 감성 상품이므로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성분, 효능, 포장 디자인 등이 결합되어 형성되며, 특히 '천연', '유기농' 등의 컨셉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2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

우수한 화장품 공급을 위해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 보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① 내용물 보증: 독성·자극 시험(안전성), 물리화학적·미생물 시험(안정성), 관능 시험(사용성), 효능 시험(유효성) 등을 수행한다.
- ② 용기 및 외장재 보증: 내용물과의 상용성, 내광성, 용출 시험, 내구성, 인체공학적 기능 등을 확인한다.
- ③ 표시 및 이미지 보증: 성분 표시, 법적 규제 준수, 친환경 및 윤리적 책임 등을 보증한다.

5장

화장품 연구와 개발 기술



5.1 화장품 산업의 특성과 연구 분야

화장품 산업은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성장하는 선진국형 산업으로, 단품종 소량생산, 저탄소 친환경, 지식기반 고부가가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며, 식품, 의약품, IT 기술과의 융합이 용이합니다. 다만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하며 소비자의 빠른 취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화장품 과학은 '융합 창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면과학과 콜로이드 과학을 기초로 하여 피부과학, 화학공학, 약리학, 감성공학, 소비자 심리학,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5.2 연구 개발의 흐름과 미래

화장품 개발은 단순한 배합을 넘어 정교한 계획과 전문 지식을 요구합니다. 내용물 연구에는 콜로이드 및 계면 화학이, 용기 개발에는 기계설계와 인체공학이, 생산에는 화학공학이, 마케팅에는 심리학이 활용됩니다. 최근에는 빠르고 확실한 효능을 위해 의료 기술을 접목하거나 신소재를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하며, 미래의 화장품 산업은 생명공학(BT), 의료산업,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Chapter

화장품 품목분류 개요

-
- 2.1 HS와 품목분류 개요
 - 2.2 화장품의 품목분류 개요
 - 2.3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
 - 2.4 화장품 분류 시 유의사항





1장

화장품 품목분류 실무 가이드



2.1 HS와 품목분류 개요

2.1.1. HS Code의 이해와 중요성

HS Code (Harmonized System Code)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상품 분류 체계로, 무역되는 모든 물품에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화장품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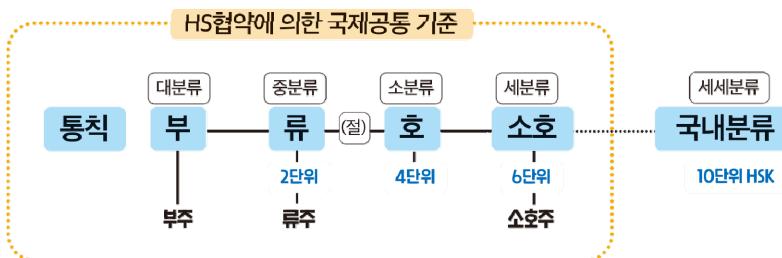
- ① 관세품목과 관세율 결정: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 및 내국세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 ② 수입 요건 확인: 국가별 수입 허가, 검역 등 규제 사항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 ③ 원산지 결정: 원산지의 결정과 특혜 또는 비특혜조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무역 통계: 국가 간 수출입 실적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사용된다.

2.1.2. HS 품목분류표의 구성

HS품목분류표의 기본 구성요소로 ①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② 부·류·소호의 주(Note), ③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의 번호(code) 및 물품명¹⁾(description)이 있습니다.

HS의 기본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앞부분에 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원칙을 정한 통칙(GIRs)이 제시되어 있고 분류체계는 부-류-(절)-호-소호의 수직적 분류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통칙과 함께 품목 분류의 지침이 되는 ‘주(註)’가 부·류·소호에 대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호와 소호의 물품명을 각각 ‘호의 용어(Terms of Heading)’, ‘소호의 용어(Terms of Subheading)’라고도 한다.



※ HS Code는 일반적으로 류(Chapter, 2자리) → 호(Heading, 4자리) → 소호(Subheading, 6자리)
→ 세분화 코드(10자리) 순으로 분류됩니다.

1) 통칙(通則)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 GIRs 또는 GRIs)은 ‘호의 용어’와 ‘주’ 등의 적용에 있어서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고 통일된 분류를 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주’나 ‘호의 용어’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며 HS 협약의 일부이므로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2) 주(註, Notes)

관세율표의 부·류·소호에는 품목분류의 기준을 제시하는 주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는 통칙, 호와 소호의 용어와 함께 법적구속력이 있는 HS품목분류의 3대 구성요소입니다.

주의 기능은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호나 소호의 분류 범위와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 품목분류 지침의 제시
- 경합 품목의 소속 명시

3) 부의 구성

HS는 제1부에서 제21부까지 총 21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에는 해당되는 물품을 간략히 표시하는 표제(예: 제2부 식물성 생산품)가 있으나, 부의 표제는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서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4) 류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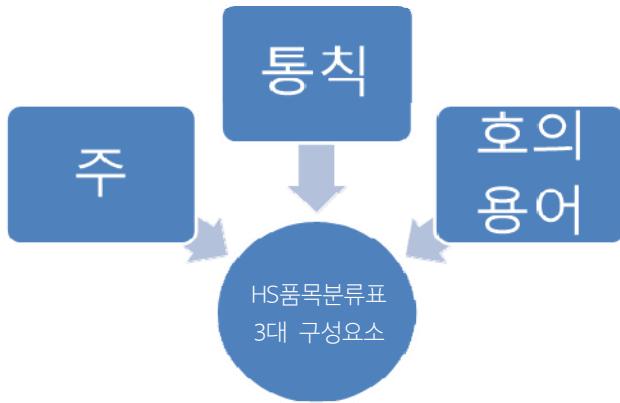
류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 총 97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77류는 유보된 상태이므로 현재는 96개의 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류의 표제는 그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간단한 용어로 표시한 표제(예: 제33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가 있으나, 품목분류 적용에 있어서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류는 부를 세분한 것으로 2단위 코드로 표기됩니다.

5) 호의 구성

호는 류 내에서 품목을 보다 세분한 것으로 4단위의 코드로 표기됩니다. 4단위 코드에서 앞의 2단위는 류의 번호이며, 뒤의 2단위는 해당 류 내에서 세분화된 물품그룹의 순서를 나타냅니다.

❖ 호의 용어

- 호의 용어란 4단위 코드번호와 연결하여 설정되어 있는 물품명을 의미한다.
- 호의 용어는 HS품목분류표의 구성요소로서 품목분류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 ‘호(소호)의 용어’는 ‘통칙’, ‘부·류·소호 주’와 함께 HS품목분류표의 3대 구성요소이다.



6) 소호의 구성

호(4단위)를 5단위 또는 6단위로 세분한 것으로서 HS는 소호까지를 포함하는 6단위 분류체계입니다. 대부분의 호는 여러 개의 소호로 세분되어 있지만 일부 호²⁾는 소호가 세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 5, 6단위 소호가 세분되어 있지 않은 호의 예: 제2716호, 제3826호, 제9619호, 제9620호 등. 이들 호의 소호 코드는 'XXXX.00' 형태로 표기된다.

❖ 소호의 용어

- 소호의 코드번호(5, 6단위)와 연결된 물품명을 의미한다.
- 소호의 용어는 호의 용어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 소호의 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 용어만을 서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우선 5단위 소호(level 1)의 용어를 비교하여 5단위 소호를 결정하고, 이후 6단위 소호(level 2) 용어만을 고려하여 6 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 소호의 주

- 일부의 소호에 대해서는 주가 설정되어 있는데 당해 소호에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소호의 주가 부·류의 주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소호의 주가 우선 적용된다.
- 소호의 주는 호의 주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

2.1.3. 품목분류 개요와 절차

1) 품목분류의 개요

‘품목분류’라 함은 HS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를 근거로 하여 각 체약당사국에서 정한 관세율 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제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목분류는 관세부과뿐만 아니라 수출입승인(추천) 및 절차, 감면대상, 간이정액환급액, 원산지 결정 등 관세행정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들은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 관세율표 품목분류 접근방법

- ①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하여 충분한 지식으로 물품을 파악한다.
- ② 상품 설명서, 관련 자료를 찾아 물품의 대체적인 기능, 구성, 성상, 용도 등 물품의 주요 특성을 파악한다.
- ③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규정을 검토하고 특정한 품목번호에 특게되어 있는 품목 인지를 확인하며 다음의 참고자료를 활용합니다.



- WCO HS 해설서
- WCO HS 품목분류의견서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관세품목분류위원회·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례, 질의회신 등)
-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 수출입물품 분석사례
- 외국세관 분류사례(미국, EU, 일본, 중국 등)
- WCO Alphabetical Index(알파벳 색인서) 등

3) HS의 분류기준

HS는 동일한 원재료로부터 얻어지는 물품을 원칙적으로 동일한 류(Chapter)에 함께 분류하고 각 류 내에서는 생산 단계별 및 가공 단계별 분류 기준으로 하여 원재료 → 반제품(중간제품) → 완제품(최종제품) 순으로 호별 수직배열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이한 원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산 단계별 및 가공 단계별 분류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역거래의 특성상 다양한 상품을 각기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섬유, 플라스틱, 고무, 금속 등의 물품은 구성 재료에 따라 류(Chapter)가 결정되며, 상이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6부의 물품 등은 그 용도에 따라 제30류의 의약품, 제33류의 화장품, 제34류의 비누나 계면활성제의 물품으로 달리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원료를 기준으로 한 분류

동물성(제1부), 식물성(제2부), 광물성(제5부) 생산품 등

② 산업을 기준으로 한 분류

식품공업 제품(조제식료품·음료·주류 등 : 제4부), 피혁공업 제품(제41류~제43류), 신발류 산업제품(제64류), 섬유공업 제품(제11부: 제50류~제63류), 요업산업 제품(제69류), 유리공업 제품(제70류), 귀금속 제품(제71류), 철강공업 제품(제72류, 제73류), 비철금속 제품(제74류~제83류), 기계공업제품(제84류), 전기전자제품(제85류), 자동차산업 제품(제87류), 조선공업 제품(제88류), 항공기산업 제품(제89류)

③ 구성재료를 기준으로 한 분류

플라스틱제(제39류), 고무제(제40류), 목재(제9부), 종이제(제10부), 비(卑)금속제(제15부), 광물제(제5부, 제13부 등), 섬유제(제11부), 도자제(제69류), 가죽제(제42류), 코르크제(제45류) 등

④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의약품, **화장품**, 접착제, 완성가공제, 살균제, 살충제, 고무배합제, 부동액조제품 등

⑤ 가공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커피·차류는 제9류에 분류되며 추출물·에센스 제품의 경우는 제21류로 분류한다. 육과 어류의 훈제는 제2류 또는 제3류에 분류되며 이들을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

⑥ 가공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운반·보존을 위한 단순가공과 그 외의 가공에 의한 분류

⑦ 포장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소매용 포장·세트용 포장, 화학적으로 단일한 성분이라도 의약품이나 **화장품**, 살균 및 소독제로 소매용 포장한 것은 용도에 따라 물품을 달리 분류한다.

⑧ 품질(순도)을 기준으로 한 분류

어스컬러, 지방산, 지방성 알코올, 벤젠, 툴루엔, 크실렌, 나프탈렌 등은 순도 기준에 따라 물품을 달리 분류

⑨ 성분을 기준으로 한 분류

화학약품, 혼합조제품의 경우 성분에 따라 달리 분류.

⑩ 주 기능·주 용도를 기준으로 한 분류

복합기계, 다용도 기계, 다기능 기계, 기능단위 기계는 일반적으로 주 기능·주 용도에 따라 분류

⑪ 본질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혼합물·복합물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따라 분류. 예로 플라스틱과 가죽으로 만든 벨트의 경우 어느 재료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또는 가죽제품으로 분류한다.



4) HS분류를 위한 부속 간행물

① HS해설서(HS Explanatory Notes) - 관세청 고시

HS해설서는 HS협약의 일부는 아니지만, 세계관세기구(WCO)가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HS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지침서입니다. HS해설서는 HS품목분류표의 순서에 따라 각 호 단위로 해당되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분류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HS품목분류의견서(HS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 - 관세청 고시

WCO는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류를 위해 HS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를 중심으로 품목분류의견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품목분류 예규형식으로 HS의 번호순서에 따라 특정물품에 대한 설명과 품목분류 결정 내용, 물품 사진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WCO가 발행한 HS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의 영문 원본과 한글 번역본을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③ HS 알파벳색인서(HS Alphabetical Index) - 참고용

알파벳색인서(Alphabetical Index)는 신속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HS품목분류표와 해설서 등에서 취급한 품목의 명칭을 알파벳순으로 HS코드와 연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것은 품목분류의 편리를 위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여기서 찾아진 품목은 다시 호의 용어와 관련주, HS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품목분류를 정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2.2 화장품의 품목분류 개요

2.2.1. 화장품의 주요 품목분류 체계(제33류, 제3401호)

HS code	호의 용어(품명)	주요 품목 예시
3303	향수와 화장수(toilet waters)	향수, 오데코롱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스킨케어: 로션, 크림, 에센스, 팩,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아이크림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크라, 아이라이너, 매니큐어
3305	두발용 제품류	샴푸, 린스, 컨디셔너, 헤어 오일, 헤어 스프레이, 염색약, 파마약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 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	면도 크림, 애프터셰이브 로션, 개인용 탈취제, 거품 목욕용 제품, 실내 방향제
3401	① 비누, ②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	약용 비누, 바디 클렌징 등



2.2.2. 세부 품목별 HS Code 분류 예시 (6자리 기준)

HS Code는 6자리 이후부터 국가별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에 관련된 HS(제33류, 제3401호)를 토대로 세부 분류한 예시입니다.

HS code	소호(6자리)의 용어(품명)	주요 품목 예시
3303.00	향수와 화장수(toilet waters)	향수, 오데코롱
3304.10	입술화장용 제품류	립스틱, 립글로스, 립밤
3304.20	눈화장용 제품류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 메크업 리무버
3304.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네일 에나멜(매니큐어), 베이스 코트, 탑 코트
3304.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페이스 파우더, 압축 파우더, 볼연지 등
3304.99	기초화장용 제품류	로션, 크림, 에센스, 마스크 팩 등
	메이크업용 제품류	메이크업 제품류, 분장용 제품류
	어린이용 제품류	샴푸, 로션, 크림, 클렌징 워터
	기능성 제품류	선스크린, 피부 주름개선, 피부 미백 등
3305.10	샴푸	샴푸(액상, 고체 등 모든 형태)
3305.20	퍼머넌트 웨이빙용이나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퍼머넌트 웨이빙용 등
3305.30	헤어 래커	헤어 래커, 스프레이
3305.90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헤어 케어용(헤어 컨디셔너, 헤어토닉), 염색용(염모제, 헤어 컬러스프레이 등)
3307.10	면도용 제품류	애프터세이브 로션 등
3307.2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데오도란트,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3307.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소금류, 거품 목욕용 제품
3307.90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제모제, 마스크 팩, 외음부 세정제, 물티슈
3307.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	실내용 방향 조제품, 탈취 조제품
3401.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약용 비누, 화장 비누
3401.3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2.2.3. 화장품의 주요 규정

1) 제6부(제28류에서 제38류까지)의 주 규정

2.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

⇒ 위 규정에 따라 용도에 적합하게 소매포장한 물품은 “제3303호(향수)”, “제3304호(화장품)”,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 제3307호(그 밖의 화장용 제품류)”에 분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염모제로서 각각의 물품을 1제(알칼리제)와 2제(산화제)로 구성된 물품은 제3305호의 ‘두발용 제품류’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제33류 주 규정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 제6부 주2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3301호의 ‘정유’를 제외하고, 화장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물품은 화장품류에 분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 · 화장품 · 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 마스크 팩(peel-off, wash-off)은 제3304.99호의 ‘기초화장품’에 해당하지만, 화장품을 침투 시킨 부직포로 만든 마스크 팩은 제3307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2.3 화장품의 유형별 분류

2.3.1. 화장품 유형별 분류 및 기능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등 총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식약처 고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근거

1)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유아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피부 방어 기능이 제대로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피부에 쉽게 침투될 수 있다. 특히 각질층이 얇아 자극에 민감하며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아직 잘 발달되지 않아 피지 분비가 적고 유해물질 배출이 어려우며 쉽게 건조해진다. 유아용 화장품은 이러한 유아 피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영유아용 샴푸, 린스: 영유아의 두피 및 모발 세정, 컨디셔닝 제품
- ② 영유아용 로션, 크림: 영유아의 피부 보습 및 보호를 위한 제품
- ③ 영유아용 오일 : 강력한 보습 효과로 유아피부 건조방지 기능
- ④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의 몸을 씻는 데 사용하는 세정 제품
- ⑤ 영유아 목욕용 제품: 영유아의 목욕 시 사용하는 제품 (예: 거품 목욕 등)

2) 목욕용 제품류

- ①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목욕 시 물에 첨가하여 사용(혈행 촉진, 피부 청결 효과)
- ② 목욕용 소금류
- ③ 버블 배스 (Bubble Baths): 거품 목욕용 제품
- ④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 세정용 제품류

- ① 폼 클렌저(foam cleanser): 세안제로 촉촉한 감촉, 거품 생성이 우수하며, 사용 후 산뜻한 감촉 부여
- ② 바디 클렌저: 몸의 피부를 씻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 ③ 액체 비누: 손이나 얼굴 등을 씻는 액체 비누
- ④ 화장 비누: 손이나 얼굴 등을 씻는 고체 형태의 비누
- ⑤ 외음부 세정제: 여성의 외음부를 세정하는 제품
- ⑥ 물휴지: 인체를 닦는 용도의 물휴지 (단, 특정 위생/의료용 제외)
- ⑦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4) 눈 화장용 제품류

- ① 아이브로우(eyebrow) 제품: 눈썹을 정리하거나 색을 입히는 제품
- ② 아이 라이너 (Eye Liner): 속눈썹 바로 위에 가는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눈매를 강조하는 제품
- ③ 아이 셔도 (Eye Shadow): 눈꺼풀이나 눈꼬리에 색채와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부여
- ④ 마스카라 (Mascara): 속눈썹을 길거나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제품
- 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눈 화장을 지우는 제품
- ⑥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속눈썹을 퍼머하여 형태를 바꿔주는 제품
- ⑦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5) 방향용 제품류

- ① 향수: 방향성 화장품의 하나로 향료를 알코올에 혼합하여 만든 물품
- ② 콜롱(Cologne): 향료 농도는 3~5%로 15~20%의 증류수와 알코올 혼합물로 구성
- ③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6) 두발 염색용 제품류

- ① 헤어 틴트 (Hair Tints): 일시적 머리카락의 색을 바꾸는 제품
- ②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헤어를 간편하게 염색하는 제품
- ③ 염모제: 모발의 염색에 사용되는 성분(머리염색)



④ 탈염·탈색용 제품: 모발 내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색을 빼는 제품

⑤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7) 색조 화장용 제품류

색조 화장품은 기초화장품 사용 후 얼굴, 손톱 등 신체에 도포하여 색채감을 부여하여 피부색을 표현함으로써 아름답게 용모를 변화시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분된다.

① 베이스 메이크업(base make-up):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 기미 및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부여한다.

②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up): 입술, 눈 주위, 볼, 손톱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며 혈색을 돋보이게 하고 입체감을 표현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로 변화시킨다.

(1) 볼연지: 볼에 색을 입히는 제품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피부색을 밝고 자연스럽게 보이며, 화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포인트 메이크업 전에 얼굴색을 조절하거나 피부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잡티나 주근깨 등 피부의 결점을 은폐하는데 사용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기초화장품을 사용한 후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깔과 명암이 있는 얼굴을 한 가지 색조로 정리하는데 사용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메이크업 밀착하여 고정시켜주는 제품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입술에 색채 효과 부여하여 건강하며 아름답게 보이며, 입술 보호에 사용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립스틱을 바른 뒤 덧발라서 광택을 높여주는 제품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8) 두발용 제품류

모발 화장품은 두피 및 모발을 세정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두피 건강 및 모발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모발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화하여 세정을 기본으로 하고 탈모방지, 정발

효과, 비듬 방지,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등의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 ① 헤어 컨디셔너, 헤어 트리트먼트, 헤어 팩, 린스: 모발을 정돈,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영양 공급
- ②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두피 및 모발에 영양 및 보습을 주는 제품
- ③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 모발의 스타일링 및 세팅
- ④ 헤어 크림·로션
- ⑤ 헤어 오일
- ⑥ 샴푸: 모발의 오염을 제거하고 세정하여 두피와 모발을 청결하게 함
- ⑦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hair permanent wave): 모발의 형태를 바꾸는 제품
- ⑧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⑨ 흑채: 모발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제품
- ⑩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9) 손발톱용 제품류

네일 메이크업 제품은 손톱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화장료로 손발톱에 미관을 개선하는데 사용

- ①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손톱의 주름을 메워 다음에 사용할 네일 에나멜의 밀착성 증대
- ②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손톱에 색을 입히는 매니큐어
- ③ 탑코트(topcoats): 네일 에나멜의 피막 위에 덧발라서 광택이나 내구성 증대
- ④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손톱에 유분 및 수분을 공급하여 손상된 손톱 회복을 목적으로 사용
- ⑤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네일 에나멜 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막 형성 수지를 용해
- ⑥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10) 면도용 제품류

남성 피부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끈적임을 싫어하는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뜻하고 끈적임이 적고 흡수가 빠른 사용감이 요구되는 것이 남성용 화장품의 특징이다. 또한 남성은 여성과 달리 면도라는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도 전, 면도 후에 사용하는 면도용 화장품을 구분하고 있다.



- ①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 shave lotions): 면도 후 피부를 진정시키는 로션
- ②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면도 전 피부를 준비시키는 로션
- ③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면도 시 사용하는 크림
- ④ 셰이빙 폼(shaving foam): 풍부한 거품, 사용의 편리성, 털의 유연작용, 면도기의 미끄러짐 부여
- ⑤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11) 기초화장용 제품류

기초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① 피부의 청결, ② 피부의 유·수분 균형 유지, ③ 피부의 신진대사 촉진, ④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이다. 기초 화장품은 피부 기능의 정상화로 유·수분 불균형 및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에 따른 세정, 청결, 건조 방지, 보습, 탄력을 부여한다.

- 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피부의 청정작용과 수분을 공급 및 피부를 정돈함
- ② 마사지 크림
- ③ 에센스, 오일: 피부에 영양 및 보습을 공급하는 고농축 제품
- ④ 파우더
- ⑤ 바디 제품
- ⑥ 팩, 마스크: 피부에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워시 오프 타입 팩 등
- ⑦ 눈 주위 제품
- ⑧ 로션, 크림: 피부에 수분, 유분을 공급하여 피부의 보습, 유연 기능을 부여
- ⑨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⑩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⑪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12) 체취 방지용 제품류

- ① 데오도란트: 불쾌한 체취의 분비나 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화장품
- ②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13) 체모 제거용 제품류

- ① 제모제: 털을 녹여서 제거하는 물품
- ② 제모왁스: 물리적 제모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몸의 털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왁스
- ③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2.4 화장품 분류 시 유의사항

2.4.1. 화장품 분류상 주요 오류사례

1) 화장품(제3304호) vs 의약품(제3004호)인지?

제품의 용도가 피부 미용 및 관리가 아닌 ‘특정 피부질환의 치료나 예방의 목적’이 주가 될 경우는 제30류(의약품)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제33류의 해설서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를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예시) 당뇨병 환자의 혈액공급 부족에 따른 족부의 피부자극, 균열 예방용 크림(제3004호)

2) 폼 클렌저(바디클렌저)는 화장품(3304호)인지 vs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제3401호)인지?

폼 클렌저와 바디클렌저는 ‘기초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류이므로 일견 제3304호의 “화장품”에 분류할 수 있지만,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1호 나목에 “비누나 제3401호의 그 밖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33류의 분류에 앞서 제3401호 분류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6단위 소호까지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보다는 HS협약에 따라 우선 검토가 필요하며,



제3401호의 HS해설서에 따르면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 계면활성제가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액상형태의 물품인 품 클렌저와 바디 클렌저 제품은 제3401.30호에 분류해야 합니다.(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제3401.30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으로 거래되는 물품이므로 향후 제33류에 4단위 호 또는 제3304호의 6단위 소호로 편입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복합된 제품의 품목분류는?

예시 1) 아기 피부 및 모발 세척용 샴푸 젤(gel)



(유사물품)

WCO HSC 결정사례

(물품설명) 물, 유기계면활성제, 염화나트륨, 향료, 구연산, 부틸렌글리콜, 식물추출물 및 부형제를 함유한 것으로 500ml 병에 소매포장됨

상기 예시 물품은 유아용 제품으로 바디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물품(올인원)에 대한 것으로 통칙 제3다에 따라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가 아닌 제3401호(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품)의 최종호에 분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다목에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품(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예시물품은 제3305호에 분류한 사례입니다.

예시 2) 눈·입술 메이크업 제거용 액상의 제품

□ 눈입술 메이크업 리무버 품목분류 사례

(물품설명) Water, Cyclopentasiloxane, Poloxamer 184, Phenoxyethanol, Benzyl alcohol, Sodium citrate, Disodium EDTA,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액상(상층 청색, 하층 무색으로 분리 구분되어 있는 특성 있음)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예시는 눈화장과 입술화장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3다목에 따라 최종호인 제3304.20-9000호(눈 화장용 제품류)에 분류된 사례입니다.

4) 세트로 소매포장된 물품의 품목분류는?

예시 1) 샴푸와 컨디셔너, 트리트먼트가 소매용 세트인 물품

□ 국내 분류사례(품목분류2과-9665, 2019.12.6.)

①Travel Moisturizing Shampoo(50ml x 1ea), ②Travel Moisturizing conditioner(50ml x 1ea), ③ Travel Leave-in conditioning spray(50ml x 1ea)을 ④Cosmetic Bag(표면재질: PU)에 함께 넣어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 모발세정 및 영양공급 등

상기 예시 물품은 샴푸, 컨디셔너, 컨디셔너 스프레이 3종류의 물품을 화장품 케이스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 모두 두발용 제품류에 해당하지만, 통칙 제3호 나목(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 사례입니다. (①샴푸 : 3305.10, ②③ 컨디셔너 : 3305.90, ④화장품 백: 4202.32)



예시 2) 스킨케어 제품(바디로션)과 피부세정제(샤워젤)가 함께 구성된 물품

□ 독일 분류사례(DE19006/12-2, 2012.11.14.)

1) 유사한 용기, 2) 스킨케어 제품(바디로션), 3) 피부세정제(샤워젤), 4) 토일렛 린넨(메시 스펀지) 등으로 구성된 4종 세트

- the goods are neither meet a particular need or the exercise of a particular activity and thus does not represent the set represents in terms of AV 3 b), thus are classified with the goods separately,

상기 예시 물품은 용기, 바디로션, 샤워젤, 메시 스펀지 등으로 구성된 물품을 케이스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해당 호(제3304호 및 제3401호)에 분류된 사례입니다.

※ 화장품 특성상 ‘선물용이나 여행용’으로 소매 포장된 세트 물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제33류의 각 해당 호에 ‘함께 구성된 화장품의 세트 물품’에 대한 소호의 신설도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4.2. 화장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검토 시 유의사항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위해서는 물품의 기능(Function), 성분(Composition), 사용 용도(Use)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북은 화장품 관련 HS Code의 일반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 하지만, 최종 HS Code는 수출입을 진행하는 각 국가의 세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해당 국가의 품목분류 사례 또는 사전심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Chapter

화장품 유형별 품목분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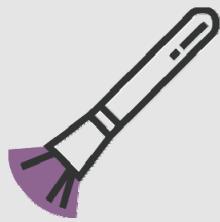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1. 3세 이하의 영유아용
2. 목욕용
3. 인체 세정용
4. 눈 화장용
5. 방향용
6. 두발 염색용
7. 색조 화장용
8. 두발용
9. 손발톱용
10. 면도용
11. 기초화장용
12. 체취 방지 및 체모 제거용





화장품류 품목분류 사례 요약

화장품 유형	HS	구 분	사례 유형
목욕용 제품류 * 물에 첨가하는 제품	3307.30	-	목욕용 염, 거품 목욕용 제품
인체세정용 제품류	3401.1	비누(고체형)	약용비누, 세안비누
	3401.30	계면활성제품 (액체,크림형)	폼클렌저, 바디클렌저&각질제거
	3402.50	계면활성제품 (분말,소매용)	세안 분말
	3307.90	-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
	3304.10	입술화장용	립스틱, 립스틱&볼연지, 립글로스, 립밤
색조·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20	눈화장용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속눈썹 영양제, 속눈썹 코팅제, 입술&아이메이크업 리무버
	3304.30	손발톱용	매니큐어, 네일 에센스, 네일풀리시 리무버
	3304.91	가루형 제품	볼연지, 아이섀도&볼연지, 페이스 파우더, 파우더형 팩
	3304.99-1000	기초화장용	토너, 마사지크림, 에센스, 보습오일, 페이스트형 팩, 결형 팩, 로션, 크림, 핸드크림, 핸드&바디로션,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밤, 필러
	3304.99-2000	메이크업용	메이크업 베이스, 바디페인팅, 분장용제품
	3304.99-3000	어린이용	로션, 크림, 클렌징워터
	3304.99-9000	기능성화장품	기능성 크림, 기능성 아이크림
	3307.90	-	부직포형 팩
	3305	케어용	헤어컨디셔너, 헤어토닉, 헤어크림, 헤어오일, 샴푸(탈모방지포함), 린스, 샴푸&바디클렌저, 두피스크럽, 헤어팩
두발용 제품	3305	스타일링용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헤어젤, 스트레이트닝용 제품
	3305	염색용	헤어 컬러스프레이, 염모재, 염색&트리트먼트, 헤어 파운데이션
면도용 제품	3307.10	-	에프터셰이브 로션
방향용 제품 *인체에 사용 제품	3303	-	향수, 화장수
체취방지용 및 체모제거용 제품	3307	-	인체용 탈취제, 땀 억제제, 제모 왁스



1장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영유아용 로션	3304.99-3000
2	영유아용 크림	3304.99-3000
3	영유아 클렌징 워터	3304.99-3000
4	영유아용 샴푸, 바디 클렌저 겸용	3305.10-0000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3307.30-1000



1장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의 종류

-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 3) 영유아용 오일
-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 유아용 화장품 개요

유아의 피부는 성인에 비해 피부 방어 기능이 제대로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피부에 쉽게 침투될 수 있으며 각질층이 얇아 자극에 민감하며 피지선과 땀샘 기능이 아직 잘 발달되지 않아 피지 분비가 적고 유해 물질 배출이 어려우며 쉽게 건조해진다. 유아용 화장품은 이러한 유아 피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되어야 한다.

3.1.1. 유아 비누

유아 비누는 유아 피부에 가급적 자극을 줄이도록 약산성에서 중성이 되도록 하며 세정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피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건조하거나 아토피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유아에게는 비누 사용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다.

3.1.2. 유아용 파우더

탈크가 주성분으로 항균 효과가 있는 징크옥사이드가 같이 배합된다. 유아는 배설물이나 땀과 마찰에 의해 피부의 짓무름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유아용 파우더는 이러한 자극을 방지하고 피부를 뽀송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1.3. 유아용 오일

미네랄오일과 식물성 오일이 배합되며 항산화 성분을 첨가하기도 한다. 목욕 후나 건조한 피부에 사용하여 유성 막을 형성하여 빠르고 강력한 보습효과를 주어 유아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고 방어 기능을 도와준다.

3.1.4. 유아용 크림 및 로션

피부에 보습 효과를 부여하여 건조하기 쉬운 유아의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품으로 피부 폐쇄막 형성을 위한 성분과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을 배합한다. 아토피성 피부를 가진 유아는 보습 효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1.5. 유아용 샴푸

유아의 모발은 두피에 피지 분비량이 적고, 가늘어서 순하고 적당한 세정력을 가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보습 효능이 있으면 좋다.

3.1.6. 유아용 목욕제

유아 피부의 거칠어짐을 예방하고 목욕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 보습 성분이 강화된 목욕제가 요구된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 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3000			어린이용 제품류
9000			기타
3305			두발용 제품류
10 0000			샴푸
20 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30 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90			기타
1000			헤어린스
2000			헤어크림
9000			기타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 · 목욕용 조제품 · 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 ·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1 Baby Moisture Lotion

HSK 2025	3304.99-3000	분류근거	-
유형	영유아용 로션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 조제한 백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펌프 용기에 담아 소매판장
- ❖ 용도 : 영유아의 피부 보습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증략)...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증략)... 미용크림 · 콜드크림 · 메이크업크림 · 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영·유아용 화장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3000호에 분류함



영유아용 제품류

1.2 영유아 피부 진정 보습용 크림

HSK 2025	3304.99-3000	분류근거	-
유형	영유아용 크림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민감성 피부를 위한 영유아 보습/진정용 크림을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 용도 : 영유아의 피부 보습 및 진정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약품은 제외한다)에는 미용크림 · 콜드크림 · 메이크업크림 · 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 · 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영·유아용 화장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3000호에 분류함.



영유아용 제품류

1.3 No-rinse Cleansing water

HSK 2025	3304.99-3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695
유형	영유아용 클렌징 워터	시행일자	2017.3.30

1. 물품설명

- ❖ 물, 글리세린,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카프릴릴글리콜, 벤조산나트륨, 향료 등을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 ml)
- ❖ 용도 : 영·유아의 피부 연화 및 진정(씻어낼 필요 없는 클렌징 워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 약품은 제외한다)에는 미용크림 · 콜드크림 · 메이크업크림 · 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 · 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영·유아용 화장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3000호에 분류함.



1.4 아기 피부 및 모발 세척용 샴푸 젤(gel)

HSK 2025	3305.10-0000	분류근거	HS 품목분류의견서 (관세청고시)
유형	영유아용 샴푸, 바디클렌저 겸용	시행일자	2023.1.20.

1. 물품설명

- ❖ 물, 유기계면활성제, 염화나트륨, 향료, 구연산, 부틸렌글리콜, 식물추출물 및 부형제를 함유한 것으로 500ml 병에 소매포장
- ❖ 용도 : 아기 피부 및 모발 세척용
- ❖ 적용 : 통칙 제1호(제34류 주 제1호 다목) 및 제6호 적용

2. 참고사항

- ❖ WCO 제68차 HSC 결정('21.09.)
 - 경합세번 : 제3305.10호 vs 제3401.30호
 - 분류사유 : 샴푸(제3305.10호)와 피부세척(제3401.30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의 제외(샴푸) 규정에 따라 제3305.10호에 결정
-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호, 2023.1.20.)에 수용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

1.5 BATH BALL

HSK 2025	3307.30-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6767
유형	영유아 목욕용 제품	시행일자	2019.1.21.

1. 물품설명

- ❖ 탄산수소나트륨, 구연산, 황산나트륨, 아밀로텍스트린, 폴리글리세린, 향료(딸기향), 색소 등으로 조제된 목욕용 염 내부에 플라스틱제 캐릭터 장난감을 넣고 구형 모양으로 성형하여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유아용 입욕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 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30호에는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III) 목욕용 조제품 예: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 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의 구성요소는 입욕제 내부에 플라스틱 장난감이 상호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품명, 성질, 중량, 가격 등)를 고려해 볼 때, 본 품은 입욕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 따라서 본 물품은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으로 조제된 입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본질적 특성)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30-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제품(예: 바디 클렌저 등)으로 소매포장한 물품은 제3401.30호에 분류



2장 목욕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목욕용 소금(가향한 것)	3307.30-1000
2	목욕용 오일	3307.30-2000
3	목욕용 정제	3307.30-2000
4	거품 목욕용 제품	3307.30-2000



2장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류의 종류

-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2) 목욕용 소금류
- 3) 버블 배스(bubble baths)
-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 목욕용 화장품

- 무기염류 목욕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목욕제이며 무기염류에 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물에 용해하여 이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품의 형태에 따라 분말, 정제형태가 있으며, 신체에 혈행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황산마그네슘과 알칼리 이온이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등이 배합된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면도용 제품류
	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9000		기타
	20	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

품목번호			품 명
			함한다)
41	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9	0000		기타
90			기타
	1000		제모제
	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4000		마스크 팩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 면도용 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

예: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 “면도 후에 사용하는(after-shave”) 로션 · 알룸블록(alum block)과 지혈막대(styptic pencil) 블록(blocks)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외한다(제3401호).

(II) 인체용 탈취제[personal(body)deodorant]와 땀 억제제(antiperspirant)

(III) 목욕용 조제품. 예: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 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IV) 실내용의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1) 실내용 향 첨가제와 종교의식용 방향제 : 이들은 보통 증발하거나 연소[예: “아가바티(Agarbatti)"]에 의해서 사용하며, 액체 상태 · 가루 상태 · 원추형 주머니 · 침투시킨 종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조제품 중의 특정한 것은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향기나는 (양)초(perfumed candle)는 제외한다(제3406호).

(2) 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소독력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실내용 조제 탈취제는 기본적으로 냄새를 없애는 화학적인 작용을 하는 라우릴 메타아크릴레이트



(lauryl methacrylate)와 같은 물질[예를 들면,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제]로 냄새를 물리적으로 흡수하도록 만든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소매용 경우에는 보통 에어로졸 캔(aerosol can)에 포장되어 있다.

냉장고 · 자동차 등에 쓰이는 탈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activated carbon)과 같은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제모제(depileratory)
- (2) 향낭(scented sachet)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 · 소독용 · 담금용(soaking) · 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 ·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1 Perfumed Bath Salt

HSK 2025	3307.30-1000	분류근거	분석47260-0416
유형	목욕용 염	시행일자	2003.4.1.

1. 물품설명

- ❖ Sodium hydrogen carbonate, Sodium carbonate, Sodium chloride, Sodium lactate, 색소, 향료 등으로 조성된 담청색 거친 분말을 수지팩에 소매포장한 것(20g)
- ❖ 용도 : 가향한 목욕용 염

2. 결정사유

- ❖ 본 품은 가향한 목욕용 염 제품으로 HS 관세율표 제3307호의 목욕용 조제품에 분류되므로 HSK 3307.30-1000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유아용 목욕용 염도 제3307.30호에 분류
- ❖ 제3307.30호의 “목욕용 염”에서 “염(Salts)”은 소금(염화나트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염기가 만나서 생성되는 모든 염을 의미함(예: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등)
- ❖ 소금 주성분에 소량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마사지용 비누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로 보아 제3401.30호에 분류(인체 세정용 제품류 참고)



목욕용 제품류

2.2 AlphaSoft

HSK 2025	3307.30-2000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2048
유형	목욕용 오일	시행일자	2004.11.10.

1. 물품설명

- ❖ Mineral oil(광유), PEG 200 Dilaurate, Lanolin oil, Castor oil, Fragrance, Green Dye 등으로 조제된 청색 오일상을 237ml 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향취가 있음
- ❖ 용도 : 목욕 시 욕조에 1~2 capsules를 첨가하여 사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제3307호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쿠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로 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록에 목욕용 조제품을 제3307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 (Ⅲ) 목욕용 조제품 그룹에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 목욕용 제품류"를 예시 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Mineral oil, Lanolin oil, Castor oil 등으로 조제한 목욕시 욕조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소매포장한 목욕용 제품이므로 HSK3307.30-2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피부 보습을 위해 몸에 바르는 바디오일, 마사지 오일은 제3304.99-1000호에 분류

2.3 Bath preparation

HSK 2025	3307.30-2000	분류근거	분석47260-1336
유형	목욕용 정제	시행일자	2003.12.17.

1. 물품설명

- ❖ Sodium dicarbonate, Ascorbic acid, Citric acid 등으로 조제·성형된 백색 원형 타블렛
- ❖ 용도 : 수돗물에 잔류하는 염소 제거와 비타민을 이용하는 기타의 목욕용 제품

2.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Sodium dicarbonate, Ascorbic acid, Citric acid 등으로 조제 · 성형한 백색 원형의 타블렛으로 수돗물에 잔류하는 염소 제거와 비타민을 이용하는 기타의 목욕용 제품으로 HS관세율표 제3307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 목욕용 제품이 분류되는 HSK 3307.30-2000호에 분류함



목욕용 제품류

2.4 BUBBLE GUM

HSK 2025	3307.30-2000	분류근거	분석47260-0857
유형	거품 목욕용 제품	시행일자	2002.12.21.

1. 물품설명

- ❖ Sodium polyethoxyethyl dodecylsulfate, Coconut diethanolamide, Bis(2-hydroethyl) coco alkyl amine acetate, Water, Citric acid, Salt, Spearmint oil 등으로 조제된 녹색 투명 점조 액상(100 ml Plastic bottle 소매판)
- ❖ 용도 : 거품 목욕용(욕조의 물에 소량 첨가)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7호 (Ⅲ)목욕용 조제품에 “거품목욕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HSK 3307.30-2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피부세척용의 유기계면활성제품(예: 바디클렌저)으로 소매판된 것은 제3401.30호에 분류할 수 있음



3장 인체 세정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외음부 세정제	3307.90-9000
2	물휴지	3307.90-9000
3	화장 비누(약용)	3401.11-1000
4	화장 비누(세안용)	3401.11-9000
5	폼 클렌저(foam cleanser)	3401.30-0000
6	바디 클렌저&각질 제거	3401.30-0000
7	기타 인체세정용 제품(마사지 솔트)	3401.30-0000
8	기타 인체세정용 제품(분말형 피부세척제)	3402.50-9000



3장

인체 세정용 제품류



■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종류

-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3) 액체 비누(liquid soaps)
- 4)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5) 외음부 세정제
- 6) 물휴지. 다만,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2)에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점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屍體)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한다.
- 7)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바디 화장품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더불어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얼굴과 함께 신체 전반에 대한 몸매와 피부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신체에 사용되는 화장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바디 화장품이라고 한다.

특히 현대적인 주거 시설의 보급으로 집집마다 목욕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위생과 청결한 신체 유지가 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그에 따른 바디 화장품 수요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

3.3.1. 비누

비누는 동식물 유지 또는 이로부터 얻어지는 고급지방산을 알칼리 금속 또는 유기염으로 중화시킨 알칼리성이다. 유지는 동물성 우지를 많이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팜유나 올리브유등이 사용된다. 화장비누, 약용비누, 투명비누, 계면활성제를 배합한 특수비누가 있다.

3.3.2. 바디 클렌저

피부표면의 이물질을 씻어내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디클렌저는 기포성, 세정성, 저온 안정성이 좋아야 하며 저자극성이어야 한다. 주로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사용되며 기포의 안정화를 위해 비이온 또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도 함께 배합된다. 사용 시 향취와 보습 기능에 따른 다양한 제품이 있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면도용 제품류
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9000		기타
20	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41	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9	0000	기타
90		기타
1000		제모제
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4000		마스크 팩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제모제(depilatory)
- 2) 향낭(scented sachet)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소독용·담금용(soaking)·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 · 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		품 명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1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11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1000	약용비누
	9000	기타
	19	기타
	10	비누,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
	1010	세탁비누

품목번호			품 명
	1090		기타
	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20	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30	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누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 원자를 가진 지방산이나 이들의 혼합물로 만들어지는 무기 · 유기의 알칼리 염(alkaline salt)이다. 실제로는 지방산의 일부가 로진산(robin acid)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한다. 비누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알칼리 반응을 하며 그 수용액은 기포성이 크다.

비누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크게 구별된다.

- 경(硬)비누(hard soap) : 일반적으로 수산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으로 만들어지며, 보통의 비누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 백색·유색·얼룩덜룩한 것도 있다.
- 연(軟)비누(soft soap) : 연비누는 수산화칼륨이나 탄산칼륨으로 제조된다. 이 물품은 점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녹색·갈색·담황색이며,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기도 한다.
- 액체 비누(liquid soap) : 비누를 물에 녹인 용액으로서 경우에 따라 소량(일반적으로 5% 이하)의 알코올이나 글리세롤(glycerol)이 첨가된다. 그러나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는 함유하지 않는다.

특히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화장용 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floating) 비누와 방취 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 · 면도용 비누 · 약용 비누 · 소독용 비누 · 연마비누도 포함한다.
 - (a) 부동성 비누(floating soap)와 방취 비누(deodorant soap)
 - (b) 글리세린비누(glycerin soap) : 반투명한 비누로서, 백색비누를 알코올 · 글리세롤(glycerol) · 설탕으로 처리하여 만든다.
 - (c) 면도용 비누(면도용 크림은 제3307호에 분류한다)
 - (d) 약용 비누 : 붕산 · 살리실산 · 황 · 술포아미드 · 그 밖의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e) 소독용 비누 : 소량의 페놀(phenol) · 크레졸(cresol) · 나프톨(naphthol) ·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 그 밖의 살균성 물질 · 세균발육 저지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이 종류의 비누는 같은 성분



을 함유하는 제3808호의 소독제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양자는 각성분간(비누·페놀·크레졸 등)의 양적 비율이 다르다. 제3808호의 소독제는 상당한 비율의 페놀·크레졸 등을 함유하며, 액체 상태이지만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

- (f) 연마 비누(abrasive soap) : 비누에 모래·실리카(silica)·부석가루·슬레이트(slate)가루·톱밥·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첨가한 것이다. 이 호에는 연마 비누 중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주형 모양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 연마재가 함유된 연마페이스트(paste)와 연마가루는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5호에 분류한다.
- (2) 가정용 비누 :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연마성이나 소독성을 가지고 있다.
- (3) 로진(rosin) 비누·톨유(tall oil)비누나 나프테네이트(naphthenate) 비누 : 이들은 지방산의 알칼리염 뿐만 아니라, 제3806호의 알칼리성 수지산염이나 제3402호의 알칼리성 나프텐산염을 함유하고 있다.
- (4) 공업용 비누 : 예를 들어 와이어 드로잉(wire-drawing)·합성고무의 중합·세탁업 등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것

위에서 설명한 (1) (f)의 제외규정에 따라서 이 호의 비누는 보통 다음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molded pieces or shape)·플레이크(flake) 상태·가루 모양·페이스트(paste) 상태·수용액

(II)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moulded) 모양으로 한정하여,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화장용이나 세정용 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하여도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 모양으로 한정한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모양으로 한 것에 한정하여 앞에서 설명한 물품에 모래·실리카(silica)·부석(pumice)가루 등을 첨가하여 연마성이 있게 만든 물품과 조제품을 포함한다.

(III)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

(IV)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이나 얼굴 세척용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위에서 언급한 예외는 물론,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소프스톡(soap-stock) (제1522호)
- (b) 칼슘비누 그 밖의 금속비누와 같이 화학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누(soap)”에 속함에도 불문하고 물에 녹지 않는 제품과 조제품(경우에 따라 제29류·제30류·제38류 등)
- (c) 단순히 향을 첨가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제33류)
- (d) 샴푸와 치약(각각 제3305호와 제3306호)
- (e)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조제계면활성제와 조제 세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비누를 유기용제에 용해하거나 분산한 것
- (f) 셀룰러플라스틱(cellular plastic)·셀룰러고무·방직용 섬유재료(워딩·펠트·부직포는 제외한다)·금속 패드 등으로서 비누·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것(이들은 보통 지지물에 적합한 호에 분류한다)

품목번호			품 명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1	0000	선형 알킬벤젠 슬픈산과 그 염
	39	0000	기타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	0000	양이온성
	42		비이온성
		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9000	기타
	49	0000	기타
	50		소매용 조제품



품목번호		품명
	1000	조제 세제
	2000	조제 청정제
	9000	기타
90		기타
	1000	조제 계면활성제
	2000	조제 세제
	3000	조제 청정제

(II) 조제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중략)

(B)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

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

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 빌더(builder)(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붕산나트륨·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
- (2) 부스터(booster)(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지방산아미드·지방아민 옥사이드
- (3) 필러(filler)(증량제). 예: 황산나트륨 · 염화나트륨
- (4)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조제 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가루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

조제 보조 세제는 의류·가정용 리넨 등의 담그기(초벌세탁 : pre-washing) · 헹구기나 표백에 사용한다.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3.1 SAIB NATURAL FOAMING FEMININE WASH

HSK 2025	3307.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9468
유형	외음부 세정제	시행일자	2020.11.26.

1. 물품설명

- ❖ 사과수, 정제수, 데실글루코사이드, 코코-베타인, 프로판다이올, 황금추출물, 모란뿌리추출물, 크랜베리추출물, 시트릭액씨드, 락토바실러스 발효추출물로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펌프가 달린 수지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ml)
- ❖ 용도 : 여성 외음부 청결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 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HS해설서 제33류 총설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 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외음부 청결 유지용 제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인체 세정용 제품류

3.2 3-in-1 COMPLETE CLEANSING

HSK 2025	3307.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5284
유형	물휴지	시행일자	2023.3.10.

1. 물품설명

- ❖ 직사각형의 백색 부직포에 정제수, 메틸프로판디올, 피이지-8, 소듐벤조에이트, 클로페네신, 에틸헥실글리세린, 알로에베라잎추출물, 부틸렌글리콜, 향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액상을 함침시켜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60매/bag)
- ❖ 용도 : 피부 오염물 제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 같은 호 HS해설서 “(V) 그 밖의 물품”에서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는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용수를 함침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부직포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킨 것은 제3401호에 분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3.3 DUA HATI SARI KESED SOAP

HSK 2025	3401.11-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2240
유형	화장 비누(약용)	시행일자	2016.9.2.

1. 물품설명

- ❖ 지방산 알칼리염을 기제로 하여 Talc, Tawas(명반), Aluminium potassium sulfate(칼륨명반) 등으로 조제된 Bar상의 비누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70g)
- ❖ 용도 : 약용 비누(외음부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1호에는 "비누·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비누’에 대해서 “비누는 분자 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 또는 유기의 알칼리염이다.” 또한, 화장용비누 중 ‘약용 비누’는 “봉산·살리실산·황·술폰아미드 또는 기타 의약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Bar상의 약용비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1-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비누(Soap bar)

비누는 C12~C18(관세율표 해설에서는 탄소 8개 이상으로 표기)의 지방산을 알칼리(NaOH, KOH)로 중화시킨 지방산염이며 음이온 계면활성제이다. 비누화 반응은 다음과 같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알칼리와 반응시키면 비누와 글리세린이 형성된다.

- ① 유지(지방) + NaOH → 글리세린 + 비누 : 경질 비누(화장비누)
- ② 유지(지방) + KOH → 글리세린 + 비누 : 연질 비누(액체비누)

비누는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물의 표면장력을 떨어뜨려 서로 섞이지 않는 수성, 유성의 더러움을 제거한다. 이는 계면활성제가 계면에 작용하여 침투, 흡착, 유화, 분산 기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용액은 알칼리 반응을 하며, 산성용액에서 세정력 상실되며 경수(센물)에서 금속비누를 형성한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3.4 DIAL BAR SOAP

HSK 2025	3401.11-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9289
유형	화장비누(세안용)	시행일자	2012.12.11.

1. 물품설명

- ❖ Sodium cocoate, sodium palm kernelate, sodium palmate, sodium tallowate, triclocarban, water, talc, coconut acid, palm acid, tallow acid, PEG-6 methyl ether, fragrance, glycerin, sorbitol, sodium chloride, pentasodium pentetate, tetrasodium etidronate 등으로 조제된 육면체형상의 노란색 비누(9cm x 5cm x 2cm)
- ❖ 용도 : 화장용(피부세척) 비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1.11호에는 "화장용의 것(약용의 것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화장용비누 : 흔히 착색되고 향기가 있으며,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부동성 비누와 방취비누는 물론 글리세린 비누·면도용비누·약용비누·소독용비누·연마비누도 포함한다. (e) 소독용 비누 : 기타 살균성물질 · 세균발육저지성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 소독용 비누는 보통 고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살균성 물질(Triclocarban)을 함유하는 육면체형상(moulded shapes)의 화장용 비누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1-9000호에 분류함



인체 세정용 제품류

3.5 GRREN TEA FOAM CLEANSER

HSK 2025	3401.3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8912
유형	폼 클렌저	시행일자	2023.7.13.

1. 물품설명

- ❖ Camellia sinensis leaf water, Glycerin, Sodium Cocoyl Isethionate, Hydrogenated Coconut Acid, Sodium Isethionate, Butylene Glycol, Caprylyl glycol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크림상 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5ml)
- ❖ 용도 : 세안용 폼 클렌저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Ⅲ)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 포장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폼 클렌징(foam cleansing)

폼 클렌징은 지방산 비누 및 계면 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한 대표적 수성 세안제이며 과도한 탈지 방지를 위하여 오일, 보습제 등을 사용한다. 비누와 달리 사용 후 촉촉한 감이 있으며 거품생성이 용이하고 우수하며, 헹굼이 간단하고, 사용 후 산뜻한 감을 부여한다. 외관은 부드러운 크림상이며 손바닥에 소량 취하여 물을 섞어 거품을 낸 후 사용한다.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한 약산성 저자극 폼은 기포력이 약한 단점이 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3.6 Liquid body lufra

HSK 2025	3401.3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463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바디클렌저&각질제거	시행일자	2018.4.9.

1. 물품설명

- ❖ 정제수, 알로에베라잎즙, 부틸렌글리콜, 호두껍질가루, 글리세린, 소듐C14-16올레핀설포네이트, 암모늄라우레스설페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점조액상과 황갈색 미세 입자가 혼재된 것을 플라스틱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ml)
- ❖ 용도 : 바디 클렌저(피부세정, 피부보습, 각질 제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 본건 물품이 제3401호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 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 본건 물품은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점, 피부 개선효과는 보조적이며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물품은 제3401호의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에 해당함
※ [제60차 WCO HS위원회(17.10)]본건 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결정
- ❖ 따라서 본건 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401.30-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 않았거나, 피부세척을 위한 기능보다 보조적 기능(예: 유화제)을 위한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였을 경우,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3.7 마사지 솔트

HSK 2025	3401.3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8972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기타 인체세정용	시행일자	2021.9.15.

1. 물품설명

- ❖ 소금(75%), 물(18.7%), 유기계면활성제(3.2%), 라우르산, 기타 향료 등으로 구성된 백색 페이스 트상의 피부용 마사지 비누로, 소매판 형태로 제시됨(내용물 : 330g)
- ❖ 용도 : 마사지 솔트(피부 세정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 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 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 포’가 분류되며,

- ❖ 소호 제3401.30호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는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소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피부 세척을 위한 활성 성분으로 3종의 유기계면활성제가 혼합되어 있으며, 손이나 타월에 일정량 덜어 신체를 문지른 후 물로 세척하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 제품이므로 상기 해설서의 ‘피부세정용 조제품’에 대한 설명에 부합함
- ❖ 또한, 제3307호 해설서에도 “피부 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02년 HS 개정시, 제3307호 해설서에서 ‘인체위생용 조제품’을 삭제하면서 제3401호에 ‘피부세정용 조제품’을 신설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욕조(물)에 풀어 사용하는 목욕용 염은 제3307호에 분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3.8 Lon.G REDGINSENG POWDER WASH

HSK 2025	3402.5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717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기타 인체세정용	시행일자	2021.3.24.

1. 물품설명

- ❖ 유기계면활성제(Disodium lauroyl glutamate, Sodium cocoyl glycinate, Sodium cocoyl isethionate)에 미정질 셀룰로오스, 홍삼뿌리 가루, 실리카, 단백질 분해효소 등을 넣어 혼합 조제한 연갈색의 가루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로 소매 포장한 것(내용물 50g)
- ❖ 용도 : 세안제(물에 묻혀 거품을 낸 후 얼굴을 문지르고 물로 세척)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 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서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제 계면활성제”와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유기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가루 형상의 소매 포장된 피부 세정용 제품으로,
- ❖ 제3307호의 목욕용 조제품* 등의 화장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액상 또는 크림상이 분류되는 제3401.30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매 포장한 유기 계면활성제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402.50호에 분류되어야 함

* 참고로 ’97.4월 제19차 WCO HS 위원회에서 사람의 얼굴, 손에 사용하는 유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는 제3307호 “목욕용 조제품”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

- ❖ 소호 제3402.50호에는 조제 세제와 조제 청정제 및 기타로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의 내용 부분에서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에 대해,
 - ❖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략) 조제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s)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 (중략) 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 조제세제와 조제 청정제는 사람의 피부를 세척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이나 바닥, 창 등의 표면을 청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세척제로 보아야 함
- ❖ 본건 물품은 사람의 얼굴, 손 등 피부에 사용되므로 조제세제나 조제 청정제로 볼 수 없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 세척용의 그 밖의 유기계면 활성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5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401.30호에는 액체나 크림형태의 피부세척용 계면활성제품(소매용)이 분류되지만, 본건 물품은 분말상으로 형태에 부합하지 않고,
- ❖ 제3402.50호의 소매포장한 유기계면활성 조제품에서 사람의 피부에 사용되는 물품은 세제나 청정제가 아니므로 “기타 소매용 조제품(유기 계면활성조제품)”에 분류함



4장 눈 화장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아이섀도(eye shadow)	3304.20-1000
2	아이브로(eyebrow)	3304.20-9000
3	아이라이너(eye liner)	3304.20-9000
4	마스카라(mascara)	3304.20-9000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3304.20-9000
6	속눈썹 영양	3304.20-9000
7	속눈썹 코팅	3304.20-9000
8	입술 &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3304.20-9000



4장

눈 화장용 제품류



■ 눈 화장용 제품류의 종류

- 1) 아이브로(eyebrow) 제품
- 2) 아이 라이너(eye liner)
- 3) 아이 셔도(eye shadow)
- 4) 마스카라(mascara)
-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
- 7)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up)

포인트 메이크업은 입체적인 얼굴로 보이기 위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강조하고 싶은 특정 부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종류는 립스틱(lipstick), 블러셔(blusher), 아이섀도(eye shadow), 아이브로(eye brow), 아이라이너(eye liner), 네일에나멜(nail enamel) 등이 있다.

표 3.4.1 포인트 메이크업의 종류와 기능

종 류		기 능
포 인 트 메 이 크 업	립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술에 색채감을 주어 입술을 아름답게 표현해 줌 입술의 건조 및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함
	블러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볼 부분에 도포하여 밝고 건강하게 보이게 함 얼굴의 결점을 은폐, 입체감을 표현함
	아이라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눈썹 부분에 라인을 그려 눈의 윤곽을 강조 눈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표정을 풍부하게 함
	마스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눈썹을 진하고 길게 하여 눈을 선명하고 시원하게 하여 아름답게 보이게 함
	아이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가의 명암과 색채감을 주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연출하는 것으로 복장, 립스틱 등과 조화시킴

종 류	기 능
아이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썹의 형태를 정리, 눈가를 확실하게 보이게 함 그리는 방법에 의해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킴 머리색과 조화시킴
네일에나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톱에 도포하여 색채와 광택을 주고, 손가락에 표정을 줌 손톱을 보호함
에나멜 리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니큐어를 손톱에서 제거함
네일 트리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지, 탈수로 광택이 없어지거나 손상된 손톱을 회복시킴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9000	기타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9000	기타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00	네일에나멜
9000	기타
9	기타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페이스파우더
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
9000	기타



품목번호		품 명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3000	어린이용 제품류
	9000	기타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 (2)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4.1 EYE SHADOW

HSK 2025	3304.20-1000	분류근거	-
유형	아이섀도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g)
- ❖ 용도 : 눈 화장용(아이섀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아이섀도 · 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메이크업용 제품류의 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아이섀도(eye shadow)

아이섀도는 눈꺼풀이나 눈꼬리에 사용하여 색채와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또한 눈매에 표정을 연출하고 눈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양한 색감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개성을 연출한다. 아이섀도를 형태로 분류하면 크림 형태, 스틱 형태, 파우더 형태, 케이크 형태가 있다.



눈 화장용 제품류

4.2 Real natural eyebrow pencil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878
유형	아이브로우 제품	시행일자	2017.4.4.

1. 물품설명

- ❖ 흑색산화철, Hydrogenated soybean oil, hydrogenated coco-glycerides, mica, hydrogenated vegetable oil, zinc stearate, stearic acid, carnauba wax, tocopherol 등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흑색계 고체상의 펜슬심과 브러시를 플라스틱 원통형 용기에 장착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0.2g)
- ❖ 용도 : 눈 화장용(아이브로우 펜슬)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눈썹 그리는 연필에 해당하는 아이브로우 펜슬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아이브로우(eyebrow)

아이브로우는 눈썹을 자르거나 뽑아서 정돈한 다음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리고 눈썹 색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흑갈색을 사용하지만, 짙게 보이거나 얕게 보이기 위해 다른 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고형으로 기제에 착색 안료를 압축 성형한 것으로 연필 또는 샤프펜슬 모양이 가장 많으며, 고형 분말상, 액상의 제품도 있다.

- ① 연필, 샤프펜슬 타입: 고형 또는 액상 유분과 안료를 골고루 섞은 것
- ② 분말 고형타입 소량의 결합제를 첨가하여 압축 성형한 것을 볶을 사용하여 도포
- ③ 액상타입: 안료를 유성성분 또는 유화물에 분산한 것으로 볶을 사용하여 도포



눈 화장용 제품류

4.3 All day black edge eye liner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669
유형	아이라이너	시행일자	2019.3.20.

1. 물품설명

- ❖ Acrylates Copolymer, Carbon Black, Butylene glycol, Styrene/Acrylates Copolymer, Laureth-20, Alcohol, 1,2-Hexanediol 등으로 혼합 · 조제한 흑색계 액상을 브러시가 달린 펜슬 형태의 플라스틱에 충전한 것
- ❖ 용도 : 눈 화장용(아이라이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 (2)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아이라이너(eye liner)

아이라이너는 속눈썹 바로 위에 가는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눈의 윤곽을 또렷하게 하여 눈의 모양을 조정하며 인상적인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 사용한다. 아이라이너는 크게 유화 형태, 수용성 수지를 첨가한 형태가 있으며 내수성을 극대화시킨 비수용성 아이라이너가 있으나 건조속도가 너무 늦다. 또한 아이브로펜슬을 부드럽게 만들어 아이라이너와 겸용으로 사용하거나 라이너용으로 만든 펜슬형태도 있다. 케이크 형태 마스카라와 비슷한 아이라이너가 있으며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겸용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아이라이너는 많은 종류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주위 환경과 자기 피부에 알맞은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눈 화장용 제품류

4.4 Mascara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
유형	마스카라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구성된 흑색 액상을 브러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판(내용량 6ml)
- ❖ 용도 : 속눈썹 화장용(마스카라)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마스카라로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마스카라(mascara)

마스카라는 가장 오래된 화장품의 하나로 고대 이집트에서 “Kohl”을 속눈썹에 바름으로써 눈썹을 짙게 보이도록 했다. 마스카라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실상 모발의 염료로 케이크, 크림, 액상 형태로 제조되며 내용물의 점성 및 내장된 브러시의 형태에 따라 품질이 크게 작용한다.

4.5 DHC Olive Virgin Oil Eye Remover Stick & Cotten Swab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1600
유형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시행일자	2017.11.22.

1.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스틱 양끝에 부착시킨 면섬유(Wadding에 해당하지 않음)에 화장품 성분(올리브 오일)을 함침한 길이 약 7.8cm의 면봉 50개를 개별 포장한 후 플라스틱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눈 화장 제거용(아이메이크업 리무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 제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4.6 Eyelash Serum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
유형	속눈썹 영양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브러시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충전한 후 종이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ml)
- ❖ 용도 : 속눈썹 영양 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제(A)항에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눈 화장용 제품류

4.7 Protective Coating Sealant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8278
유형	속눈썹 코팅	시행일자	2016.12.9.

1. 물품설명

Water, Ethanol, PTFE(polytetrafluoroethane)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브러시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0mL)

- 용도 : 연장한 속눈썹의 형태 유지 및 이물질 방지 코팅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아이섀도 · 마스카라 · 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눈 화장용 제품류

4.8 LIP & EYE Make up REMOVER

HSK 2025	3304.2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055
유형	눈·입술 메이크업 제거	시행일자	2017.1.16.

1. 물품설명

- ❖ Water, Cyclopentasiloxane, Poloxamer 184, Phenoxyethanol, Benzyl alcohol, Sodium citrate, Disodium EDTA, Benzalkonium chloride, Citric acid,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액상(상층 청색, 하층 무색으로 분리구분되어 있는 특성을 가짐)을 플라스틱제용기에 소매판한 것(내용량: 120mL)
- ❖ 용도 : 눈, 입술 메이크업 제거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

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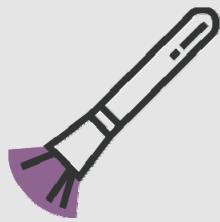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 및 입술화장 제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최종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04.10호(입술화장용 제품류)와 제3304.20호(눈화장용 제품류)에 동일하게 분류 가능하여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그 순서상 마지막 호인 제3304.20호에 분류한 사례임
-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5장 방향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향수	3303.00-1000
2	향수	3303.00-1000
3	화장수(toilet waters)	3303.00-2000
4	영·유아용 화장수(toilet waters)	3303.00-2000

5장

방향용 제품류



■ 방향용 제품류의 종류

- 1) 향수
- 2) 콜롱(cologne)
- 3)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 향수

향수는 액체 보석이라고 하기도 한다. 향기의 변천은 사회 환경, 경제 상태를 반영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향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도 크게 변화하여 개성의 표현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분, 환경 보호 문제, 안심, 안전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세대들은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향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향수는 향료를 에틸알코올에 녹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좋은 향수라고 할 수 있다.

향수의 조건

- ① 아름답고, 세련된 격조 높은 향일 것
- ② 향기가 독특하고 특징이 있을 것
- ③ 향기의 확산성이 좋을 것
- ④ 향기가 적당히 강하게 지속성이 있을 것
- ⑤ 향기가 제품 이미지와 일치할 것

3.5.1. 발향 단계에 의한 분류

1) 탑 노트(top note)

향수를 뿐렸을 때나 향수 용기를 개봉했을 때 처음 나는 향으로, 향의 첫인사란 의미로 헤이 노트라고도 한다. 미들노트와 베이스 노트가 전개되기 전에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향이다. 휘발성이 강한 시트러스계, 그린계, 알데하이드계, 가벼운 플로럴계가 여기에 속한다.



2) 미들 노트(middle note)

탑 노트 다음에 느껴지는 중간 단계의 향으로, 향수를 뿌린 후 20분에서 1시간 후에 맡게 되는 향이며, 향수의 구성요소들이 조화롭게 배합을 이룬 향의 중간 단계로서 하트 노트라고도 한다. 탑 노트 보다 느리게 진행되며 보다 육감적이다. 플로럴계, 시프러스계, 스파이스계, 그린계, 오리엔탈계가 여기에 속한다.

3) 베이스 노트(base note)

향기의 마지막 발향 단계로 향수를 뿌린 후 2~3시간 후에 느껴지는 향이며,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체취와 혼합되어 나는 향취로 휘발성이 낮고 보유성이 풍부한 우디계, 앤버계, 오리엔탈계가 여기에 속한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3			향수와 화장수
	00	1000	향수
	00	2000	화장수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s)상태를 포함 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향수(perfume and scent) : 보통 정유(essential oil)·플로랄 콘크리트(floral concrete)·앱실루트(absolute)·인조방향성(芳香性)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

화장수(toilet waters) : 예를 들어 라벤다수(lavender water)·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과 같은 것으로서 [제3301호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과 혼동하지 말 것],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토일렛 비니거(vinegar)(제3304호)
- (b) 면도 후에 쓰는 로션과 인체용 탈취제(제3307호)

5.1 Perfumes and scents

HSK 2025	3303.00-1000	분류근거	-
유형	향수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로 조제된 투명한 액상을 롤러 볼 형태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것
(내용량: 7㎖×3개)
- ❖ 용도 : 귀밑, 손목 등에 바르는 롤러 타입 향수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하며, HSK 제3303.00-1000호에는 “향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 · 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향수(perfumes and scents) : 보통 정유(essential oil)·플로랄 콘크리트(floral concrete)·앱실루트(absolute)·인조방향성(芳香性)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 포장한 향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303.00-1000호에 분류함



5.2 Perfumes and scents

HSK 2025	3303.00-1000	분류근거	-
유형	향수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제된 고상을 펜슬형태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2.4g)
- ❖ 용도 : 손목, 팔 안쪽, 목, 귀 밑에 바르는 고체타입 향수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하며, HSK 제3303.00-1000호에는 “향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향수(perfumes and scents) : 보통 정유(essential oil)·플로랄 콘크리트(Floral concrete) · 앱솔루트(absolute) · 인조방향성(芳香性)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류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 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소매포장한 향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303.00-1000호에 분류함

5.3 TRUE ORIGINAL COLOGNE

HSK 2025	3303.00-2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92
유형	화장수	시행일자	2014.1.6.

1. 물품설명

- ❖ Alcohol Denat(변성알코올), Water, Fragrance, Glycerin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유리제 스프레이식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9ml)
- ❖ 용도 : 화장수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제3303.00-2000호에는 "화장수"를 특게 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상·크림상 또는 고체상(스틱상 포함)의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된다." 및 "화장수란 예를 들어 라벤다수·오데콜론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애쿠어스 솔류션과 혼동하지 말 것)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화장수를 소매 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303.00-2000호에 분류함

5.4 Musti Eau De Soin Parfumée

HSK 2025	3303.00-2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693
유형	영·유아용 화장수	시행일자	2017.3.30.

1. 물품설명

- ❖ 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Fragrance 1.5%, 글리세린, 벤조산나트륨, 부틸렌글리콜,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주석산, 카모마일꽃 추출물, 벌꿀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흐린 투명액상을 스프레이식 유리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0ml)
- ❖ 용도 : 영·유아용 화장수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화장수(toilet waters)는 예를 들어 라벤다수(lavender water)·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과 같은 것으로서 (...)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품은 화장수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3.00-2000호에 분류함

※ 부향률에 따른 향수의 분류

(1) 퍼퓸(perfume)

일반적으로 말하는 향수이다. 부향율은 15~30%로 향수 중에서 가장 농도가 강해 향수로서의 풍부함이 가장 많고 지속시간이 약 6~7시간이다. 조향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장 순수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낸 제품으로 손꼽히며 예술품에 비유되기도 한다. 향이 매우 강하므로 소량을 귀 뒤, 목덜미, 팔꿈치 안쪽, 손목 부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녁 외출 시 사용하기 적당한 제품이다.

(2) 오데 퍼퓸(eau de perfume)

향의 함량이 10~15%인 제품으로서 퍼퓸과 오데 뚜왈렛(eau de toilette)의 중간 형태이며 퍼퓸에 가까워 향취가 풍부한 제품으로 퍼퓸 보다는 강도가 조금 낮아 부담이 덜한 제품이다. 지속시간은 5~6시간 정도이다. 퍼퓸보다 제품의 양은 많으면서 향은 퍼퓸에 가까우므로 실용적이다. 특히 오데 퍼퓸은 단순히 향수의 농도를 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가장 아름다운 향조로 조정되어 있다. 낮에 외출 시 사용하기 적당한 제품이다.

(3) 오데 뚜왈렛(eau de toilet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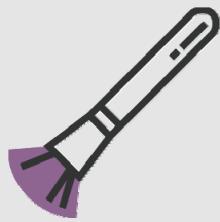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향의 함량이 5~10%로 15% 정도의 증류수와 알코올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향료를 알코올에 부향시킨 제품으로서 오데 퍼퓸과 오데 코롱의 중간 형태이며 지속시간은 3~5시간이다. 오(eau)와 뚜왈렛(toilette)은 프랑스어로 “물”과 “화장실”이란 의미로 몸차림을 정돈하는 물이란 뜻으로, 얇은 향을 띠고 있지만 신선하고 상큼한 감각과 향수의 지속성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벼운 느낌으로 간편하게 전신에 뿌릴 수 있어 현재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당하다.

(4) 오데 코롱(eau de cologne)

향의 함량이 3~5%로 15~20%의 증류수와 알코올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낮은 함량의 향료를 함유하고 있어 목욕이나 샤워 후에 사용한다. 은은하면서도 산뜻하고 상쾌한 느낌을 유지하며 몸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가볍고 신선한 유형의 바디 방향 제품으로 향취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향기 지속시간은 1~2시간이다.

(5) 샤워 코롱(shower cologne)

향의 함량이 1~3%로 아주 낮은 함량으로 되어 있어 목욕이나 샤워 후 전신에 사용하여 몸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가볍고 신선한 유형의 바디 방향 제품으로 향기 지속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다.



6장 두발 염색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헤어 컬러스프레이	3305.90-9000
2	염모제	3305.90-9000
3	기타 염색용 제품	3305.90-9000
4	염색 & 트리트먼트	3305.90-9000
5	헤어 파운데이션	3305.90-9000

6장

두발 염색용 제품류



■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종류

- 1) 헤어 틴트(hair tints)
-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3) 염모제
- 4) 탈염·탈색용 제품
- 5)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 모발 화장품 개요

모발 화장품은 두피 및 모발을 세정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두피 건강 및 모발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모발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화하여 세정을 기본으로 하고 탈모방지, 정발 효과, 비듬 방지,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등의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모발용 제품 중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염모제, 탈염, 탈색제, 제모제는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양모제, 발모제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모발 제품의 종류와 기능을 분류하였다.

표 3.6.1 모발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사용목적	종류	주요기능	비고
세발	샴푸	두피 및 모발의 오염제거	화장품
	린스		화장품
스타일링	헤어젤, 약스, 스프레이	모발의 정돈 및 스타일링	화장품
정발 및 영양	헤어트리트먼트	샴푸 잔류물 제거 및 정발	화장품
	헤어크림, 로션	모발영양공급	화장품
염색	염모제	모발의 염색	화장품
	탈색제	모발의 탈색	화장품



사용목적	종류	주요기능	비고
퍼머넌트웨이브	퍼머액	웨이브헤어	화장품
	헤어스트레이트너	스트레이트헤어	화장품
체모의 제거	제모제	체모의 제거	화장품
탈모 방지 및 양모	헤어토닉	두피 영양 공급	화장품
	양모제	탈모방지 및 양모	의약외품
	발모제	발모	의약품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5			두발용 제품류
	10	0000	샴푸
	20	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30	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90		기타
		1000	헤어린스
		2000	헤어크림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 (2) 퍼머넌트 웨이빙용(permanent waving)이나 스트레이트닝용(straightening) 제품류
- (3) 헤어래커(hair lacquer)[종종 “헤어 스프레이(hair spray)”라고도 한다]
-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6.1 Darling Hair Color Spray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696
유형	헤어 컬러스프레이	시행일자	2014.10.6.

1. 물품설명

- ❖ 착색제, AMP-Acrylates/Diacetoneacrylamide Copolymer, Isopropyl isostearate, Dimethicone Copolyol 등으로 혼합 조제한 흑갈색계의 액상을 분사제와 함께 금속제 원통의 스프레이 용기 에 소매포장한 것(용량 135ml)
- ❖ 용도 : 두발 염색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 · 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류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화장품 유형 중 ‘두발 염색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 컬러스프레이’를 예시하고 있음
- ❖ 헤어 틴트, 헤어컬러 스프레이 등은 모발 표면을 염색하고 샴푸 등으로 세척하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으로 염색이 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본 물품과 동일 기능을 하는 물품임
- ❖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 중 모발용 염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6.2 Hair Color Cream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
유형	염모제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염모제(OO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와 산화제(OO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를 각각 수지제 튜브에 충전한 것과 비닐장갑, 염모용 빗 등을 세트포장한 것
- ❖ 용도 : 모발 염색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 (4)항에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 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 세트(set) 물품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제6부 부 주3에 "2종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나. 동시에 제시되며, 다. 그 성상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세트 물품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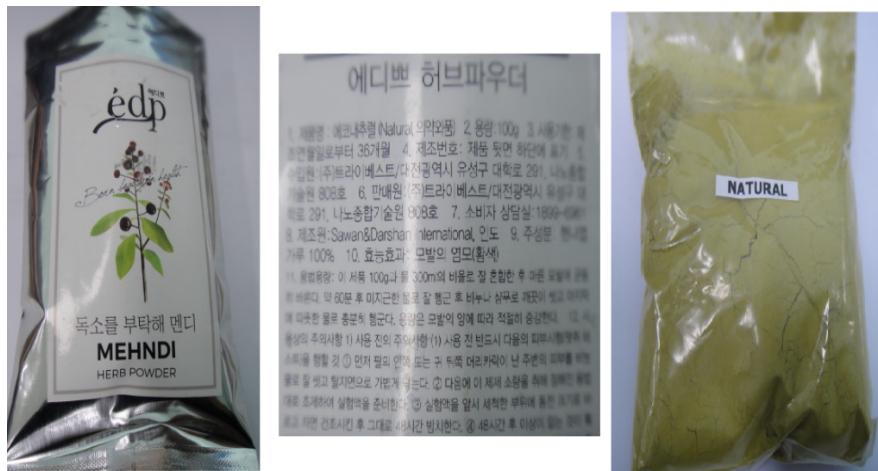
-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 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염모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두발용 제품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6.3 에코네추럴(Natural)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756
유형	기타 염색용 제품	시행일자	2016.4.15.

1. 물품설명

- ❖ 헤나 잎을 건조 후 분쇄한 연한 녹색의 분말을 내용량 100g 수지제 봉지에 소매판장
- ❖ 용도 : 모발 염색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 (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 · 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6부 주2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제33류 주3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 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 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제3212호의 "소매용으로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에 대한 해설 내용에서도 '제3305호의 모발 염색제'를 제외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모발의 염모제로 사용하도록 소매포장된 헤나잎 분말이므로 두발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헤나잎 분말을 모발 염색용으로 소매포장한 경우는 제3305호에 분류하며, 소매포장하지 않은 벌크 상태의 물품은 제1404호에 분류함

6.4 헤어 컬러 트리트먼트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898
유형	염색 & 트리트먼트	시행일자	2015.9.2.

1. 물품설명

- ❖ 착색제, Water, Cetyl alcohol, Behetrimonium chloride, Cetrimonium chloride, Prop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오렌지색 페이스트상을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300ml)
- ❖ 용도 : 모발 염색 및 영양공급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 중 모발용 염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6.5 Hair Foundation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697
유형	헤어 파운데이션	시행일자	2014.10.6.

1. 물품설명

- ❖ 착색제, Diisostearyl malate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암갈색계의 고상을 원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g)
- ❖ 용도 : 두발 염색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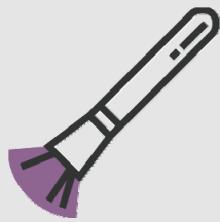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화장품 유형 중 ‘두발 염색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컬러스프레이’를 예시하고 있음
- ❖ 헤어 틴트, 헤어컬러 스프레이 등은 모발 표면을 염색하고 샴푸 등으로 세척하면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일시적으로 염색이 되도록 하는 물품으로 본건 물품과 동일 기능을 하는 물품임
- ❖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 중 모발용 염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7장 색조 화장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립스틱	3304.10-1000
2	립글로스(lip gloss)	3304.10-9000
3	립밤(lip balm)	3304.10-9000
4	볼연지	3304.91-1000
5	아이섀도 & 볼연지	3304.91-1000
6	페이스 파우더	3304.91-1000
7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3304.99-1000
8	메이크업 베이스	3304.99-2000
9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3304.99-2000
10	분장용 제품	3304.99-2000



7장

색조 화장용 제품류



■ 색조 화장용 제품류의 종류

- 1) 볼연지,
-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 3)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s)
-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은 기초화장품 사용 후 얼굴, 손톱 등 신체에 도포하여 색채감을 부여하여 피부색을 표현함으로써 아름답게 용모를 변화시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베이스 메이크업과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분된다.

- ① 베이스 메이크업(base make-up): 피부색을 균일하게 정돈, 기미 및 주근깨 등 피부 결점을 커버하여 건강하고 매력적인 피부를 부여한다.
- ②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up): 입술, 눈 주위, 볼, 손톱 등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며 혈색을 돋보이게 하고 입체감을 표현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로 변화시킨다.

■ 색조 화장품의 종류 및 기능

색조 화장품의 역할은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미적 역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적 역할, 화장 행위에 의한 기분 전환을 통해 활력을 생기게 하고, 화장하는 즐거움과 변신하고 싶

은 욕망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감을 주는 심리적 역할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색조화장품이 사용된다.

표 3.7.1 색조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종 류		기 능
베 이 스	파우더(백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색을 조정, 밝고 투명하게 함 • 땀과 피지를 억제하고 피부가 번들거리는 것을 방지하여 화장 지속성을 좋게 함 •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함
메 이 크 업	파운데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의 색을 선호하는 색으로 바꾸어 줌 • 피부에 윤기, 탄력, 투명감을 줌 • 화장 지속성을 높이며 기미, 주근깨 등의 결점을 은폐함 • 건조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함
포 인 트 메 이 크 업	립스틱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술에 색채감을 주어 입술을 아름답게 표현해 줌 • 입술의 건조 및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함
	블러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 부분에 도포하여 밝고 건강하게 보이게 함 • 얼굴의 결점을 은폐, 입체감을 표현함
포 인 트 메 이 크 업	아이라이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눈썹 부분에 라인을 그려 눈의 윤곽을 강조 • 눈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표정을 풍부하게 함
	마스카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눈썹을 진하고 길게 하여 눈을 선명하고 시원하게 하여 아름답게 보이게 함
포 인 트 메 이 크 업	아이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가의 명암과 색채감을 주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연출 하는 것으로 복장, 립스틱 등과 조화시킴
	아이브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썹의 형태를 정리, 눈가를 확실하게 보이게 함 • 그리는 방법에 의해 얼굴의 표정을 변화시킴 • 머리색과 조화시킴
네일 메이크업	네일에나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톱에 도포하여 색채와 광택을 주고, 손가락에 표정을 줌 • 손톱을 보호함
	에나멜 리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니큐어를 손톱에서 제거함
네일 메이크업	네일 트리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지, 탈수로 광택이 없어지거나 손상된 손톱을 회복시킴



■ 색조 화장품의 구성 원료

메이크업 화장품을 구성하는 원료는 착색 안료, 백색 안료, 체질 안료, 펄 안료 등의 분체 부분과 이것이 분산되는 기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배합 비율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만들어진다.

3.7.1. 기제

- ① 유성원료: 유동파라핀, 왁스류, 스쿠알란, 실리콘 오일, 합성에스테르 등
- ② 수성원료: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보습제, 점증제, 정제수 등

3.7.2. 분체

색조화장품의 기능과 화장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성분은 분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갖는 분체를 함께 사용한다.

표 3.7.2 분체의 종류

분류	특징, 배합목적		주원료	주 사용제품
백색 안료	백색 안료	굴절률이 크고, 은폐력이 좋음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지르코늄 등	파운데이션
	체질 안료	입자형태, 입경 등의 차이에 의해 광택, 탄력, 투명성, 부착력 등을 조절함	탈크, 마이카, 카올린, 탄산칼슘 등	모든 색조제품
	유기 분말	재질, 형상 등의 차이에 따라 부드러운 감촉이나 부착성 등을 개량함	나일론, 폴리에틸렌, 셀룰로오스, 아미노산 등	모든 압축제품
착색 안료	무기 안료	채도는 낮지만 내광성, 안전성이 우수하고, 어두운 색을 띠어 명도를 조절함	황색산화철, 군청, 흑색산화철, 감청, 산화크롬	모든 색조제품
	유기 안료 (염료)	채도가 높고, 착색력, 투명감이 우수하지만, 천연 색소류 내광성, 내열성, 내약품성에 약한 것이 있음	법정 타르 색소류, 천연색소류	포인트 제품

3.7.3. 기타

보존제, 계면활성제, 산화 방지제, 점도 조절제, 향료 등이 있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9000	기타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9000	기타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00	네일에나멜
	9000	기타
	9	기타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페이스파우더
	2000	베이비파우더(탈콤파우더를 포함한다)
	9000	기타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3000	어린이용 제품류
	9000	기타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키ント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7.1 Persona Cushion Liptint

HSK 2025	3304.10-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874
유형	립스틱	시행일자	2017.4.4.

1. 물품설명

- ❖ Isononyl isononanoate, Phenyl trimethicone, Polyglyceryl-2 triisostearate, Ozokerite, Bis-diglyceryl polyacyladipate, Pentaerythrityl tetraisostearate, Silica, Caprylic/capric triglyceride, Jojoba esters, Tocopherol, Dimethicone, 색소, 향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원통형 스틱상을 반대쪽에 흑색 작은 스폰지가 있고 뚜껑이 있는 오토 펜슬 형상의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한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1.8g)
- ❖ 용도 : 입술 화장용(립스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원통 스틱상으로 만든 입술 화장용의 "립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1000호에 분류함

7.2 Blooming dew edgeholic gloss

HSK 2025	3304.1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879
유형	립글로스	시행일자	2017.4.4.

1. 물품설명

- ❖ Polyisobutene, Hydrogenated polyisobutene, Diisostearyl malate, Triethylhexanoin, Beeswax, Sorbitan olivate, Tocopheryl acetate, 착색제, 향 등으로 혼합 제조한 분홍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mL)
- ❖ 용도 : 입술 보호용 립글로스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 보호 등에 사용하는 립글로스로서 그 밖의 입술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7.3 NIVEA Lovely Lips Natural Pink

HSK 2025	3304.1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9903
유형	립밤	시행일자	2016.12.29.

1. 물품설명

- ❖ 폴리이소부텐,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이소스테아레이트, 피마자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등으로 혼합·제조한 진분홍색 반고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g)
- ❖ 용도 : 입술보호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 보습에 사용하는 기타 입술 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7.4 Cheek Colour Refill

HSK 2025	3304.91-1000	분류근거	-
유형	볼연지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된 핑크색계 분말을 압축하여 철제 케이스에 넣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포장 후 종이상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g)
- ❖ 용도 : 볼에 사용하는 메이크업 화장품(리필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이 분류되며, 제3304.91-1000호에는 "가루의 페이스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특게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A)-(3)항에 의하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텔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페이스 파우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1000호에 분류함



7.5 Eye & cheek pop

HSK 2025	3304.91-1000	분류근거	-
유형	아이섀도 & 볼연지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압축한 분말상의 아이섀도(눈화장)와 치크(페이스 파우더), 거울을 각각 자석이 내장된 원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고 결합하여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
- ❖ 용도 : 아이섀도 및 치크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3304.91-1000호에 “페이스파우더”가 특게되어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2)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및 (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본 품은 눈화장 제품류인 아이섀도와 페이스파우더인 치크(Cheek)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서 각각에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분류가 가능한 마지막 호에 분류함

- ❖ 따라서 본 품은 아이섀도와 치크(cheek)가 결합된 소매용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1-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04.20호(아이섀도)와 제3304.91호(치크)에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하여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순서상 마지막 호인 제3304.91호에 분류함
-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색조 화장용 제품류

7.6 MISTINE FLOWERS BB POWDER

HSK 2025	3304.91-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311
유형	페이스 파우더	시행일자	2013.6.19.

1. 물품설명

- ❖ 운모분, 활석, 이산화티타늄, 실리카, Dimethicone, Polymethyl Methacrylate, 이산화아연, 스쿠알란, 식물유, 왁스, 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 용도 : 페이스 파우더(벌크상으로 수출 후 용기에 압축하여 소매판)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특げ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텔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 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식초 또는 초산과 가향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화장실용 비니거 썬 스크린 또는 썬텐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페이스파우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4.91-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소매포장이 아니더라도 추가 가공 없이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물품은 제3304호에 분류할 수 있지만, 완성품이 아닌 원료의 경우는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



7.7 MAKE UP SETTING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
유형	메이크업 퍽서티브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을 스프레이형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45ml)
- ❖ 용도 : 얼굴에 분무하여 막을 형성하여 메이크업 퍽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는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7.8 Make-up base

HSK 2025	3304.99-2000	분류근거	-
유형	메이크업 베이스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한 살구색 크림상을 수지제 튜브용기에 포장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판장 (내용량 30g)
- ❖ 용도 : 베이스 메이크업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 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기타의 메이크업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2000호에 분류함



7.9 Tattoo Marker

HSK 2025	3304.99-2000	분류근거	-
유형	바디페인팅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제조한 붉은색 점조 액상을 붓펜 형상에 담은 물품으로 피부 문신용 분장재
- ❖ 용도 : 피부에 그림, 문자 등을 그리는 용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 같은 호 HS해설서 (A)-(3)에서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탈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페인트;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등"을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를 분류하나,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연극용 그리스페인트(grease paints)와 그 밖의 분장(make-up)제"를 제외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피부에 문자 또는 그림 등을 그리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2000호에 분류함

7.10 Grease pa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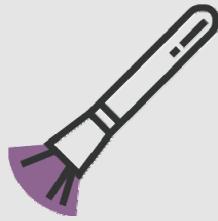
HSK 2025	3304.99-2000	분류근거	-
유형	분장용 크림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성된 녹색, 갈색 등의 반고상을 각각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나누어서 담아 소매 포장한 얼굴 위장(분장) 크림
- ❖ 용도 : 서바이벌 게임이나 군, 예비군 훈련에서 위장 시 얼굴에 바르는 안료 조제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로서 얼굴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이 분류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212호의 제외규정에 의하면 "연극용 그리스 페인트 및 기타 분장제"는 제330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분장제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2000호에 분류함



8장 두발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샴푸(solid form)	3305.10-0000
2	샴푸(탈모방지용)	3305.10-0000
3	샴푸 바디클렌저 겸용	3305.10-0000
4	스트레이트닝용 조제품	3305.20-0000
5	스트레이트닝용 중화제	3305.20-0000
6	헤어 스프레이	3305.30-0000
7	헤어 크림	3305.90-2000
8	헤어 톤ics(hair tonics)	3305.90-9000
9	헤어 오일	3305.90-9000
10	헤어 무스	3305.90-9000
11	헤어 젤	3305.90-9000
12	두피 스크럽	3305.90-9000
13	헤어 마스크	3305.90-9000

8장

두발용 제품류



■ 두발용 제품류의 종류

-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헤어 팩(hair pack), 린스
- 2)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 3)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4) 헤어 크림·로션
- 5) 헤어 오일
- 6) 샴푸
- 7)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hair permanent wave)
- 8)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9) 흑채
- 10)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 모발 화장품 개요

모발 화장품은 두피 및 모발을 세정하여 청결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두피 건강 및 모발의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에 따라 모발 화장품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다양화하여 세정을 기본으로 하고 탈모방지, 정발 효과, 비듬 방지,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등의 제품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모발용 제품 중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확대에 따라 염모제, 탈염, 탈색제, 제모제는 화장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양모제, 발모제는 의약외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래 표에 다양한 모발 제품의 종류와 기능을 분류하였다.



표 3.8.1 모발 화장품의 종류와 기능

사용목적	종류	주요기능	비고
세발	샴푸	두피 및 모발의 오염제거	화장품
	린스		화장품
스타일링	헤어젤, 왁스, 스프레이	모발의 정돈 및 스타일링	화장품
정발 및 영양	헤어트리트먼트	샴푸 잔류물 제거 및 정발	화장품
	헤어크림, 로션	모발영양공급	화장품
염색	염모제	모발의 염색	화장품
	탈색제	모발의 탈색	화장품
퍼머넌트웨이브	퍼머액	웨이브헤어	화장품
	헤어스트레이트너	스트레이트헤어	화장품
체모의 제거	제모제	체모의 제거	화장품
탈모 방지 및 양모	헤어토닉	두피 영양 공급	화장품
	양모제	탈모방지 및 양모	의약외품
	발모제	발모	의약품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의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5			두발용 제품류
	10	0000	샴푸
	20	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30	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90		기타
		1000	헤어린스
		2000	헤어크림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
- (2) 퍼머넌트 웨이빙용(permanent waving)이나 스트레이트닝용(straightening) 제품류
- (3) 헤어래커(hair lacquer)[종종 “헤어 스프레이(hair spray)”라고도 한다]
-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

두피 이외의 체모(體毛)에 바르는 조제품은 제외한다(제3307호).



두발용 제품류

8.1 SHAMPOO BAR

HSK 2025	3305.10-0000	분류근거	-
유형	샴푸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유기 계면활성제, OO 오일, 지방산 등을 혼합 조제하여 만든 고체형상(직육면체)의 샴푸를 자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샴푸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소호 제3305.10호에 “샴푸”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샴푸 :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 · 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 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의 것”을 제외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한 소매포장된 샴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10-0000호에 분류함



두발용 제품류

8.2 Hair Care Shampoo

HSK 2025	3305.10-0000	분류근거	-
유형	샴푸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한 유백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탈모방지용 샴푸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5.10호에 “샴푸”가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1)샴푸는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 치약 · 면도용 크림과 폼(foam) · 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의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샴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10-0000 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03호부터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갖고 있더라도 해당 호에 분류

8.3 WASH & SHAMPOO

HSK 2025	3305.10-0000	분류근거	-
유형	샴푸 바디클렌저 겸용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한 무색투명 점조 액상을 펌프가 달린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BABY WASH & SHAMPOO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5.10호에 “샴푸”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1)샴푸는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 주 제1호 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에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치약·면도용 크림과 폼(foam)·목욕용 조제품(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의 것”을 제3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샴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10-000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WCO 제68차 HSC 결정(21.09.)
 - 경합세번 : 제3305.10호 vs 제3401.30호
 - 분류사유 : 샴푸(제3305.10호)와 피부세척(제3401.30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 제34류 주 제1호 다목의 제외(샴푸) 규정에 따라 제3305.10호에 결정

8.4 Preparations for straightening

HSK 2025	3305.20-0000	분류근거	-
유형	스트레이트닝 조제품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튜브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스트레이트닝용 제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소호 제3305.20호에서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한 스트레이트닝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20-0000호에 분류함



두발용 제품류

8.5 Preparations for straightening

HSK 2025	3305.20-0000	분류근거	-
유형	스트레이트닝 중화제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스트레이트닝용 중화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을 분류하고 소호 제3305.20호에서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세분류하고 있고,
- ❖ 관세율표 제33류 류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한 스트레이트닝용 중화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20-0000호에 분류함

8.6 Hair lacquer

HSK 2025	3305.30-0000	분류근거	감정22701-3507
유형	헤어 스프레이	시행일자	1989.11.3.

1. 물품설명

- ❖ SD alcohol 40, Butane, Propane, Butyl amino ethyl methacrylate polymer, Fragrance 등으로 조제한 무색 액상을 Spray Can에 소매포장한 것

2. 결정사유

- ❖ 주된 기능이 모발의 고정용에 사용하는 두발용 제품류의 것이므로 HS 해설서 제3305호 (3)항의 규정에 따라 HSK 3305.30-0000호에 분류함



두발용 제품류

8.7 HAIR CREAM (CURL POWER)

HSK 2025	3305.90-2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9121
유형	헤어 크림	시행일자	2023.7.20.

1. 물품설명

- ❖ Cetearyl alcohol, Glycerine, Fragrance, Bergamot oil, Litsea cubeba oil, Olibanum oil, Amyl cinnamal, Benzyl cinnamate, Cinnamal, Cinnamyl alcohol, Citral, Geraniol, Limonene, Linalool,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5g)
- ❖ 용도 : 두발용 제품(헤어 크림)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중략…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cream-rinses)”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헤어크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2000호에 분류함

8.8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
유형	헤어 토닉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튜브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35g)
- ❖ 용도 : 헤어 토닉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 ❖ 본 품은 각종 식물성 추출물, 기타 피부컨디셔닝제와 점증제, 보존제 등으로 조제한 헤어토닉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두발용 제품류

8.9 Hair oil serum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
유형	헤어 오일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오일 등으로 조성된 백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손상된 모발 케어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증략…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s)”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된 헤어케어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8.10 Hair styling mousse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감정22701-3425
유형	헤어 무스	시행일자	1990.10.17.

1. 물품설명

- ❖ Water, Butane, PVP, Diethylene glycol dioctanoate, Protein, Isostearic Acid, Propane 등으로 조제된 것을 순중량 6온스의 스프레이 캔으로 포장한 것.

2. 결정사유

- ❖ 기타의 두발용 화장품에 해당되므로 HS 3305.90-9000호에 분류.



두발용 제품류

8.11 ORIOX ELEGANCE HAIR GEL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8488
유형	헤어 젤	시행일자	2016.12.13.

1. 물품설명

- ❖ Water, Maltitol, Glycerin, Propylene glycol, Polysorbate20, Green tea extracts, Carbomer, Triethanolamine, Chlorphenesin, Phenoxyethanol, Fragrance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한 젤 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420mL)
- ❖ 용도 : 헤어젤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고,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 오일·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 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모발 고정용의 두발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8.12 SCALP SCRUB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629
유형	두피 스크럽	시행일자	2020.08.07.

1. 물품설명

- ❖ Water, 토판염, Glycerine, Lauryl glucoside, Disodium cocoamphodiacetate, Menthol, EDTA-2Na, DL-Panthenol, Carboxylmethyl cellulose sodium, 마치현추출물, 숯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 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 120g)
- ❖ 용도 : 두피의 노폐물 · 각질제거 및 모발 성장 촉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됨



- ❖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0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두발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8.13 HAIR MASK

HSK 2025	3305.90-9000	분류근거	-
유형	헤어 팩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① 합성섬유제 부직포 헤어캡(1개)과 ② 페이스트상의 헤어 영양제(제시규격 30g)가 플라스틱제 파우치의 상부와 하부에 구성되어 있음
- ❖ 용도 : 헤어 슬리핑 팩

2. 결정사유

- ❖ 같은 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 · 크림[포마드(pomades)]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cream-rinses)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상부와 하부로 일부 분리되도록(완전히 분리되지 않음) 절단선이 있는 플라스틱제 파우치에 상부에는 제6505호에 분류되는 부직포제 헤어 캡이 있고, 하부에는 제3305호에 분류되는 백색계 페이스트의 두발용 제품이 소매포장되어 있어, 함께 사용하여 수면시간 동안 머리의 영양을 공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바르고 씻어내는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스타일링을 목적으로 하는 헤어크림 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두발용 제품류와 헤어 캡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두발용 제품류에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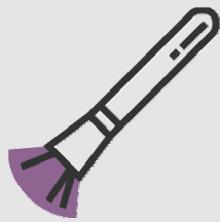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3. 참고사항

- ❖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세트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분류된 사례
-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9장 손발톱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네일에나멜	3304.30-1000
2	네일에나멜(겔)	3304.30-1000
3	네일 에센스	3304.30-9000
4	네일폴리시 리무버	3304.30-9000



9장

손발톱용 제품류



■ 손발톱용 제품류의 종류

-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3) 탑코트(topcoats)
- 4) 네일 크림·로션·에센스·오일
- 5)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 네일 메이크업

네일 메이크업 제품은 손톱을 보호하고, 손톱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화장료로 손톱에 미관을 주어 근대 미용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분말이나 페이스트 상으로 손톱에 색을 내는 것은 곤란하므로 사용이 간편하면서도 광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네일 에나멜이 이용된다. 아래의 표에 네일 메이크업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하였다.

표 3.9.1 네일 메이크업의 종류

순 서	기 능	제 품
손질	손톱 및 손가락 끝손질	네일케어 제품
밀칠	손톱의 굴곡을 메워 접착성을 좋게 함	베이스 코트
메이크업	손톱에 착색	네일 에나멜
겉칠	광택, 내구성을 좋게 함	탑 코트
건조 촉진	건조를 빠르게, 도포 막에 광택 부여	네일 드라이어
제거	도포막 제거	네일 리무버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9000	기타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9000	기타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00	네일에나멜
	9000	기타
	9	기타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페이스파우더
	2000	베이비파우더(탈콤파우더를 포함한다)
	9000	기타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3000	어린이용 제품류
	9000	기타

(B) 매니큐어(manicure)용 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 · 제3004호)
- (b)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 (c)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손발톱용 제품류

9.1 Nail enamels

HSK 2025	3304.30-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5393
유형	네일에나멜	시행일자	2018.11.8.

1. 물품설명

- ❖ 손톱에 바르는 수성 매니큐어(10ml x 3ea)
- ❖ 용도 : 매니큐어

③ [피치핸드 네일 컬러] 손톱에 바르는 수성 매니큐어



11 벨 열로우

42 에리얼 핑크

43 베를검 핑크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30호에서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varnish) 제거제·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및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매니큐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30-1000호에 분류함



손발톱용 제품류

9.2 UV COLOR GEL

HSK 2025	3304.30-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6434
유형	네일 에나멜(겔)	시행일자	2013.8.27.

1. 물품설명

- ❖ Aliphatic Urethaneacrylate, 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ate, Pigment 등으로 조제한 보라색 겔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g)
- ❖ 용도 : 인조손톱 네일아트용(UV에서 코팅됨)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30호에서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광택제·바니시·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 및 기타의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네일 애나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304.30-1000호에 분류함



손발톱용 제품류

9.3 RED THERAPY NAIL SERUM

HSK 2025	3304.3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6668
유형	네일 에센스	시행일자	2019.1.16.

1. 물품설명

- ❖ Mineral Oil, Polymer, 향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브러시가 부착된 스틱상의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7ml)
- ❖ 용도 : 손톱에 영양을 공급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30호에서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손톱에 영양공급과 보습을 위해 사용하는 매니큐어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30-9000호에 분류함



손발톱용 제품류

9.4 Nail polish remover

HSK 2025	3304.30-9000	분류근거	분석47260-0995
유형	네일폴리시 리무버	시행일자	2003.9.24.

1. 물품설명

- ❖ Methyl lactate, Ethyl lactate, Tetra hydro furfuryl alcohol, Dimethyl glutarate, Dimethyl adipate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투명한 플라스틱 관(직경 3mm, 길이 70mm)에 충전하고 양쪽을 면솜으로 감은 면봉 형태로 소매용 포장됨(24개/1통)
- ❖ 용도 : 네일 폴리시 리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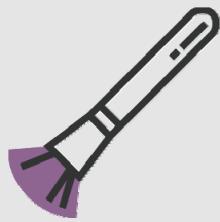
2. 결정사유

- ❖ 본품의 주요 특성은 네일 폴리시 리무버로서 메니큐어용 제품류에 해당되며 HS 해설서 제3304호(B)항에 ”매니큐어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30-9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네일 에나멜(nail enamel)은 손톱의 표면에 색채를 부여하고 딱딱하고 광택이 있는 피막을 형성하여 손톱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제품으로 매니큐어(manicure) 또는 네일 래커(nail lacquer)라고도 한다. 피막 형성제인 니트로셀룰로오스 및 수지, 가소제는 구연산 에스테르, 용매는 초산에틸, 초산부틸, 에탄올이, 희석제로 톨루엔이 사용된다. 네일 에나멜의 용제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하고 분산된 안료가 침전되기도 하므로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에나멜 리무버(Enamel remover)는 네일 에나멜 막을 제거하는 것으로 피막 형성 수지를 용해하는 아세톤이 주성분이며 보습 기능을 부가한 제품도 있다.



10장 면도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에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3307.10-1000
2	에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3307.10-1000



10장

면도용 제품류



■ 면도용 제품류의 종류

-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2)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3)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4) 셰이빙 폼(shaving foam)
- 5)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 남성용 화장품

남성 피부의 특성을 고려하고 일반적으로 끈적임을 싫어하는 남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뜻하고 끈적임이 적고 흡수가 빠른 사용감이 요구되는 것이 남성용 기초화장품의 특징이다. 또한 남성은 여성과 달리 면도라는 행동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도 전후에 사용하는 면도용 화장품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면도용 화장품은 면도용 비누, 폼이 있고 면도 전후에 사용하는 스킨로션, 에멀전이 있다. 면도용 비누, 폼 및 크림은 면도 전에 수염을 팽윤, 연화시켜 면도가 부드럽고 쉽게 되도록 하며 면도에 의한 피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며 면도 후에 사용하는 스키니로션이나 유액은 면도 후의 상처에 대한 진정, 소독, 항염 효과 및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한 화장품이다.

3.10.1. 면도용 비누

면도용 비누는 세정력보다는 거품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일하며 지속성이 있는 풍부한 거품을 가지며 비누에 비해 지방산과 글리세린이 많이 사용된다.

3.10.2. 면도용 크림

면도용 크림(shaving cream)에는 크림과 폼이 있으며 쉐이빙 크림은 지방산 비누를 40~50% 함유한 것으로, 비누의 유화와 알칼리성에 의해 수염을 팽윤, 연화시켜 깎기 쉽게 한 것으로 물로 수염을 적시고 쉐이빙 크림을 바른 후 브러시로 거품을 내고 면도를 한 후 물로 씻어낸다.

면도 폼의 처방은 원액과 이를 분사하여 거품상으로 하는 가스 추진제로 되어 있다. 원액은 거품의 지속성을 좋게 하고, 수염을 깎기 쉽게 하기 위해 비누, 비이온 병용형 유화 형태로 되어 있다. 가스 추진제로는 오존층 파괴 때문에 프레온(freon)을 사용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나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를 사용한다.

3.10.3. 면도 전 로션

면도기의 보급과 함께 면도를 용이하게 하는 화장수 형태의 면도 전 로션을 사용하게 되었다. 징크페놀설포네이트(zinc phenolsulfonate), 탄닌 등 수렴제를 배합하여 피부를 수축시킴으로써 털을 경직화하는 것과 실리카 같은 구상 분말을 배합하여 전기 면도기가 매끄럽게 미끄러지도록 하는 것이 있다.

3.10.4. 면도 후 스킨 로션

면도기에 의해 생기는 상처의 감염과 피부 거칠어짐을 방지하면서 청량감, 피지 조절, 보습 효과 등을 주기 위해 면도 후에 사용하는 일종의 수렴 스킨 로션이다. 여성용 스키너션에 비해 에탄올 배합 함량이 많으며 항염, 피지 조절 성분이 함께 사용된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면도용 제품류
		1000	애프터 세이빙로션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면도용 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

예: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 “면도 후에 사용하는(after-shave”) 로션 · 알룸블록(alum block)과 지혈막대(styptic pencil) 블록(blocks)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외한다(제3401호).

※ 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제34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터(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 용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다.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샴푸 · 치약 · 면도용 크림과 폼(foam) · 목욕 용 조제품(제3305호 · 제3306호 · 제3307호)

10.1 After shave preparation

HSK 2025	3307.10-1000	분류근거	-
유형	애프터쉐이브 로션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혼합 조제한 투명 액상을 원통형의 유리용기에 포장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판 한 것(내용량 : 150ml)
- ❖ 용도 : 면도 후 피부진정 및 보습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 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면도용 제품류(pre-shave, shaving or after-shave preparations) 예: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면도 후에 사용하는(after-shave) 로션”을 예시하고 있음
- ❖ 본 품은 면도 후에 사용하는 애프터 쉐이브 로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10-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비누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면도용 크림과 품은 제3401.30호(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에 분류하지 않고 제3307호에 분류하나, 별록 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3401.1호에 분류



면도용 제품류

10.2 After shave preparation

HSK 2025	3307.10-1000	분류근거	-
유형	애프터셰이브 로션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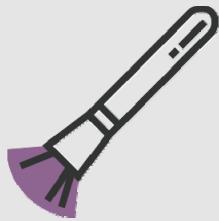
- ❖ OO 등으로 조성된 담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지제 박스로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면도 후 얼굴에 바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 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10-1000호에는 “애프터 셰이빙로션”이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면도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 후 로션(after-shave lotion)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애프터 셰이빙로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10-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비누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면도용 크림과 품은 제3401.30호(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에 분류하지 않고 제3307호에 분류하나, 블록모양의 면도용 비누는 제3401.1호에 분류



11장 기초화장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파우더(과잉 피지 피부에 사용)	3304.91-1000
2	파우더(리프팅 용액과 혼합해서 사용)	3304.91-9000
3	파우더형 팩	3304.91-9000
4	토너	3304.99-1000
5	마사지 크림	3304.99-1000
6	에센스	3304.99-1000
7	보습오일	3304.99-1000
8	페이스트형 팩	3304.99-1000
9	겔형 팩	3304.99-1000
10	겔형 눈주위 팩	3304.99-1000
11	로션	3304.99-1000
12	크림	3304.99-1000
13	크림(기능성 화장품)	3304.99-9000
14	아이크림(기능성 화장품)	3304.99-9000
15	핸드 크림	3304.99-1000
16	핸드·바디 로션	3304.99-1000
17	클렌징 워터	3304.99-1000
18	클렌징 크림	3304.99-1000
19	클렌징 밤	3304.99-1000
20	기타(필러)	3304.99-9000
21	부직포형 팩	3307.90-4000



11장

기초화장용 제품류



■ 기초화장용 제품류의 종류

- 1) 수렴 · 유연 · 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2) 마사지 크림
- 3) 에센스, 오일
- 4) 파우더
- 5) 바디 제품
- 6) 팩, 마스크
- 7) 눈 주위 제품
- 8) 로션, 크림
-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 기초화장품 개요

사람의 피부는 자연적인 피부 보습 기구가 있지만 땀과 오염 등의 대사물질이 존재하고, 비록 신선한 피지가 분비되어도 장시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소나 미생물의 영향을 받기 쉬워 산화 분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부 항상성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것이 기초화장품이다.

기초화장품의 사용 목적은

- ① 피부의 청결
- ② 피부의 유, 수분 균형유지
- ③ 피부의 신진대사촉진
- ④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부 보호이다.

기초화장품의 기능은 피부 기능의 정상화로 유, 수분 불균형 및 감소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기본기능은 세정, 청결, 건조방지, 보습, 탄력부여 등이며 특수한 기능은 미백, 주름 예방, 자외선 차단, 여드름 방지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령, 피부 유형, 계절, 생활환경, 장소, 시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화장품의 적절한 미용법이 필요하다.

우선 피부에서의 오염이나 메이크업 화장품 잔유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어야 한다. 클렌징크림이나 클렌징 오일, 비누나 폼 클렌징 등으로 세정해주는 세안제 제품부터 피부 세정 후에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고 흡습성, 보습성이 높은 물질과 함께 피부에 공급해 주는 화장수도 기초화장품이다. 화장수에는 보습력이 좋은 보습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화장수만으로는 각질층의 보습력을 장시간 유지시키기는 곤란하여 끈적임을 최소화면서 적절한 유분을 보충하여 보습을 유지해 준다. 유화 제품은 지질이나 계절 등의 외적 조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유분량이 다른 여러 형태의 제품과 피부 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유화 제품은 액상 형태의 로션, 반고상(半固狀)의 크림 등 유화 기술을 기본으로 한 기초화장품은 화장할 때 중요한 요소이다.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9000	기타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9000	기타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00	네일에나멜
	9000	기타
9		기타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페이스파우더
	2000	베이비파우더(탈쿰파우더를 포함한다)



품목번호		품명
	9000	기타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3000	어린이용 제품류
	9000	기타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 여드름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 식초나 초산과 향을 첨가한 알코올의 혼합물로 된 토일렛 비니거(vinegar)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도 포함한다.

(B) 매니큐어(manicure)용제품류나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이 부분에는 매니큐어(manicure)용이나 페디큐어(pedicure)용의 광택제·바니시(varnish)·바니시 제거제·각피 제거제와 그 밖의 제품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a) 특정 피부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의약조제품(예: 습진 치료용 크림)(제3003호 · 제3004호)
- (b) 발냄새 방지제와 동물의 손톱이나 발톱 처치용 조제품(제3307호)
- (c) 인조손톱(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3926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

11.1 Face powder

HSK 2025	3304.91-1000	분류근거	-
유형	파우더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제된 백색 분말상을 분첩과 원형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g)
- ❖ 용도 : 과잉 피지로 인해 민감해진 피부의 분을 흡착시켜 산뜻하게 가꿔주고, 민감한 피부의 진정을 도와 피부 보호에 도움을 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3304.91-1000호에 “페이스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텔컴파우더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가루상의 페이스 파우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4.91-1000호에 분류함



기초화장용 제품류

11.2 Lifting powder

HSK 2025	3304.91-9000	분류근거	-
유형	파우더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
- ❖ 용도 : 피부에 탄력증가 및 리프팅 유지력 증가
(lifting powder + lifting solution을 혼합하여 사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3304.91-1000호에 “페이스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텔컴파우더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가루(powder)상의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11.3 SPIRULINA COOLING MASK(BULK)

HSK 2025	3304.91-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672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파우더형 팩	시행일자	2013.10.11.

1. 물품설명

- ❖ 스피루리나, 규조토, 알긴산, 황산칼슘, 인산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 멘톨, 메칠디이소프로필 프로피온아마이드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청색 가루상
- ❖ 기능 : 해초의 미네랄로 피부 활력, 수분 공급, 피부결을 매끄럽게 함
- ❖ 용법 : 파우더형 마스크를 물에 넣고 혼합하여 페이스트 형태의 젤을 만들고, 얼굴에 도포한 후 20분 정도 지나면 해초 베이스가 굳어져 고무처럼 되고, 화장품 성분이 침투된 후 이를 제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판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얼굴용 파우더,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터를 포함한다), 기타 파우더 및 그리스 페인트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스피루리나, 규조토, 알긴산, 황산칼슘, 인산나트륨, 피로인산사나트륨, 멘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화장품으로 가루(분말) 상태의 것으로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에 해당됨
- ❖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이 보다 협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소호 제3304.99호의 "그 밖의 화장품"에는 분류할 수 없음
- ❖ 따라서, "가루상(powder)의 화장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04.91호(가루상의 화장품)와 제3304.99호(기타_기초화장품)에 둘 다 분류 가능한 것으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기타'보다 '가루상 화장품'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므로 3304.91호에 분류함

❖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11.4 CICA CLEAR TONER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2901
유형	토너	시행일자	2022.2.4.

1. 물품설명

- ❖ Water, Butylene Glycol, Glycerin, Cetraria Islandica Extract, Hydrolyzed Coral, Hyaluronic Acid, betaine 등으로 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130ml)
- ❖ 용도 : 기초화장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HSK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중략)...(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탈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리닝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화장수

화장수는 일반적으로 향이나 오일을 가용화시킨 투명 또는 혼탁의 액상의 화장품이지만 마이크로에 밀전이나 나노에밀전 기술을 이용한 반투명, 불투명 형태도 있다. 화장수는 피부에 도포하여 청정작용과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pH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피부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의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긴장감을 주는 수렴작용, 가벼운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작용 등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다. 처방 구성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물이지만, 사용 목적과 사용자의 연령, 다른 피부 상태 또는 화장습관이나 기호에 따라 보습제의 종류와 양, 에탄올 및 유분 함량을 고려하여 성분의 종류나 배합량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 요구되는 품질로서 보습효과는 물론이고, 산뜻한 사용감, 투명하면서 아름다운 외관도 중요한 항목이다.



표 3.11.1 화장수의 종류

종 류	특 징
유연화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질층에 수분 공급, 보습성분에 의해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유지하게 함피부표면의 pH와 유사한 pH 5.5~6.5 정도로 조절
수렴화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질층에 수분, 보습성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수렴작용, 피지분비 억제, 모공 축소, 아스트린젠트 혹은 토닝 스킨으로도 불림
세정용 화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벼운 화장 및 피부 오염 제거로 피부 청결, 사용감이 가벼움
유화형 화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유화 입자의 미세화, 보습효과 우수, 건성 피부용
다층 화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2층 이상의 층을 이루는 화장수로 유층/수층, 수층/분말층 등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흔들어 사용하며, 일정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분리됨

11.5 SHEVA Massage Cream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957
유형	마사지크림	시행일자	2024.5.21.

1. 물품설명

- ❖ 자일리톨, 이소펜틸디올, 멘톨, 펜틸렌 글리콜, 멘틸 락테이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비즈왁스,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세틸 알코올, 폴리글리세릴-10미리스테이트, 폴리아크릴레이트 크로스 폴리머-11, t-부틸 알코올, 실리카, 트리에틸헥사노인, 에뮤오일,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백색 크림상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 용도 : 기초화장품(피부 보습, 마시지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 · 스킨 푸드(skin food)(별꽃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크림(cream)

크림은 유액처럼 물과 오일이 서로 혼합된 유화물의 형태이다. 유액은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이지만 크림은 점도가 높아 유동성이 없는 반(半)고형상 에멀전이다. 유액과 비교하여 다양한 오일 및 왁스류가 사용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분, 보습제 등을 여러 가지 비율로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이다.

표 3.11.2 크림의 종류

항 목	종류	기능 및 특징
기능별분류	모이스처크림	영양크림이라고도 하며 보습, 유연효과
	클렌징크림	두꺼운 메이크업 잔류물이나 오염제거
	마사지크림	혈행촉진 및 피부 유연효과
	선블록크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핸드크림	건조 및 주부습진 예방, 각질 유연
	헤어크림	모발 보호 및 정발효과
제형별 분류	O/W 크림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일반적인 크림
	W/O 크림	보습효과 우수
	W/O/W 크림	사용감 및 보습효과 우수
	W/S 크림	가벼운 사용감, 유효성분 안정성 우수

11.6 Monique lab the first skin essence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326
유형	예센스	시행일자	2019.4.9.

1. 물품설명

- ❖ Saccharomyces ferment filtrate, Butyl glycol, 1,2-Hexanediol, Illicium verum(Anise) fruit extract, Scutellaria baicalensis root extract(황금 추출물), Sodium hyaluronate 등으로 조제한 무색투명 액상을 유리제 용기에 포장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150ml)
- ❖ 용도 : 기초화장품(예센스)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 “(A)-(3)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가 분류되며,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에센스(essence, serum)

미용 성분이나 특수 유효성분을 고농도로 함유한 제형으로 일명 세럼(serum)이라고도 하며 유액처럼 유동성을 갖는 것도 있으나 크림에 가까운 유동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로 O/W 형태의 투명, 반투명 제형이나 제형에 따라 주성분,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며 주로 기능성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형이다.

표 3.11.3 에센스의 제형 분류

형태	사용 기술	특징
투명, 반투명 겔상 형태	가용화, 마이크로 에멀전, 리포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습제를 다량 배합하여 보습효과 우수• 고분자 접증제의 사용으로 점성 부여
유화 형태	O/W, W/O, W/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용성 성분 및 효능성분 다량 함유• 보습제 다량 함유
오일 형태	마이크로에멀전, 가용화(역마이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리브유, 호호바유, 링크유, 스쿠알란 등 천연 오일을 사용• 사용감이 떨어지고 번들거림이 있는 단점이 있음
2제 혼합 형태	Spray dry, Freeze dry, Capsu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능성분 및 제제의 안정화를 위해 분무건조 또는 동결건조실시• 시각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기타	분말 배합, 알코올 고농도 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지흡착 등을 목적으로 사용

11.7 SCn'F SQUALANE OIL NATURAL 100%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9097
유형	오일	시행일자	2017.8.17.

1. 물품설명

- ❖ Squalane 100% 오일을 유리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30ml)
- ❖ 용도 : 기초화장품(피부보습)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부 주 제2호에서 "이 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제3808호로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썬스크린과 썬텐 조제품을 포함한다)에는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 포장한 피부 보습용 기초화장품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Squalane은 제2901호에 분류되는 단일한 유기화학 물질이지만, 화장품으로 사용하도록 명백히 소매포장된 것은 제3304호의 기초화장품에 분류함
- ❖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제33류 주 제3호

3.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

제33류 총설

위의 용도에 더하여 타 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예: 바니시(varnish)]과 혼합되지 않은 물품[예: 방향 처리되지 않은 활석 가루, 표포토(산성백토), 아세톤, 명반(alum)]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a)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종류의 포장이 되어 있으며 향료 · 화장품류 · 화장용품류 · 실내용 탈취제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레이블(label) · 인쇄물 · 그 밖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
- (b) 명백히 앞에서 설명한 용도에 쓰이도록 특정화된 모양으로 한 것(예: 작은 병 속에 넣은 손톱용 바니시(varnish)로서 그 바니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브러시를 갖추고 있는 것)

제29류 총설

(D)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로서 제29류에서 제외하는 물품

- (d) 소매 포장된 조제향료와 화장품류나 화장용품류(예: 아세톤)(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

11.8 MUL AKWA TM LAVAPURE TM VOLCANIC MUD MASK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923
유형	페이스트형 팩	시행일자	2020.4.7.

1. 물품설명

- ❖ Camellia sinensis leaf water, Kaolin, Glycerin, Butylene glycol, Bentonite, Magnesium aluminum silicate, Charcoal powder, 1,2-Hexanediol 등으로 혼합 조제한 회색계 페이스트상 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 용도 : 마스크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 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에는 미용크림 · 콜드크림 · 메이크업크림 · 크린싱크림 · 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팩 및 마스크 (pack & mask)

피부 보호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피부에 여러 가지 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코, 목, 어깨, 팔, 다리 등 특정 부위에 도포하는 부분용 및 온몸에 도포하는 전신용이 있다. 팩은 피부에 도포하고 일정 시간 방치하여 함유된 수분 및 영양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한 후 떼어 내거나 씻어내는 형태의 제제로 오늘날 간편한 사용성과 우수한 효능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가장 많은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11.4 팩 및 마스크의 종류 및 특징

구 분	성 상	특 징
필오프 (peel-off) 형태	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 또는 반투명의 겔상• 도포 후 일정시간 건조되면 투명한 피막형성• 보습제 및 피막의 차단효과에 의해 보습 및 유연효과• 피막을 제거할 때 오염물 및 각질도 동시에 제거
	페이스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겔상에 비해 분말, 유분, 보습제를 다양으로 배합할 수 있어 보습 및 유연효과가 우수함• 기타 효과는 겔상과 같음
워시오프 (wash-off) 또는 티슈오프 (tissue-off) 형태	크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O/W 유화형태의 크림상 제품으로 사용 후 물로 씻어내거나 미용 화장지로 닦아내는 제품
	점토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드팩이라 불리는 것으로 크림상에 점토성분을 함유• 사용법은 크림상 제품과 동일
	젤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성 고분자를 이용한 크림상 제품• 사용법은 크림상 제품과 동일
	에어로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화열에 의해 청량감 부여

구 분	성 상	특 징
고체화 후 박리 형태	분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고팩이라 불리우며 석고 화학성분인 황산칼슘의 수화열(水和熱)에 의해 열감을 부여하는 제품 고체화 후 딱딱해진 제품을 뜯어냄
시트(sheet) 형태	부직포겔 시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성 고분자 겔에 미용성분이 함유된 형태의 마스크 사용 후 씻어 내거나 닦아 내거나 또는 시트만 제거함
	부직포 함침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직포를 화장수나 에센스에 함침 시킨 형태로 사용이 간편하고 청량감을 부여함 사용 후 씻어 내거나 닦아 내거나 또는 시트만 제거함



기초화장용 제품류

11.9 Petit gold & egf hydrogel mask pack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064
유형	겔형 팩	시행일자	2015.3.31.

1. 물품설명

- ❖ 정제수, 글리세린, 칼슘클로라이드, 부틸렌글라이콜, 캐럽콩 검, 잔탄검, 카라기난, 카프릴릴글라이콜, 페녹시에탄올, 식물성 추출물, 향료 등으로 조제된 마스크 형상의 겔상 팩을 수지제 팩에 소매판한 것(1매/pack)
- ❖ 용도 : 마스크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썬스크린과 썬텐 조제품을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을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마스크팩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화장품 성분을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에 도포나 침투시킨 경우 제3307호에 분류
- ❖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제3307호 용어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3307호 해설서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제모제(deepilatories)
- (2) 향낭(scented sachets)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소독용·담금용(soaking)·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11.10 Petitfee gold & egf eye & spot patch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063
유형	겔형 눈 주위 팩	시행일자	2015.3.31.

1. 물품설명

- ❖ 정제수, 글리세린, 칼슘클로라이드, 부틸렌글리콜, 캐럽콩 검, 잔탄검, 카라기난, 에칠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식물성 추출물, 향료 등으로 조제된 "U" 형상의 겔상 팩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90매/pack(아이패치 60매 + 스팟패치 30매)]
- ❖ 용도 : 눈가 등 마스크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썬스크린과 썬텐조제 품을 포함한다)”에 분류되는 것으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 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을 예시하고 있음
- ❖ 본 품은 겉상의 마스크팩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화장품 성분을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에 도포나 침투시킨 경우 제3307호에 분류
- ❖ 관세율표와 해설서

제3307호 용어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3307호 해설서

-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제모제(deepilatories)
 - (2) 향낭(scented sachets) : 린넨 장에서 향기를 피우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방향성(芳香性) 식물의 부분을 주머니 속에 넣은 물품
 - (3) 향을 첨가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4) 콘택트렌즈나 의안용 액. 이들은 세척용·소독용·담금용(soaking)·착용 중에 편안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
 - (6) 동물용 화장용품[예: 개(犬)용의 샴푸·새의 깃털 개량 세척제]
 -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의료용이나 의약용은 제외하며, 살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11.11 ORIOX ELEGANCE REFRESHING LOTION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8489
유형	로션	시행일자	2016.12.13.

1. 물품설명

- ❖ Water, Mineral oil, Ethanol, Glycerin, Cetearyl Alcohol, Glyceryl Stearate, Fragrance, Triethanolamine, Carbomer, Phenoxyethanol, Methylparaben, Disodium EDTA, Green tea extract 등으로 조제한 유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365mL)
- ❖ 용도 : 화장품(피부 보호, 유분공급 및 보습 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 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A)-(3)에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미용크림 · 콜드크림 · 메이크업크림 · 크린싱크림 · 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바디로션”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유액(lotion)

유액(乳液)은 화장수와 크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크림보다는 유분량은 적고 화장수보다는 많은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으로 일반적으로 로션이라고 한다. 계면화학의 진보, 제조 기술 수준의 향상, 제조 기기의 발달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유액이 개발되고 있다

표 3.11.5 유액의 피부 유형별 분류

용도	처방특성
건성 피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분과 보습제를 많이 함유하고 있음 • 풍부한 사용감으로 영양감이 느껴지며 다소 번들거림
중성 피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분과 보습제를 적절히 함유하고 있음 • 촉촉하지만 번들거리지 않으며 비교적 가볍게 발림
지성 피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분을 적게 함유하며 알코올을 적당량 배합하여 청량감을 제공 •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다공성 파우더를 함유하여 부드럽고 매트한 느낌
복합성 피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성 피부용에 가깝지만, 피지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
민감성 피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자극성 성분을 선별하여 사용 • 향, 알코올, 색소, 보존제 등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을 배제하거나 최대한 적게 함유



기초화장용 제품류

11.12 CICA BARRIER CREAM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2902
유형	크림	시행일자	2022.2.4.

1. 물품설명

- ❖ Water, ButylenE Glycol, Glycerin, Centella Asiatica Extract(병풀 추출물), Panax Ginseng Root Extract(인삼 추출물), Adenosine, Fragrance 등으로 조제한 백색계 크림상을 유리제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g)
- ❖ 용도 : 기초 화장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댄 제품류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HSK 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중략)...(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탈컴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리닝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포장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크림(cream)

크림은 유액처럼 물과 오일이 서로 혼합된 유화물의 형태이다. 유액은 유동성이 있는 에멀전이지만 크림은 점도가 높아 유동성이 없는 반(半)고형상 에멀전이다. 유액과 비교하여 다양한 오일 및 왁스류가 사용되고 안정성이 좋으며 유분, 보습제 등을 여러 가지 비율로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초화장품이다.

크림은 유상함량이 가장 많은 에멀전으로 유액에 비하여 오일이나 왁스 등과 같은 유성 성분과 보습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대하여 유, 수분 균형을 유지해주고 수분과 유분을 공급하여 피부의 보습, 유연 기능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특정 유효성분을 첨가함으로서 혈행촉진, 세정, 클렌징, 자외선 방어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11.13 PLARECETA Collagen Cream

HSK 2025	3304.99-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8710
유형	크림(기능성)	시행일자	2023.7.7.

1. 물품설명

- ❖ Niacinamide, Adenosine, Hydrolyzed Placental Extract(태반 추출물), Glycerin, Caprylyl Methicone, Butylene Glycol, Cetearyl Olivate, Betaine, 콜라겐추출물, 로즈마리잎오일, 병풀추출물, 1,2-Hexanediol, Water 등으로 혼합·조제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 용량: 50ml)
- ❖ 용도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 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한다). 예: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 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 ; 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을 위한 가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가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는 제3304.99-1000호(기초화장품)에 분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11.14 PLARECETA EYE CREAM

HSK 2025	3304.99-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8910
유형	아이크림(기능성)	시행일자	2023.7.13.

1. 물품설명

- ❖ Niacinamide, Adenosine, Butylene glycol, Glycerin, Placental Protein, Beeswax, Arginine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ml)
- ❖ 용도 : 기능성 화장품(피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 주름 개선 및 미백 효과의 기능성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경우는 제3304.99-1000호(기초화장품)에 분류

11.15 HAND CREAM FRAGRANCE FREE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579
유형	핸드크림	시행일자	2014.4.11.

1. 물품설명

- ❖ Water, Petrolatum, Glycerin, Distearyldimonium chloride, Propylene glycol, C12-15 alkyl benzoate, Cetyl alcohol, Caprylic/capric triglycerine 등을 혼합한 백색 크림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5g)
- ❖ 용도 : 핸드크림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손의 보습을 위한 기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11.16 Good Seed Avocado hand & Body Lotion natural skin moisturizer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9571
유형	핸드·바디제품	시행일자	2016.12.27.

1. 물품설명

- ❖ Purified water, Mineral oil, Glycerin, Propylene glycol, Cetearyl alcohol, Isopropyl Myristate, Microcrystalline Wax, PEG-40 Stearat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점조 페이스트를 플라스틱제 펌프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5mL)
- ❖ 용도 : 핸드 및 바디로션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핸드크림과 바디로션은 모두 제3304.99-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호의 용어(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

11.17 클렌징 워터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888
유형	클렌징 워터	시행일자	2019.7.3.

1. 물품설명

- ❖ 부틸렌글리콜,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1,2-헥산디올, 식물성추출물, 물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펌프식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 용도 : 클렌징 워터(화장 제거용, 피부의 노폐물 제거 및 보습효과)
 - * 사용방법 : 깨끗한 솜에 클렌징 워터를 부어서 적셔주어 피부결을 따라 닦아 화장을 지움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 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 (A)-(3)항에서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로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s)(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s)이나 보디로션”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피부의 노폐물 제거, 보습효과 등이 있는 기초화장품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세정용 화장수

세정용 화장수에는 주원료인 정제수 외에 양친매성 물질인 에탄올, 다가알코올, 가용화제로서의 계면활성제가 배합되어 다소나마 세정작용을 가진다. 세정용 화장수는 피부에 부착된 더러움이나 가벼운 메이크업을 제거하고 피부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의 화장수보다 에탄올, 다가알코올류, 계면활성제가 많이 배합된다.

표 3.11.7 피부세정용 화장품의 분류와 특징

형태	종류	특징
씻어내는 형태 (계면 활성제형)	비누	<ul style="list-style-type: none">대표적인 전신용 세정제로서 사용이 간편하지만 사용 후 피부 당김이 느껴짐
	클렌징 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피부 자극이 없어 민감한 피부에 적합보습제와 유연제가 풍부하여 당김이나 건조함 방지
	클렌징 젤	<ul style="list-style-type: none">다량의 오일과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어 세정력이 뛰어나지만 다소 답답한 느낌
	클렌징 파우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적당량의 물을 묻혀 거품을 내어 간편히 사용 가능
	페이셜 스크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미세한 알갱이 모양의 스크럽제 함유모공 깊숙이 있는 더러움과 각질 제거에 효과적
닦아내는 형태 (용제형)	클렌징 오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두꺼운 메이크업과 피부 노폐물까지 간편하게 제거
	클렌징 크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로 O/W형 에멀전으로 진한 메이크업 제거에 효과적
	클렌징 로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O/W형 에멀전으로 클렌징크림보다 산뜻한 사용감
	클렌징 워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화장솜에 적셔 사용하며 가벼운 메이크업 제거에 적합
	클렌징 젤	<ul style="list-style-type: none">수용성 젤에 다량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한 것으로 산뜻한 느낌이지만 세정력은 약함

11.18 FACIAL CLEANSER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9123
유형	클렌징 크림	시행일자	2023.7.20.

1. 물품설명

- ❖ Jojoba oil, Glycerin, Sunflower wax, Candelilla wax, Agave syrup, Orange blossom absolute, Linalool, Water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크림상(내용량 45g)
- ❖ 용도 : 기초화장품(클렌징크림)
 - * 사용방법 : 적당량을 덜어 피부를 충분히 마사지한 후 촉촉한 천이나 솜으로 깨끗이 닦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중략…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클렌징크림(cleansing cream)

무거운 색조 화장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제품으로 미네랄 오일의 함량에 의해 세정력이 달라지며 사용 후 미용 화장지로 닦아낸다. 대표적 유성 세안제이나 미용 화장지로 닦아내는 티슈오프(tissue-off)와 물로 씻어내는 워시오프(wash-off)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도 있다.

표 3.11.8 크림의 종류

항 목	종류	기능 및 특징
기능별분류	모이스처크림	영양크림이라고도 하며 보습, 유연효과
	클렌징크림	두꺼운 메이크업 잔류물이나 오염제거
	마사지크림	혈행촉진 및 피부 유연효과
	선블록크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핸드크림	건조 및 주부습진 예방, 각질 유연
	헤어크림	모발 보호 및 정발효과
제형별 분류	O/W 크림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의 일반적인 크림
	W/O 크림	보습효과 우수
	W/O/W 크림	사용감 및 보습효과 우수
	W/S 크림	가벼운 사용감, 유효성분 안정성 우수

11.19 FACE CLEANSING BALM

HSK 2025	3304.99-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9122
유형	클렌징 밤	시행일자	2023.7.20.

1. 물품설명

- ❖ Cocoa butter, Shea butter, Llipse butter, Alkanet extract, Jojoba oil, Almond oil, Oat milk, Fragrance, Lavender oil, Lavender extract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계 고상 (내용량 35g)
- ❖ 용도 : 기초화장품(클렌징 밤) * 사용방법 : 얼굴에 도포 후 티슈로 닦아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tan(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중략…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11.20 FILLER MOLECURE

HSK 2025	3304.99-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31405
유형	기타(필러)	시행일자	2022.10.10.

1. 물품설명

- ❖ Sodium Hyaluronate, Lidocaine Hydrochloride, Sodium phosphate, Disod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 · 조제한 무색투명 겔상을 멸균하여 유리제 주사기에 충전한 것과 주사침 2개를 플라스틱 트레이에 넣고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주름제거용 필러(내용량 : 1.1ml)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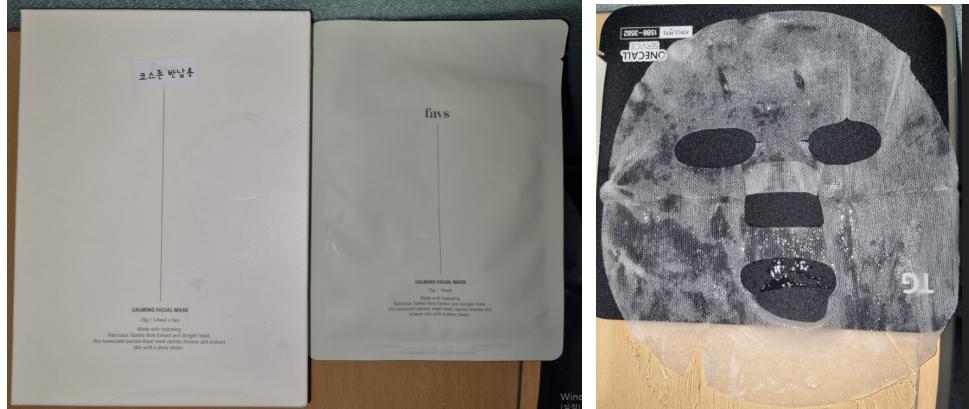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 (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미용 목적의 ‘주름제거를 위한 피내 주사용 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11.21 CALMING FACIAL MASK

HSK 2025	3307.90-4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3507
유형	부직포형 팩	시행일자	2022.2.22.

1. 물품설명

- ❖ Methylpropanediol, Niacinamide, Isopentylidol, 1,2-Hexandiol, Sodium Hyaluronate, Hydrogenated Lecithin 등을 침투·도포시킨 부직포(얼굴 전체를 덮을 수 있도록 눈, 코, 입부분에 구멍이 있음)를 수지팩에 내포장하여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물품
- ❖ 용도 : 마스크팩(피부 진정 및 보습)



2. 결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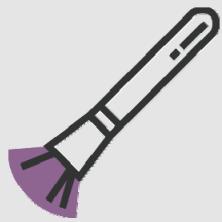
- ❖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5)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 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화장품을 부직포에 침투·도포한 마스크팩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화장품 성분을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와 부직포”에 도포나 침투시킨 것이 아닌 겉상의 마스크 팩은 제3304호에 분류



12장 체취 방지용 및 체모 제거용 제품류



번호	유형	HSK 2025
1	인체용 탈취제	3307.20-0000
2	땀 억제제	3307.20-0000
3	제모 왁스	3307.90-1000



12장

체취 방지용 및 체모 제거용 제품류



■ 체취 방지용 및 체모 제거용 제품류의 종류

- 1) 데오도란트
-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 HSK 결정을 위한 관세율표와 HS해설서 내용

품목번호		품 명
3307		면도용 제품류 · 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10	면도용 제품류
	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9000	기타
20	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30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1000	가향한 목욕용 염
	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41	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9	0000	기타
	90	기타
	1000	제모제
	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4000	마스크 팩
	9000	기타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II) 인체용 탈취제[personal(body)deodorant]와 땀 억제제(antiperspirant)

(V) 그 밖의 물품 :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모제(depilatory)



체취 방지용 제품류

12.1 Mustela Skin Freshener

HSK 2025	3307.2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4692
유형	인체용 탈취제	시행일자	2017.03.30

1. 물품설명

- ❖ 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벤조산나트륨, 향료,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타르타르산, 아보카도열매추출물, 수산화나트륨 등을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스프레이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ml)
- ❖ 용도 : 인체용 탈취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20호에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 ❖ 본 품은 구성성분 중 향이 0.3%로 일반적인 ‘향수와 화장수’ 제품에 포함하는 향보다는 함량이 매우 적으나 인체 탈취용의 목적 성분으로 볼 수 있고 현품 표시상 아기 피부에 신선한 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영유아 피부의 신선한 향을 주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20-0000호에 분류함.



체취 방지용 제품류

12.2 Personal Antiperspirants

HSK 2025	3307.20-0000	분류근거	-
유형	기타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 기제의 무색투명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내용량 20mL)에 소매포장한 것[용기에 결착하여 피부에 바를 수 있도록 끝부분에 구상의 롤(Roll)이 부착된 캡, 캡을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뚜껑, 제품설명서 1부를 종이상자에 최종 포장]
- ❖ 용도 : 발한 억제제(땀의 분비를 저해)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인체용 탈취제"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라목에 "제 3303호 내지 제3307호의 조제품(치료용 또는 예방용의 것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제33류의 해설서 총설에 의하면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 또는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된다.(제30류 주 제1호 라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품은 OO 기제의 무색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하고 종이상자에 소매포장 한 발한 억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20-0000호에 분류

12.3 Ready to use Roll-on Wax

HSK 2025	3307.90-1000	분류근거	품목분류과-104628
유형	제모 왁스	시행일자	2005.6.24.

1. 물품설명

- ❖ 체모를 제거할 수 있는 조제된 황갈색 점조액상의 왁스(145g)를 롤러가 부착된 플라스틱용기 에 넣은 것,
- ❖ 왁스에 접촉하여 떼어내는 부직포(23X7.5cm) 15매,
- ❖ 잔류물질 제거용의 Mineral oil 등이 함침된 부직포 3매를 세트 소매포장한 것
- ❖ 용도 : 체모 제거제

2.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체모를 제거할 수 있는 조제된 황갈색 점조액상(145g)의 왁스를 롤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은 것과 왁스에 접촉하여 떼어내는 부직포 팩 15매, 잔류 물질 제거용의 Mineral oil 등이 함침된 부직포 팩 3매를 소매세트 포장한 것으로 물리적 방법에 의한 체모 제거제로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어에 따라 HSK 3307.90-1000호에 분류함

[참고자료] 제모제

물리적 제모제와 화학적 제모제가 있으며 **물리적 제모제**는 왁스, 접착성 물질을 털이 난 부위에 바른 후 빠른 속도로 제거하는 것으로 왁스(wax), 젤, 접착 시트가 여기에 속한다. **화학적 제모제**는 환원제인 티오글라이콜산과 알칼리제가 함유되어 있으며 환원제가 시스틴 결합을 끊어지게하고 알칼리제가 털을 팽윤시켜 쉽게 부스러지는 것으로 pH가 10~12이다. 물리적 제모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화학적 제모제는 기능성 화장품에 속한다.(화장품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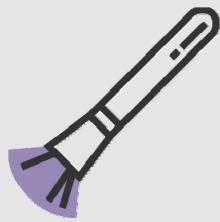
4

Chapter

화장품 부자재 및 미용 도구 품목분류 사례

-
1. 화장품 부자재
 2. 미용 도구 및 기기





1장 화장품 부자재



번호	유형	HSK 2025
1	화장품 케이스(compact)	3923.10-0000
2	화장품 용기 부분품	3926.90-9000
3	화장품 용기 부분품	3926.90-9000
4	집게(플라스틱)	3926.90-9000
5	주걱(플라스틱)	3926.90-9000
6	화장품 용기 캡(알루미늄제)	8309.90-9000
7	화장품용 펌프 용기	8413.20-0000
8	화장품 용기(플라스틱제) + 브러시	9603.29-0000
9	화장용 분무기	9616.10-0000
10	화장용 퍼프	9616.20-0000
11	화장품 포장용 종이상자	4819.50-9000

1.1**Cosmetic case of plastic; COMPACT**

HSK 2025	3923.1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406
유형	화장품 케이스	시행일자	2014.11.5.

1. 물품설명

- ❖ 플라스틱(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수지)제 금색 원통형 화장품 케이스로서 내부에 거울을 부착한 것(크기: 지름 약 9.8cm, 높이 약 2cm)
- ❖ 용도 : 화장품 케이스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고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등을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로 만든 화장품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1.2 Compact Frame



HSK 2025	3926.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1582
유형	용기의 부분품	시행일자	2024.3.20.

1. 물품설명

- ❖ 원형 구멍이 천공되어 있고, 테두리 가공이 되어 있는 링형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용도 : 화장품 외부 용기 내부에 페이스트 형태의 화장품을 담은 금속제 용기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내부 용기의 뚜껑이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고정



<신청물품>



<완성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 본 물품은 테두리가 있는 링 형태의 물품으로서, 화장품 용기 내부의 금속제 용기와 내부 용기의 뚜껑이 잘 닫힐 수 있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의 케이스 및 용기, 뚜껑으로 분류할 수 없음
- ❖ 본 물품은 링 형상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화장품 용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별도의 호는 없으며, 플라스틱 재질의 부자재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1.3 WIPER



HSK 2025	3926.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15887
유형	용기의 부분품	시행일자	2023.9.27.

1. 물품설명

- ❖ 앰플을 보관하는 화장품 용기(스포이드와 구성됨)의 입구 안쪽에 끼우는 것으로, 입구에 끼울 수 있도록 흠 가공 등 특정 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PE) 재질의 물품
- ❖ 용도 : 스포이드 사용 시 걸면에 묻어 나온 내용물 닦아 주어 주변에 흘림 방지를 위한 기능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용기 입구에 끼워 스포이드의 내용물 흘림 방지를 위해 닦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1.4 COSMETIC CONTAINER/TWEEZER



HSK 2025	3926.90-9000	분류근거	-
유형	집게(플라스틱)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화장품 용기 뚜껑 안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집게형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용기 안의 패드를 꺼내는 용도로 사용함
- ❖ 용도 : 화장용 패드를 꺼내는 용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 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 명함
-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의 경우 품목분류가 다를 수 있음



1.5 Spatula



HSK 2025	3926.90-9000	분류근거	-
유형	주걱(플라스틱)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플라스틱제 흑색 스틱 형상의 화장품용 스파츌러로서 한쪽은 내용물을 덜어내거나 펴 바를 수 있게 납작하고, 반대쪽은 눈가 등에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둥근 형태로 성형되어 있음
- ❖ 용도 : 화장품용 스파츌러(주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 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화장품을 덜어내어 바르면서 간단히 롤링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의 경우 품목분류가 다를 수 있음

1.6

멀티밤 스틱용 오버캡



HSK 2025	8309.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1432
유형	화장품 용기 캡	시행일자	2024.3.13.

1.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의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ABS)을 결합한 캡(cap)
- ❖ 용도 : 고체형 화장품 케이스의 오버캡(cap)
- ❖ 가격구성비 : 알루미늄 부분(98.4%), 플라스틱 부분(1.6%),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309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가 분류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코킹(corking)과 캡슐링(capsuling)이나 상자와 그 밖의 포장의 봉합에 사용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제품[플라스틱·고무·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washer)나 그 밖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 그 예시로 “(1) 금속으로 만든 전(栓 : stopper)·캡·뚜껑 : 예를 들면,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 병마개)·크라운 캡이나 크라운 실(seal) ; 맥주병·탄산수병·저장용 항아리·관(管) 모양의 용기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corking)이나 캡핑(capping)용으로 사용하는 나선형식·클립(clip)형식·레버(lever)형식·스프링(spring)형식 등의 전(栓 : stopper) · 캡 · 커버, (7) 여러 가지의 실(seal)[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납이나 주석판으로 만든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seal)도 포함한다], (8) 케이스 코너(case corner) 보호구” 등을 제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 형상 물품 내부에 동일 형상의 플라스틱 물품을 결합시킨 고체형 화장품 케이스의 캡(cap)으로 가격 구성비를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캡(cap)에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비금속 재질의 캡(cap)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309.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 등은 제3923.50호에 분류

1.7

화장품용 유리병 용기



HSK 2025	8413.2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4138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펌프형 용기	시행일자	2021.5.21.

1. 물품설명

- ❖ 유리 재질의 원통형 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펌프 및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화장품을 포장(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내용량 100ml)
- ❖ 용도 : 화장품을 담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정보(상품명 등) 등이 제품에 인쇄되어 있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에서는 유리제 물품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HS해설서 제84류 총 설에서 “다른 재료(예: 금속)로 만든 전동기·펌프 등과 같은 기계적 부분과 도자 재료나 유리로 만든 정적(static)인 부분의 조합품”에 대해서는 유리로 만든 물품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유리용기와 펌프가 결합된 물품으로 펌프는 스프링, 밸브, 액추에이터 등이 조합되어 기계적 방식으로 내부 압력차를 이용해 작동되는 기계류로 보아야 하며,
- ❖ 해설서 내용에 따라, 본건 물품은 용기보다는 기계적 요소를 갖춘 펌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에 분류하여야 함
- ❖ 본건 물품의 기능은 액체 상태의 화장품을 용기에서 퍼 올려 토출구로 일정량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84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20호에는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 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해설에서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손의 힘으로 헤드를 누르면 유입밸브가 닫히고 유출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토출되고, 헤드를 놓으면 반대로 유출밸브가 닫히고 유입밸브가 열리면서 챔버 내 내용물이 유입되는 원리로 작동되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의 ‘용적형 왕복펌프’에 대한 설명과 부합함
- ❖ 참고로 제8424호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와 관련하여, 본건 물품은 넓게 퍼지거나 (살포 ; dispersing) 미세한 물방울 형태로 토출(분무; spraying)되지 않으며,
- ❖ 특히, 분사(projecting)의 경우 압력을 가하여 액체를 세차게 뿜어냄으로써 수압에 의해 세척을하거나 멀리 보내는 등 특정한 목적성 또는 방향성을 수반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용기 내 액체를 일정량 퍼 올려서 밖으로 이동, 즉, 덜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분사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제8424호에 해당하지 않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수지식 액체 펌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20-0000호에 분류함

1.8

Mascara brush and plastic case



HSK 2025	9603.29-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16923
유형	케이스 + 브러시	시행일자	2016.11.21.

1. 물품설명

- ❖ 한쪽에는 회전 시 눈썹 연필심이 전·후진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눈썹 정리용 브러시가 결합한 플라스틱제 원통형 화장품 케이스(눈썹 연필심은 미제시)
- ❖ 크기: 14 cm × 0.9cm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및 다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하고,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눈썹연필을 담는 화장품 용기(제3923호)와 브러시(제9603호)가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사용용도, 방법 등을 고려 시 두 기능은 상호보완적 또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 수 없어 최종호로 분류함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9603.2호에는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라ッシュ(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 또는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 또는 두부에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 또는 페인트 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 또는 기타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중략> … 화장용브러시(예: 머리 · 턱수염 · 콧수염 또는 속눈썹용의 브러시, 손톱용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와 이발소용 네크브러시”를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화장품 용기와 브러시가 결합된 복합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1.9 COSMETIC CONTAINER



HSK 2025	9616.1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2269
유형	화장용 분무기	시행일자	2014.8.4.

1. 물품설명

- ❖ 스키류 화장품을 저장하고 스프레이 방식으로 분사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용 분무기
- ❖ 재질 : Body, Inner Bottle(PET-G), Outer Bottle(SAN), Spray(PP), Cap(ABS), Shoulder(ABS)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HS해설서에 “향수(scent), 남성용 포마드(brillantine)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toilet spray) : (중략) 이러한 것은 보통 유리·플라스틱·금속이나 그 밖의 재료의 병 모양의 저장조로 구성되며, 여기에 마운트(mount)가 부착되며 ; 이 마운트에는 (분무기구를 갖춘) 두부(頭部)와 압축공기식 압력벌브[종종 방직용 섬유제 망(net)으로 피복되어 있다]나 피스톤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스킨류 화장품을 외부로 분사시키는 화장용의 분무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16.10-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화장품에 사용되도록 표기된 용기가 아닌, 공용의 분무 용기는 제8424호에 분류

1.10

COSMETIC PUFF



HSK 2025	9616.20-0000	분류근거	-
유형	화장용 퍼프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화장품 내용물을 묻혀 피부에 골고루 펴서 바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극세사 재질의 화장용 퍼프
- ❖ 용도 : 화장용 퍼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16호에는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가 분류되고, 제9616.20호에 “화장용 분첩과 패드”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장용 분첩(powder-puffs)과 패드(pads)[안면분첩·연지·활석분첩 등]. 이러한 것은 백조나 물오리솜털·스킨·동물의 털·파일직물·폼 고무(foam rubber) 등의 어떠한 재료로도 제조되며, 아이보리·귀갑·뼈·플라스틱·비(卑)금속·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손잡이나 트리밍을 가진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화장품 내용물을 묻혀 피부에 골고루 펴서 바르는 화장용 퍼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16.20-0000호에 분류함



화장품 부자재

1.11

QUICK-WRAP BOX



HSK 2025	4819.5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8818
유형	포장용 종이상자	시행일자	2020.12.1.

1. 물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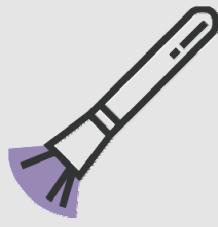
- ❖ 분리 가능한 뚜껑이 있는 종이로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포장 용기로 내부에 상품을 끼울 수 있도록 고안된 종이와 상품 포장 후 뚜껑과 상자를 묶을 수 있는 리본 끈이 있음
(크기: 62 × 152 × 32 mm)
- ❖ 용도 : 화장품 포장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 “(A) 상자류(cartons·boxes·cases)·포장대(bag)과 그 밖의 포장용기(packing container)”에 “이 그룹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수송·저장·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를 분류하며 장식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이 그룹에는 롤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백(bag)·콘(cones)·패킷(packet)·자루·판지로 만든 드럼(drum)(용기)(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band)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서류수송용의 튜브(tube)상 용기·의류 보호용의 백(bag)·단지·항아리·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cream)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wax)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진공청소기용의 백·멀미용 백 등 특수 목적의 종이백(paper bag)과 음반용 백과 음반 커버(record sleeves)도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이 이외의 다른 재료로 만든 보강재나 부속물이 부착될 수 있다[예: 직물을 뒷면에 댄 것·목제지지물·끈으로 된 손잡이·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서리].”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장품을 포장·판매하기 위한 종이로 만든 포장 용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50-9000호에 분류함



2장 미용 소품 및 도구



번호	유형	HSK 2025
1	네일 팁 접착제	3506.10-9000
2	쌍꺼풀용 접착테이프(플라스틱)	3919.90-0000
3	네일아트용 스티커(플라스틱)	3919.90-0000
4	인조 손톱	3926.90-9000
5	화장솜(워딩)	5601.21-0000
6	샤워 볼	6307.90-9000
7	헤어밴드(편물)	6117.80-9000
8	헤어밴드(직물)	6217.10-0000
9	인조 속눈썹	6704.19-4000
10	눈썹 컬러(CURLER)	8205.51-0000
11	면도기(수동식)	8212.10-0000
12	매니큐어(손톱관리) 세트	8214.20-0000
13	발 각질 제거기	8214.20-0000
14	헤어브러시	9603.29-0000
15	클렌징 패드	9603.29-0000
16	헤어밴드(플라스틱)	9615.11-9000
17	미용기기(화장품 흡수 촉진 기기)	8509.80-9000
18	미용기기(전동 각질 제거기)	8509.80-9000
19	면도기(전동식)	8510.10-0000
20	면도기(전동식, 코나 귀털 제거)	8510.10-0000
21	미용기기(피부 주름 개선)	8543.70-2020
22	미용기기(피부 주름 개선)	8543.70-2020

2.1 FINGERSUIT NAIL GLUE



HSK 2025	3506.10-9000	분류근거	-
유형	네일 팁 접착제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를 혼합, 조제한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브러시가 달린 플라스틱제 용기에 총전 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g)
- ❖ 용도 : 네일 팁 부착용 접착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3506.10호에는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보통 소매용으로 포장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상자·종이백 등에 포장하며 ; 때로는 단순히 종이제 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packaging)’도 있다(예: 뼈 글루의 슬래브). 때로는 적당한 형의 소형 브러시가 글루나 접착제와 함께 포장될 때도 있다(예: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항아리나 관속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의 소매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10-9000호에 분류함



미용 소품

2.2 EYE TAPE



HSK 2025	3919.9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8859
유형	쌍꺼풀용 접착테이프	시행일자	2013.11.28.

1. 물품설명

- ◆ 투명한 합성수지 필름 일면에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상(길이 약 27mm)을 비닐 팩에 소매포장(60개, 30회용)한 것
- ◆ 용도 : 눈 쌍꺼풀 형성용(일회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를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중략)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일시적으로 쌍꺼풀을 형성 시켜주는 접착성 스트립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미용 소품

2.3 Self-adhesive strip of plastic



HSK 2025	3919.9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9483
유형	네일아트용 스티커	시행일자	2012.12.17.

1. 물품설명

- ❖ 크리스마스트리, 사슴, 신발, 나뭇잎 등의 형태로 인쇄하여 절단한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스티커로서 뒷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6cm×6cm)에 부착한 것
- ❖ 용도 : 손톱장식용 네일아트 스티커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중략)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접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 ❖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문자나 그림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평면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 스티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미용 소품

2.4 Artificial fingernail of plastic



HSK 2025	3926.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2920
유형	인조손톱	시행일자	2014.4.25.

1. 물품설명

- ❖ ABS 수지로 만든 크기와 디자인이 다양한 투명 인조손톱
- ❖ 용도 : 인조손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 본 품은 손톱 위에 덧붙여 미적인 효과와 더불어 손톱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장식품 이상의 '실용적 가치'가 있는 물품임
-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손톱으로서 플라스틱제 그 밖의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5 Cosmetic pad



HSK 2025	5601.21-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5865
유형	화장솜(워딩)	시행일자	2015.7.27.

1. 물품설명

- ❖ 면제의 워딩제품(일정한 크기의 직사각형 시트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고, 제품의 가장자리를 압착하여 열봉합되어 있으며, 중앙에 꽃모양으로 엠보싱처리가 되어있음 (크기 : 약 50mm × 60mm))
- ❖ 용도 : 화장솜(화장품 클렌징 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1호에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1.21호에는 “면으로 만든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워딩은 카드하거나 에어 레이드(air-laid)한 섬유 층을 여러 층으로 겹쳐서 만들고 섬유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압축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 또한, “워딩은 탄력성이 있고 스펀지 모양의 높게 부풀은 시트상이며 두께가 균일하고 섬유는 쉽게 분리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워딩은 대개, 면섬유(탈지면 또는 기타 면워딩) 또는 재생 또는 반합성섬유의 스테이플 섬유가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면 재질의 워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1.21-0000호에 분류함

2.6 캐릭터 샤워 볼



HSK 2025	6307.9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4과-7745
유형	샤워 볼	시행일자	2020.10.29.

1. 물품설명

- ❖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횡단면: 0.2mm)를 그물 형태로 만들어 고정하고 손잡이용의 인형을 부착한 목욕용 제품
- ❖ 용도 : 목욕용 샤워 볼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307호에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로 만든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7 헤어밴드



HSK 2025	6117.80-9000	분류근거	-
유형	헤어밴드(편물)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OO제 편물로 만든 링 형태의 헤어밴드
- ❖ 용도 : 목욕 및 세안시 머리에 착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12)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 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제9615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헤어밴드(textile headbands)를 제외한다 (11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편물로 만든 헤어밴드로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7.80-9000호에 분류함

2.8 HAIR ELASTIC



HSK 2025	6217.1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2과-7523
유형	헤어밴드(직물)	시행일자	2013.10.17.

1. 물품설명

- ❖ 고무 탄성사를 흑색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직물로 피복한 링 형태의 탄성밴드에 장식으로 망직물, 리본, 직물제 곰 머리를 결합한 것
- ❖ 용도 : 헤어밴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는 "부속품"이 분류됨
- ❖ 제6117호의 해설서를 준용하면 "(12)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제9615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헤어밴드(textile headbands)를 제외한다 (11부).”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직물로 제조된 헤어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7.10-0000호에 분류함

2.9

FALSE EYELASHES



HSK 2025	6704.19-4000	분류근거	-
유형	인조 속눈썹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방직용 섬유제의 인조속눈썹 1세트와 인조속눈썹 부착용 접착제(내용량 약 1g)가 플라스틱 용기에 함께 제시된 물품
- ❖ 용도 : 속눈썹 부착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704호에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 및 이와 유사한 것(인모제나 수모제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에 한한다) · 인모제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 인조 속눈썹과 접착제는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인조 속눈썹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속눈썹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704.19-4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10 EYELASH CURLER



HSK 2025	8205.51-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5516
유형	눈썹 뷰러	시행일자	2016.11.30.

1. 물품설명

- ❖ 속눈썹을 잡아 말아 올려주기 위한 철강 재질의 미용도구로 가위와 유사하게 사용하도록 두 개의 Arm(한쪽 끝에는 동일한 곡선으로 휘어진 작용면이 있음) 중간 지점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두 개 Arm의 작용면 사이에 속눈썹을 위치시킨 후 작용면의 곡선과 손의 힘으로 눈썹을 위로 말아 올릴 수 있음
- ❖ 용도 : 속눈썹 컬러(CURLER)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 “비금속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205호에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후략)”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수공구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기타의 공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또한, “(E) 그 밖의 수공구에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절단용의 날을 갖춘 것도 포함되나 기계식의 것은 제외한다. 제8210호 해설 참조)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 다리미[가스·파라핀(등유) · 목탄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해당되고 제8516호에 열거된 전기다리미는 제외한다]와 헤어아이론(curling iron) 등 각종의 가정용 수공구를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가위와 유사한 조작 방법으로 두 개의 Arm을 움직여 속눈썹을 말아 올리기 위한 가정용의 철강제 수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11

RAZOR/RAZOR BLADE/SHAVING GEL



HSK 2025	8212.1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3267
유형	면도기(수동식)	시행일자	2015.11.19.

1. 물품설명

- ❖ 교체 가능한 면도날이 결합된 수동식 면도기 1개, 면도날 4개, 면도용 젤 등이 하나의 세트로 소매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
- ❖ 용도 : 면도기



2.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교체 가능한 면도날이 결합된 면도기 1개와 면도날 4개, 면도용 젤로 구성된 통칙 3(나)의 소매용 세트로 가격 구성비, 역할 및 기능, 제작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질적 특성은 면도기에 있음

- ❖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로서 스트립상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1)면도(open blade razors) : 분리하여 제시되는 면도날(완성품 여부를 불문한다) 및 분리하여 제시되는 비금속제의 자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면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212.10-0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12

MANICURE DELUXE SET



HSK 2025	8214.2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1112
유형	매니큐어 세트	시행일자	2014.5.2.

1. 물품설명

- ❖ 손톱깎이 3개, 가위 2개, 줄 1개, 족집게 1개, 손톱 다듬기구 3개, 귀이가 1개가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구성된 물품임
- ❖ 용도 : 손톱깎이 및 손톱다듬기 등의 용도로 사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14호에 “칼붙이의 기타 제품과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손톱줄(접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용의 세트와 용구에 손톱클리너·티눈 자르는 것·티눈추출구·표피절제용나이프·표피프레서와 푸셔·손톱깎는 기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또한 “이 호에는 보통 상자·케이스 등에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 기구를 넣어서 세트로 한 것이 포함되며, 가위·비금속제의 손톱 광택기·모발용구 등이 들어있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본 건 물품은 손톱깎이 및 손톱 다듬 기구 등이 플라스틱제 상자에 세트로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21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214.20-0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13

발 각질 제거기



HSK 2025	8214.20-0000	분류근거	-
유형	발 각질 제거기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철강제(스테인리스 스틸)의 연마 패드가 플라스틱제 핸들에 부착되어 있음
- ❖ 용도 : 발 각질 제거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14호에 ‘... 매니큐어와 패디큐어 세트 및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214.20호에는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를 세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2) 손톱줄(접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용의 세트와 용구 : 이러한 용구에는 또한 손톱클리너·티눈 자르는 것·티눈추출구·표피절 제용나이프·표피프레서와 푸셔·손톱깎는 기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품은 발 관리를 위한 패디큐어 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214.20-0000호에 분류함

2.14

HAIR BRUSH



HSK 2025	9603.29-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19543
유형	헤어 브러시	시행일자	2020.11.25.

1. 물품설명

- ❖ 목제 손잡이에 타원형의 브러시 헤드로 구성된 헤어 브러시로, 머리를 손질하기 위한 헤드는 쿠션감 있는 타원형 고무패드에 대나무 재질의 돌기가 다발상으로 심어진 형태임
- ❖ 용도 : 모발 정리 및 두피 마사지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3) 화장용 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이나 속눈썹용의 브러시 ; 손톱용 브러시 ;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헤어 브러시(hair brushes)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아이브로우나 마스카라용 브러시도 제9603호에 분류되나, 일자빗은 제9615호에 분류

2.15

FACIAL CLEANSING PAD



HSK 2025	9603.29-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4617
유형	클렌징 패드	시행일자	2017.11.21.

1. 물품설명

- ❖ 한쪽 면은 마사지 및 클렌징을 돋도록 얇고 부드러운 모가 형성되어 있으며, 다른 면은 손잡이 역할을 위해 특정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
- ❖ 용도 : 얼굴에 클렌징 폼이나 비누를 바른 후 본 품 일면의 손잡이를 잡고 마사지하면서 클렌징 및 각질제거 기능
- ❖ 재질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TPE)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중 랙)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롤러스퀴지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9603.2호에 “(...)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4) 고무나 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일체로 만든 화장용(손닦는 것 등)·세면대의 세정용 등의 브러시”가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 본 품은 얼굴을 마사지 및 세정용의 ‘그 밖의 인체용의 화장용 브러시’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2.16

HEAD BAND



HSK 2025	9615.11-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1과-3104
유형	헤어밴드(플라스틱)	시행일자	2013.11.18.

1.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프레임에 티아라, 리본 등의 장식품을 부착한 머리띠(Head Band)로 머리카락을 고정시키는 장신구로 사용됨
- ❖ 용도 : 머리카락 고정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 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 및 이와 유사한 것(직물제 머리띠는 제외하여 제11부에 분류함)”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보통 비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장식품을 부착한 머리띠(Head band)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61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615.11-9000호에 분류함

2.17

Skincare Cream Booster



HSK 2025	8509.8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2914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미용기기	시행일자	2021.5.24.

1. 물품설명

- ❖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편심)과 전자기력(척력)에 의해 화장품 흡수촉진 기능을 하는 가정용 미용기기(중량: 35g)
- ❖ 용도 : 화장품 흡수 촉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제16부 총설에 “제16부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 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식품용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 본건 물품은 내장된 모터에 의한 진동과 전자기력에 의한 척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품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 ❖ 본건 물품의 사양 및 설계 고려 시, 일반 가정에서 흔 케어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고 모터를 갖춘 35g 중량의 제품으로, 특히, 모터 구동에 의한 진동이 본건 물품의 화장품 흡수촉진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므로 제85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20kg 이하의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류

2.18

PEDICURE SEVEN SHAPE



HSK 2025	8509.80-9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2518
유형	미용기기	시행일자	2018.5.23.

1. 물품설명

- ❖ 전동 각질 제거기와 롤러헤드 2개,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제시됨
- ❖ 전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각질 제거기로서, 전동기의 회전운동에 의해 롤러헤드*(연마헤드)를 회전시켜 발뒤꿈치 등의 각질을 제거함
* 플라스틱 몸체에 접착제를 도포 후 연마재가 포함된 샌드를 분무하여 제조함
- ❖ 연마 기능을 하는 롤러헤드 2개가 함께 포장되어 있으며, 2가지 종류의 헤드로서, 1개는 각질 제거용이고 1개는 마무리용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바목에 ‘제8509호의 가정용 전기기기’를 제84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가목에서 규정한 ‘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8509호에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하는 장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하였고 그 종류와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중량 20kg 이하의 물품으로서,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각질 제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9.8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분류

2.19

미니 면도기



HSK 2025	8510.10-0000	분류근거	-
유형	면도기(전동식)	시행일자	-

1. 물품설명

- ❖ 전기 모터를 내장한 미니 전기 면도기(50x32mm)
- ❖ 용도 : 면도기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0호에는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510.10호에는 “면도기”가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細穴)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텔(모)을 깎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전동기를 갖춘 전기면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0.10-0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20 Trimmer



HSK 2025	8510.10-000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2209
유형	면도기(전동식)	시행일자	2018.5.3.

1. 물품설명

- ❖ 코나 귀속의 털을 커팅하는 기기로서,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전동기에 의해 털을 커팅하는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털을 제거함
- ❖ 사양 : 무게 40g, AA 건전지 방식



4장 · 화장품부자재 및 미용 도구 표준화·교정화 사례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0호는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나 전동 바이브레이터를 갖춘 전기 면도기와 전기이발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에 있어서는 커터나 나이프의 날이 구멍을 냈거나 세혈이 있는 판의 내측을 회전하거나 왕복하게 함으로써 구멍이나 세공을 통하여 내밀고 나온 털(모)을 깎는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본건 물품 내에 장착되어 있는 전동기에 의해 블레이드(날)이 회전하여 코나 귀의 털을 깎는 물품으로서, 전동기를 갖춘 면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0.10-000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21

DUALSONIC



HSK 2025	8543.70-202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2913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유형	미용기기	시행일자	2021.5.24.

1. 물품설명

- 집속초음파(HIFU)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콜라겐과 탄력섬유의 재생 촉진)하는 개인용 홈 케어(home care) 피부 미용기기 (중량 307g, 모터 내장)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볼록렌즈로 핫빛을 모아 불을 피우듯, 강한 출력의 초음파로 피부 속 일정 깊이에 열 응고점을 만들어 리프팅 효과를 얻는 원리



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 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하여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미용기기로서,
- ❖ 사양 및 설계 고려 시, 일반 가정에서 개인용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피부관리 원리는 전기 작용에 의한 것으로 제85류 내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유한 기능임
- ❖ 다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와 관련하여, 제8509호의 용어 중 ‘전기기기’의 영문명이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이고, 제85류 주 제4호 가목 및 제8509호 해설서상의 예시 품목을 보면 내장된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8509호에 분류되는 ‘가정용의 전기기기(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는 모터가 물품의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함
- ❖ 본건 물품에 내장된 모터는 단순히 초음파 조사(照査)시 방향을 조절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피부 주름개선 기능에는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로 제8509호의 가정용 기기로는 분류할 수 없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집속 초음파에 의한 피부 주름 개선의 고유 기능을 가진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미용 도구

2.22

탄력케어기기



HSK 2025	8543.70-2020	분류근거	품목분류3과-5622
유형	미용기기	시행일자	2022.8.26.

1. 물품설명

- ❖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해 피부 진피 3mm까지 열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재생 및 탄력을 제공하여 주름 및 처짐을 개선해주는 가정형 미용기기

*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 고강도 집중 초음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543.70-2020호에 ‘가정형의 미용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면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함
- ❖ 본 물품은 집속초음파를 이용하여 주름과 피부 처짐을 개선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제품의 크기, 중량 등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쓰는 미용기기로 제작되었으며, 집속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피부관리 원리는 전기 작용에 의한 것으로 제85류 내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임
-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집속 초음파에 의한 피부 주름 및 처짐 개선의 고유 기능을 가진 가정형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기능은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에 해당

5

Chapter

화장품 성분 및 원료물질 HS Code 연계표

5.1 화장품 성분

5.2 화장품 원료물질 HS Code





1장

화장품 성분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은 10,000여 종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각 제품마다 10~50여종의 성분이 사용된다. 화장품의 주요 성분은 정제수, 알코올, 폴리올 등의 수성 성분과 유지, 왁스류 등의 유성 성분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계면활성제, 자외선 차단제, 점증제, 분말 및 색재, 기능성 성분, 향료, 보존제보존제 등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들은 인체에 직접 접촉되므로 선택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① 피부에 자극, 독성이 없을 것
- ② 피부 생리 작용에 변화,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③ 미생물 성장에 영향이 적을 것
- ④ 침전 및 다른 성분과의 반응이 없을 것
- ⑤ 안정성이 높고 색상, 냄새 변화가 없을 것

화장품 성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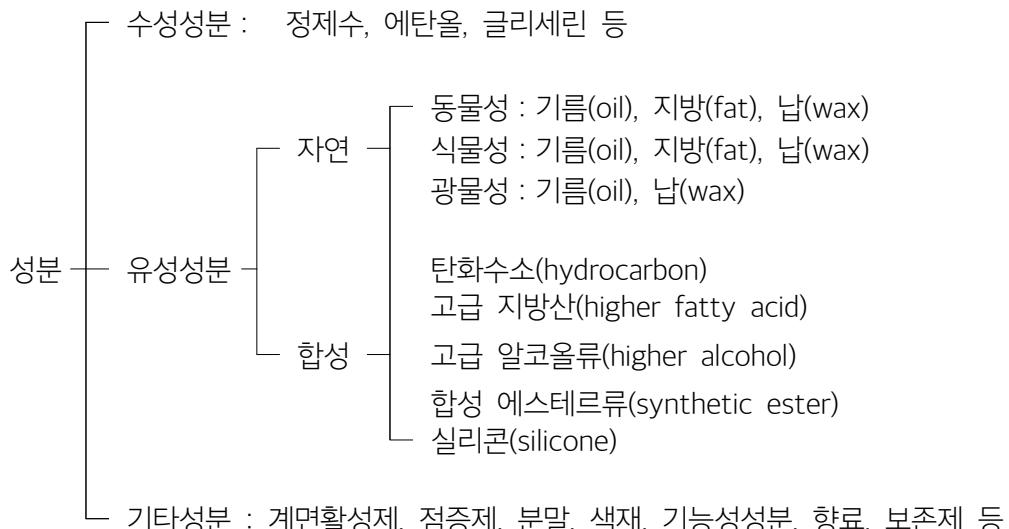


그림 5.1 화장품 성분의 분류

5.1 수성성분

5.1.1. 정제수(HS 2853)

정제수는 일부 색조 화장품과 오일 제품을 제외하고 화장품의 제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매우 중요한 성분으로 화장수, 유액, 크림 등 물을 함유한 화장품 제조에 용매로써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물속에 함유된 이물질, 금속이온, 미생물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물의 정제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온 교환 방법과 역삼투압 방식이 있으며 이온 교환 방법은 물을 양이온/음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시켜 물속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H⁺ ion과 OH⁻ ion으로 교환하여 이들이 재결합하여 순수한 물이 생성되는 원리이다.

5.1.2. 에탄올 (HS 2207)

에틸알코올(ethyl alcohol)이라고도 하며 휘발성이 있어 피부에 청량감을 주고 수렴, 청결, 살균 등의 효과도 있다. 따라서 화장수, 아스트린제트, 헤어토닉, 애프터 쉐이브 제품, 향수 등에 배합되어 많이 사용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주정용에서 먹을 수 없도록 부탄올(t-butanol), 브루신(brucine) 등과 같은 변성제를 첨가하여 만든 변성 에탄올(specially-denatured alcohol)을 사용한다.

5.1.3. 보습제

화장품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부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피부의 수분 유지를 위해 피부에는 친수성 흡습 물질인 천연보습인자가 존재하여 피부의 보습과 건조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하거나 건조한 계절에는 천연보습인자만으로는 피부의 건조를 막아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습제가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화장품의 수상에 첨가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표5.1에 주로 사용되는 보습제 종류를 나타내었다.



표 5.1 주요 보습제의 화학구조 및 특징

종류(HS code)	화학구조	특징
글리세린 (glycerin) ※ HS 2905.45 (순도 95% 이상), HS 1520 (순도 95%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습제 보습효과는 우수하나 끈적임이 있음 비누를 제조할 때의 부산물을 탈수하여 얻음
부틸렌글라이콜 (butylene glycol) ※ HS 2905.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리세린에 비해 보습효과는 부족하지만 사용감이 우수함 피부에 대한 안전성이 우수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에 비해 비쌈
프로필렌글라이콜 (propylene glycol) ※ HS 2905.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해하기 어려운 물질의 용해력을 증대시킴 가용화력을 향상시킴 피부 자극성이 보고되고 있어 사용량이 감소되는 추세임
젖산나트륨 (sodium lactate) ※ HS 291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올에 비해 보습효과가 우수함 이온성 점증제와 함께 사용할 수 없음 피부 안전성이 좋지 않으므로 많은 함량 사용 시 자극성 검증이 필요함
솔비톨 (sorbitol) ※ HS 2905.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특히 과실류와 해조류에 다양 함유됨 백색 무취의 분말로서 약 70% 수용액으로 유통됨 보습 효과가 우수함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sodium hyaluronate) ※ HS 39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유동물의 결합 조직에 널리 분포됨 최근 미생물로부터 생산이 가능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음 고분자 물질의 보습제로서 보습 효과 및 피부친화성이 우수함

5.2 유성 성분

유성 성분은 피부 유연 및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사용 감촉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기원에 따라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으로 분류하며 화학적인 구조에 따라 탄화수소류, 고급지방산류, 고급알코올류, 에스테르류,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류 및 실리콘류 등으로 구분한다. 화학적인 구조에 관계없이 상온에서 성상에 따라 고상(solid)인 것을 왁스, 액상(liquid)인 것을 오일로 분류하기도 한다.

5.2.1. 식물성유

1) 마카데미아 너트 오일(*macadamia ternifolia* seed oil) (HS 1515)

호주가 원산지이며 상록의 마카데미아 나무 열매 유, 식물성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이며 주성분은 올레익애씨드(oleic acid), 25%의 팔미톨레익애씨드(palmitoleic acid)를 함유한다. 피부의 피지 성분과 유사하여 피부 친화력 우수하고 사용감이 좋으며 다른 오일과의 상용성도 우수하다. 영양크림, 아이크림, 에센스 등에 2~3% 사용한다.

2) 올리브 오일(olive oil) (HS 1509)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지중해 연안이 주산지이며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여 채취한다. 연황색의 투명, 약간의 특이취가 있으며 올레익애씨드를 80% 이상 함유한다. 약간의 피부 부작용 때문에 많이 이용되지는 않으며 올리브유의 유도체로 만든 유화제가 많이 사용된다.

3) 아보카도 오일(avocado oil) (HS 1515)

미국 플로리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보카도 열매유이며 64~90%의 올레익애씨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연황색~암녹색으로 투명하며, 약간의 특이취가 있는 액상이다. 기초화장품, 샴푸, 린스, 컨디셔닝제에 사용하나 색상 및 냄새 문제로 소량 사용된다.

4) 포도씨 오일(grape seed oil) (HS 1515)

포도씨에서 추출한 오일로 리놀레익애씨드(linoleic acid)가 주성분이며 다른 식물유에 비해 토코



페롤 함유량이 높다. 기초화장품의 유성 성분으로 자극성과 알레르기성이 없으며 부드럽고 가벼운 사용감을 나타낸다.

5) 달맞이꽃 오일(evening primrose oil) (HS 1515)

달맞이꽃 씨앗에서 추출한 것으로 리놀레익애씨드 70%, 리놀레닉애씨드(linolenic acid) 10~20%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산패가 잘되는 단점이 있다. 아토피성 피부염 치유, 노화 억제, 보습 및 세포 재생, 건성 피부 및 습진에 효과적이다.

6) 메도우 폼 씨 오일(meadow foam seed oil) (HS 1515)

북아메리카 등에서 자생하는 메도우 폼(meadow foam) 씨에서 추출한 오일로 C20~C22의 지방산을 98% 함유하고 있어 산패 염려가 없고 매우 안정한 식물유이다. 피부 보습막 형성, 피부의 수분 증발 방지, 피부에서 부드럽게 퍼지고 촉촉한 감촉을 부여한다. 립스틱에 사용 시 부착성 향상, 헤어 제품에서 광택, 빛질용이 및 유연성을 준다.

7) 로즈힙 오일(rose hip oil) (HS 1515)

남미 및 유럽에서 자라는 로즈힙에서 얻어진 오일로 각종 포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B, C, E를 함유한다. 염증 억제, 화상 치유, 노화 방지제, 세포 재생 등의 용도로 고가의 크림, 유액에 1~2% 사용한다.

8) 동백 오일(camellia oil) (HS 1515)

동백의 종자에서 추출한 불건성유로 올레익애씨드 82~88%, 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 8~10%, 리놀레익애씨드 1~4%로 보습효과가 우수하다. 헤어 제품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 기초 및 바디 제품에 유연제로 사용된다.

5.2.2. 탄화수소류(hydrocarbons)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로만 구성된 유성 성분을 탄화수소류라고 하는데, 화장품에는 주로 탄소수가 15 이상인 포화탄화수소류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탄화수소류 유성 성분은 석유 자원으로부터 채취되고 있지만,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얻는 스쿠알란, 라놀린 등이 있다.

1) 미네랄오일(mineral oil) (HS 2710)

석유의 유분을 330~390°C에서 재증류하여 고형 파라핀을 제거하고 정제를 통해 얻은 무색투명의 액상이다. 상온에서 액상이며 탄소 수가 16~30 정도인 포화 탄화수소로 기본적인 구조가 C_nH_{2n+2} 인 혼합물이다. 액상 파라핀, 바셀린유, 화이트유라고도 하며, 비중이 0.85~0.94이며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가격이 저렴하다. 화장품에서는 세정력 및 유연효과가 우수하여 오일류, 클렌징이나 마사지 제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파라핀(paraffin) (HS 2712)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연고상의 물질을 정제한 백색의 반투명한 고체로 주성분은 C24~C34의 탄화수소이며 미네랄오일과 마찬가지로 무색, 무취이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양초, 연고, 합성세제, 파라핀 종이 및 크레용을 만드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에서는 크림, 립스틱, 아이브로펜슬 등의 제품에 사용된다.

3) 바세린(vaseline) (HS 2712)

석유를 분별 증류하여 남은 잔유물에서 왁스 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지는 연고상의 물질을 정제한 것이다. 주성분은 C24~C34의 탄화수소이고 비결정질이다. 황색 바셀린과 이를 정제한 백색 바셀린 및 지랍(地蠟, ozokerite)을 미네랄오일에 용해시킨 인공바셀린이 있다. 미네랄오일과 같이 무취이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접착력이 좋아서 크림류 및 립 메이크업에 사용되고 있다.

4) 세레신(ceresin) (HS 2712)

지랍을 정제하여 얻은 순수 백색 왁스로 융점 61~95°C로 높은 미결정의 침상 혹은 짧은 판상의 극히 치밀한 결정이다. 융점이 높고 유화 안정성이 좋으며, 무색무취로 립스틱, 펜슬, 커버 메이크업(cover make-up)에 사용된다.

5) 마이크로크리스탈린 왁스(microcrystalline wax) (HS 2712)

석유에서 얻은 바셀린을 더 정제하여 얻어지는 고형의 탄화수소 혼합물로서 백색~담황색의 고체이며 분자량이 400~700 정도로 파라핀보다 크며 점성과 연신성이 있고, 저온에서도 딱딱하지 않으며 융점 60~85°C로 높다. 립스틱, 펜슬류, 유성 파운데이션 등의 제품에 사용되며, 다른 왁스에 비해 피부 밀착력이 우수하다.

6) 스쿠알란(squalane) (HS 2901)

무색, 무미, 무취의 투명 액상으로 심해의 상어류에 다량으로 존재하며 스쿠알렌(squalene)에 수



소를 첨가하여 얻은 것이다. 대부분의 유성 성분과 상용성이 우수하며 유화 안정성이 좋으며 피부 안전성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며 기초, 색조 제품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현재는 상어 보호를 위하여 올리브유로부터 얻은 식물성 스쿠알란이 사용된다.

5.2.3. 고급지방산(higer fatty acid)

지방산은 RCOOH로 표시되는 화합물로 천연 유지, 액스 등에 에스테르류로서 92~95%를 차지한다. 동식물 유지류에 함유된 지방산은 직쇄지방산이 많고 탄소수가 짹수이며 화장품에서는 C12 이상의 포화 지방산을 주로 사용하며 소듐하이드록사이드(sodium hydroxide, NaOH), 트라이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 TEA)과 반응시켜 유화제로,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potassium hydroxide, KOH)로 중화시켜 품 클렌징과 같은 세정제로 사용한다.

1) 라우릭애씨드(lauric acid) (HS 2915)

백색의 편상의 결정 고체로 특이취가 없으며 융점 32~45°C, 비중 0.869, 에탄올에 녹지만 물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화학식은 $\text{CH}_3(\text{CH}_2)_{10}\text{COOH}$ 이며 알칼리(NaOH, TEA, KOH)로 중화하여 계면활성제 등으로 샴푸, 품 클렌징에 사용한다.

2) 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 (HS 2915)

백색의 박편, 입자 또는 미립자 상의 결정성 고체로 특이취가 있으며 융점 45~56°C, 비중 0.886, 에탄올에 녹지만 물에는 용해되지 않는다. 화학식은 $\text{CH}_3(\text{CH}_2)_{12}\text{COOH}$ 이며 미리스틱애씨드로 얻어진 비누는 기포도, 세정성이 다른 지방산에 비해 가장 우수하며 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 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 등과 함께 사용하여 기포도 및 사용감이 향상된다.

3) 팔미틱애씨드(palmitic acid) (HS 2915)

백색의 박편, 결정성 고체로 특이취가 있으며, 융점 50~63°C, 비중 0.853, 화학식은 $\text{CH}_3(\text{CH}_2)_{14}\text{COOH}$ 이며 스테아릭애씨드 같이 여러 화장품에 사용하며 비이온 계면활성제, 에스테르, 금속 비누의 성분으로 이용된다.

4) 스테아릭애씨드(stearic acid) (HS 2915)

백색의 박편, 결정성 고체로 특이취가 있으며 융점 52~70°C, 비중 0.847, 화학식은 $\text{CH}_3(\text{CH}_2)_{16}\text{COOH}$

이며 각종 크림, 로션, 립스틱 등에서 유상 성분으로 사용하거나 트라이에탄올아민(TEA)으로 중화하여 음이온 계면활성제로 분산제, 유화제로 이용된다.

5) 아이소스테아릭애씨드(isostearic acid) (HS 2915)

무색~담황색 투명 액체로 약한 특이취가 있으며 비중 0.862~0.905이며 포화 지방산으로 유연제, 점도 강하제 등에 사용된다.

5.2.4. 고급알코올(higer alcohol)

탄소수 6 이상의 1가 알코올로 경도 및 점도 조절제, 유화 안정제, 사용감 개선제 등으로 사용되며 일반식은 $C_nH_{2n+1}OH$ 이다.

1) 세틸알코올(cetyl alcohol) (HS 2905)

백색의 박편으로 약간의 특이취가 있으며 융점 45~55°C, 비중 0.838, 에탄올, 에테르(ether), 클로로폼(chloroform)에 용해된다. 화학식은 $CH_3(CH_2)_{15}OH$ 이며 유화 안정제, 피부 유연제, 유화제의 경도 조절제, 스틱류 제품의 경도 상승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2) 스테아릴알코올(stearyl alcohol) (HS 2905)

백색의 박편, 특이취, 융점 54~61°C, 비중 0.839, 에탄올 및 에테르에 용해되며, 화학식은 $CH_3(CH_2)_{17}OH$ 이며 세틸알코올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화장품에 안정성이 더 우수한 세틸알코올과 스테아릴알코올의 혼합물인 세토스테아릴알코올(cetostearyl alcohol)이 주로 사용된다.

3) 아이소스테아릴알코올(isostearyl alcohol) (HS 2905)

무색 투명 액체로 거의 무취, 에테르에 녹으며, 에탄올에 약간 용해되나 물에는 녹지 않는다. 비중 0.830, 리퀴드 메이크업, 유액의 유동성 조절제, 상용성이 좋고 산화 안정성, 열 안정성이 좋다.

4) 옥틸도데칸올(octyldodecanol) (HS 2905)

무색~담황색의 투명 액체로 무취, 에탄올, 광물유, 유지 등에 녹는다. 비중 0.830~0.850, 탄화수소에 비해 가벼운 사용감을 갖고 있어 유분감 및 끈적임을 줄이는 데 사용한다.



5.2.5. 왁스류(wax esters)

왁스류는 화학 구조상 고급지방산과 고급알코올의 에스테르며 동,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 이외에 유리지방산, 고급알코올, 탄화수소, 수지류를 함유하며 탄소수가 C20~C30으로 비교적 많다.

1) 카나우바 왁스(carnauba wax) (HS 1521)

남미에서 자라는 약 10m 높이의 카나우바 야자 잎에서 얻어진 미황색의 왁스로 C20~C32의 지방산과 C20~C32의 알코올의 에스테르이며 융점 80~86°C, 식물 왁스 중 경도 및 융점이 제일 높으며 립스틱의 온도 내성, 광택 부여, 크림, 제모 왁스, 스틱 등의 경도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2) 캔데릴라 왁스(candelilla wax) (HS 1521)

멕시코 북서부 및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캔데릴라 줄기에서 얻은 황갈색의 왁스로 고체 및 수지상이다. 융점 68~72°C, C16~C34의 지방산 에스테르가 약 30%, C31H64의 탄화수소가 약 45%, 수지가 약 25% 함유되어 있다. 립스틱의 경도 유지 및 광택 부여, 마스카라, 스틱류에 사용되며 카나우바 왁스(carnauba wax)와 같은 목적으로 병용 사용된다.

3) 라이스 왁스(rice wax) (HS 1521)

쌀겨유에 1.3~1.8% 함유되어 있으며 소량의 유리지방산 및 약간의 탄화수소, 융점은 70~77°C이다. 생산지, 기상 조건 등에 따라 성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화장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4) 호호바유(jojoba oil) (HS 1515)

미국 남부, 멕시코 북부의 건조지대에 자생하는 호호바 종자에서 얻은 액체왁스로 무색~담황색의 투명 액체이다. 융점 6.8~7.0°C, 비중 0.853~0.875, 불포화 고급알코올과 불포화지방산의 에스테르이다. 보습성이 있는 연화제로 크림류에 사용한다.

5) 밀납(bees wax) (HS 1521)

벌집에서 얻은 왁스를 정제, 황색~황갈색의 고체, 고급지방산과 고급알코올의 에스테르가 주성분이며 약 5~10%의 유리 지방산을 함유하고 융점은 60~67°C이다. 중화하여 유화제로 유화 제품에 사용하며 립스틱류의 경도 조절 및 유연효과와 풍부한 사용감을 부여한다.

6) 라놀린(lanolin) (HS 1505)

양모로부터 정제한 왁스 및 담황색의 연고 형태, 주성분은 고급지방산과 스테롤(sterol)류 및 고

급알코올의 에스테르 혼합물이며, 콜레스테롤, 이소콜레스테롤, C13~C33의 고급알코올을 함유한다. 피부 친화력 좋으며 물을 함유하는 성질이 있고 부착성이 강하여 유화력을 향상시킨다. 크림류, 립스틱류에 사용되나 냄새, 색상, 피부 알레르기 유발 문제가 있고 동물성 성분 사용배제로 현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

7) 경화 피마자유(hydrogenated castor oil) (HS 1516)

아프리카, 인도 원산지인 피마자 종자에서 얻은 오일로 피마자유에 수소를 첨가하여 얻은 왁스이다. 다른 유지에 비해 친수성이 높고 점성이 강하며 에탄올에 용해되며 립스틱, 포마드, 염료 용해제로 사용한다.

5.2.6. 에스테르류(synthetic ester)

화장품에 사용되는 에스테르류는 지방산과 지방알코올의 탈수반응으로 생성된 것으로서 R-COOR'의 일반식으로 표현되는 화합물이다. 지방산 에스테르는 기름기가 적은 산뜻한 감촉 부여, 피부 침투 효과가 우수하고, 각종 성분의 용매제로도 사용하며 유성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종류가 있다.

1)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caprylic/capric triglyceride) (HS 1516)

글리세린과 카프릴릭(caprylic), 카프릭애씨드(capric acid)의 혼합 트라이에스터(triester)로 무색의 투명 액체이며 점성이 낮고 가벼운 사용감을 주는 오일로 비중 0.94~0.96, 다른 오일과의 상용성이 좋고 안정성 및 안전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화장품 제형에 매우 널리 사용된다. 클렌징 제품, 마사지크림, 유액, 영양크림 등에 2~8% 정도 사용한다.

2) 옥틸도데실미리스테이트(octyldodecyl myristate) (HS 2915)

미리스틱애씨드와 옥틸도데카놀의 에스테르, 무색, 무취, 투명 액으로 비중 0.85~0.86, 응점이 낮고 유분감이 적으며 산뜻한 느낌을 부여한다. 피부에 대한 친화성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된다.

3) 트라이에틸헥사노인(triethylhexanoin) (HS 2915)

글리세린과 에칠헥사노익산(2-ethylhexanoic acid)의 트라이에스터(triester)로 무색, 투명, 무취의 액상으로 다른 에스터유 및 실리콘유와 상용성이 좋다. 피부 안전성이 우수하고 유연효과가 좋아



모든 기초화장품에 널리 사용되며 색조 제품에서 분체의 분산이 잘되게 한다.

4)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cetyl ethylhexanoate) (HS 2915)

2-에틸헥산과 세틸알코올의 에스테르로 비중 0.854, 무색, 무취, 낮은 응고점,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한 합성 오일이다. 퍼짐성이 좋고 산뜻한 느낌을 주어 유연제로 각종 크림, 유액, 메이크업 제품, 베이비오일, 마사지 오일에 사용한다.

5) 네오펜틸글라이콜 디카프레이트(neopentyl glycol dicaprate) (HS 2916)

네오펜틸글라이콜(neopentyl glycol)과 데카노익애씨드(decanoic acid)의 디이에스터(diester)로 무색, 무취의 액상, 온도 안정성이 우수, 점도가 낮고 사용감이 분자량에 비해 매우 가볍고 부드럽다. 가벼운 발림성이 요구되는 제형, 립스틱, 로션, 에센스 등에 많이 사용된다.

6) 아이소세틸미리스테이트(isocetyl myristate) (HS 2915)

아이소세틸알코올(isocetyl alcohol)과 미리스틱애씨드(myristic acid)의 에스테르이며 무색, 투명, 무취의 액상으로, 사용성은 약간 무거운 편이다. 피부 안전성과 유연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건성용 크림 및 에센스, 헤어 제품에 사용된다.

7) 헥실라우레이트(hexyl laurate) (HS 2915)

헥실데칸올(hexyldecanol)과 라우릭애씨드의 에스테이다. 미황색, 투명 액상으로 매우 가벼운 사용감으로 실리콘 오일과 상용성이 좋고 유기 자외선 차단제의 용해성을 향상시키며, 무겁거나 끈적이는 사용감을 개선한다.

5.2.7. 실리콘유(silicones)

실리콘은 실록산 결합(-Si-O-Si-)을 갖는 유기규소화합물의 총칭으로 대표적인 것은 모든 유기성기가 메틸기인 다이메틸폴리실록산이며 분자량은 30~60만이다. 저분자량의 실리콘유는 휘발성을 갖는 것이 있고 퍼짐성이 커 모발 코팅제로 널리 사용된다. 기초화장품, 색조 화장품에 사용 시 끈적임이 없고 부드러운 독특한 사용감을 부여하며 최근 탄성 성질을 갖는 탄성중합체(elastomer), 검(gum), 분말(powder), 점증제, 유화제 등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고 있다.

1) 다이메티콘(dimethicone) (HS 3910)

무색, 투명, 무취, 전연성, 발수성이 좋은 물질로 화학적으로 비활성이다(그림 5.2). 비중 0.915~0.97, 점도 5cs~1,000cs, 중합도에 따라 점도가 다양하며 100cs는 소포제로 널리 이용되며 각종 에스터(ester)유와 상용성이 좋고 왁스(wax)의 사용성 개선에 쓰인다. 피부 안전성이 우수하여 기초 및 색조 제품에 널리 쓰이며 부드러우면서 풍부한 사용감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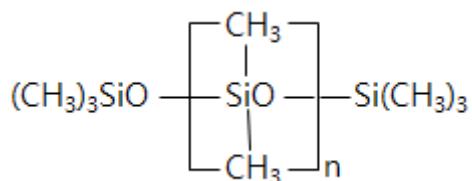


그림 5.2 다이메티콘

2) 사이클로메티콘(cyclomethicone) (HS 2931)

무색, 투명, 무취 휘발성을 가진 오일로 표면장력이 낮아 유화가 잘 되며 n이 4, 5가 주로 사용된다. 매우 얇고 가볍게 잘 퍼져 기초, 색조화장품, 자외선차단 제품의 사용감 조절제로 널리 이용된다(그림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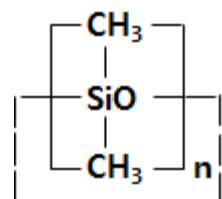


그림 5.3 사이클로메티콘

3) 메틸페닐실리콘(methylphenyl silicones) (HS 3910, HS 3824)

발수성, 윤활성 우수, 열과 자외선에 대해 안정하며 독특한 광택이 있다. 점도는 14~1,000cs이며 자외선 차단 제품, 영양크림에 사용하여 퍼짐성, 피막성을 부여한다(그림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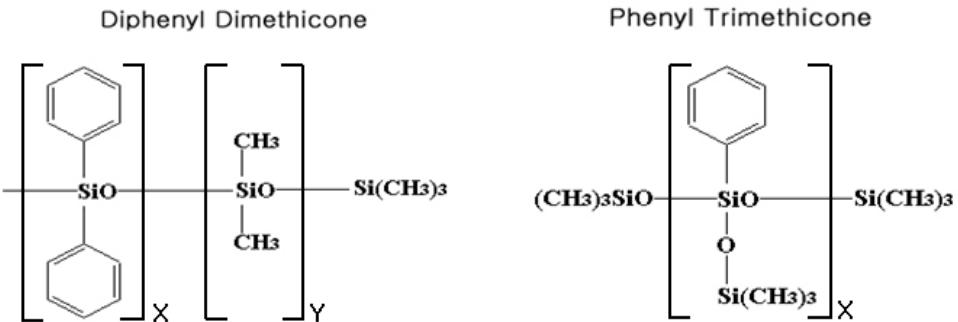


그림 5.4 메틸페닐실리콘

5.3 계면활성제(surfactants)

계면활성제는 친수기(hydrophilic group)와 친유기(hydrophobic group)의 두 가지 성질을 나타내는 화학 구조를 갖고 있으며 친수기는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POE), 다가 알코올, 수용성염 등이 있으며 친유기는 주로 탄화수소, 불소, 실리콘기가 있다. 친수기는 물속에서 해리하여 -COO^- , -OSO_3^- , -OPO_3^{2-} 와 같이 음이온을 띠는 것, -NH_4^+ , $\text{-N}^+(\text{CH}_3)_n$ 와 같이 양이온을 띠는 것, $\text{-(CH}_2\text{CH}_2\text{O})_n\text{H}$, $\text{-(CH}_2\text{OH})_n$ 처럼 이온성이 나타나지 않는 친수기도 있다. 이들 각각을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한다. 그 외에 양쪽의 성질 모두를 갖는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도 있다.

5.3.1. 음이온성 계면활성제(anionic surfactants) (HS 3402.3)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물에 용해할 때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하는 것이고 카복실산형, 황산 에스터형, 인산 에스터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친수부는 나트륨염, 트라이에탄올아민 등과 같은 염으로 사용된다. 친유기는 알킬기, 이소 알킬기 등이 주요 물질이고 구조 중에 에스터, 에테르, 아마이드 결합을 포함한다. 기포력, 세정력이 우수하여 샴푸, 바디클렌저, 화장용 비누, 폼 클렌징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피부 안전성을 고려하여 유화 제품에 낮은 농도로 사용한다.

5.3.2. 양이온성 계면활성제(cationic surfactants) (HS 3402.41)

음이온과 반대의 전하를 띠는 것으로 소수기가 양이온으로 되어 있으며 단백질 표면에 흡착하는 성질 갖는다.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화장품에 이용도는 낮으나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적은 경우 그람양성, 그람음성, 박테리아균 등에 유효한 살균성과 탈취 효과가 있으며 분자량이 큰 경우는 모발이나 섬유의 표면에 흡착성이 커서 헤어 린스 등 유연제 및 대전 방지제로 주로 활용 된다.

5.3.3.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amphoteric surfactants) (HS 3402.49)

양쪽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 양이온성 활성기와 음이온성 활성기의 양쪽 원자단을 공유하고 있는 계면활성제로서 알칼리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다른 이온성 계면활성제에 비하여 피부에 안전하고 세정력, 살균력, 유연 효과 등을 나타내므로 저자극 샴푸, 어린이용 세정 제품에 이용되고 있다.

5.3.4. 비이온성 계면활성제(nonionic surfactants) (HS 3402.42)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며 이온성에 의한 친수기를 갖는 대신 하이드록시기나 에틸렌옥사이드기에 의한 물과의 수소결합에 의한 친수성을 갖는 계면활성제이다. 이온성 계면활성제보다 피부 안전성이 좋으며 유화력 등이 우수하므로 세정제를 제외한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의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5.3.5. 기타 계면활성제

1) 고분자 계면활성제(polymeric surfactants)

다양한 폴리머들의 유도체들은 피막 형성 작용을 하고 있지만, 계면에 작용하면서 계면활성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알긴산 나트륨(HS 3913), 전분 유도체(HS 3505) 등도 유화, 응집, 분산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천연 계면활성제(natural surfactants)

천연 계면활성제로는 인산에스터의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4급 암모늄염의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공유하는 레시틴(HS 2923)이 대표적이다. 레시틴의 주성분은 대두, 난황 등에서 얻어지며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phosphatidylethanolamine)으로 이루어진다. 레시틴은 특이한 용해성, 이중막 형성을 이용한 리포솜 등의 구조체를 형성하므로 응용 범위가 넓다. 또한 사포닌의 인삼염도 주요한 천연계면활성제이다.

5.4 고분자(polymers)

화장품에서 고분자의 사용 목적은 점증제 및 물성 조절제(rheological property controller)로 각종 제품류의 점도 조절과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점성 및 경도 유지와 각종 제형의 물성 조절 기능이 있으며 유화 입자, 안료 입자의 침강, 부상 등을 억제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안정성 향상 기능이 있다. 또한 퍼짐성, 감촉 향상 등의 사용성 개선목적으로 이용하며 수분이나 용매 증발 후 피막 형성 용도로 사용된다.

5.4.1. 수용성 고분자

1) 카르복시 비닐폴리머(carboxy vinyl polymer) (HS 3906)

카보머(carbomer)라고도 하며 carbopol 941, carbopol 934, carbopol 940종류가 있으며 평균 분자량이 다르며 점증 효과가 매우 크다(그림 5.5). 백색 분말로 공기에 노출 시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알칼리(NaOH, TEA, KOH)제로 중화하여 사용하며 이때 pH 6.0~10.0 사이에서 최고 점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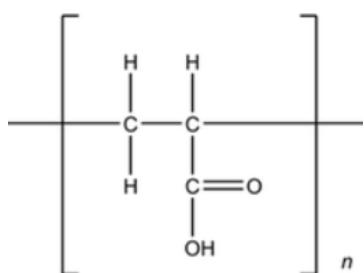


그림 5.5 카보머

2) 잔탄검(xanthan gum) (HS 3913)

미생물 발효로 얻어진 바이오플리사카라이드(biopolysaccharide)로 분자량은 2백만 정도이며 연황색 분말로 흡습성이 있다. pH, 염(salt) 및 온도에 따라 점도 변화가 거의 없으며 부드러운 사용감과 다른 점증제와 상용성이 좋아 단독보다는 복합으로 유화 제품에 사용한다(그림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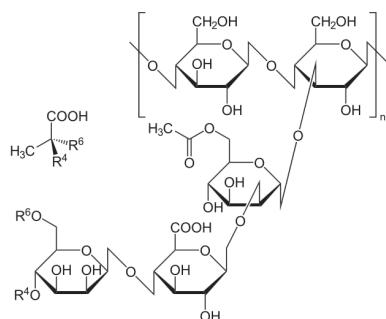


그림 5.6 잔탄검

3) 하이드록시에틸셀룰오스(hydroxyethyl cellulose) (HS 3912)

미황색 분말로 셀룰로오스(cellulose)에 소듐하이드록사이드(NaOH)와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를 반응시켜 만들며 분자량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점성이 강하며 중합도, 분자량이 증가하면 점도가 상승하며 넓은 pH 영역에서 점도 변화가 크지 않다. 사용감이 무거우며 다른 점증제와 상용성이 좋다(그림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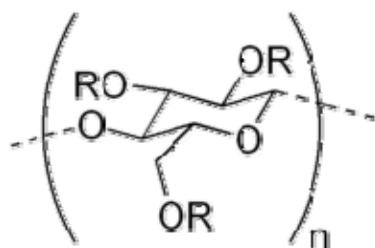


그림 5.7 하이드록시에틸셀룰오스



4) 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sodium polyacrylate) (HS 3906)

백색 분말, 흡습성이 강하여 물에 분산 시 쉽게 분산되며 점성이 매우 높다(그림 5.8). 무색, 무취의 투명한 점성 용액으로 길게 늘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부드러운 사용 감촉으로 농축 개념의 제품에 응용되며 스킨류의 점증 효과나 사용성 개선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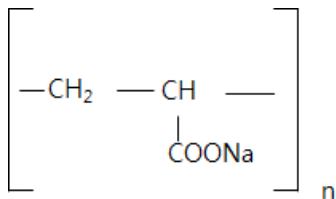


그림 5.8 소듐폴리아크릴레이트

5)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magnesium aluminum silicate) (HS 2842)

화산재로 알려진 점토광물을 정제한 것으로 벤토나이트(bentonite)로 알려져 있으며 물을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는 성질이 있다(그림 5.9). 무기 점증제로 점증 효과가 낮으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잔탄검이나 하이드록시에틸셀룰로오스 등과 함께 사용된다. 주로 크림이나 머드팩 등에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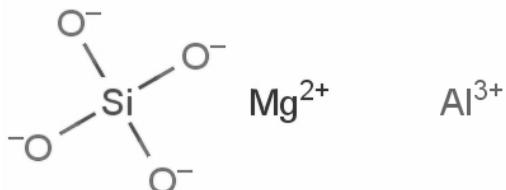


그림 5.9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

5.4.2. 피막 형성제

고분자 피막을 화장품에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피막 형성제가 사용될 수 있다. 필름의 강도 및 물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점증제와 혼합하여 다양한 성질을 구현할 수 있다.

1)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HS 3905)

폴리조산비닐을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며 가수분해 정도가 높아질수록 물에 대한 용해도가 증가하며 70°C 고온에서 장시간 분산하여 사용한다(그림 5.10). 피막 형성 고분자로 필오프팩, 피막 형성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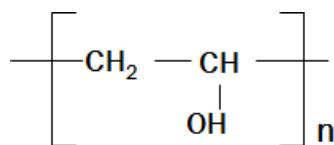


그림 5.10 폴리비닐알코올

2) 폴리비닐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PVP) (HS 3905)

N-비닐 피롤리돈을 과산화수소 촉매 하에서 중합하여 제조하며 물에 잘 녹고 낮은 점성을 나타내며 알코올, 글리세린, 초산에틸 등에 용해된다(그림 5.11). 피막 형성 및 모발에 밀착성이 우수해 두발 제품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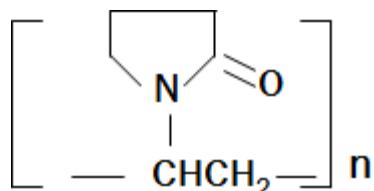


그림 5.11 폴리비닐피롤리돈

5.5 분말 및 색재

안료는 물이나 기타 용매에 녹지 않으며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일반적으로 백색이나 유색의 고체 분말로 예로부터 벽, 뼈, 가죽, 돌 등에 의지나 감정을 전달하는 그림에 사용해 왔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분말 성분은 안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색조 화장품에 피부의 기미와 주근깨 등을 은폐하고 색채 효과를 주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그림 5.12).



그림 5.12 화장품에 사용되는 색재의 분류

5.5.1. 유기 합성 색소

1) 염료(dye) (HS 3204)

물에 용해되는 수용성 염료, 오일 및 에탄올에 용해되는 유용성 염료로 구분하며 염색법 분류에 따라 산성염료, 중성염료, 알칼리염료, 매염염료로 나눈다. 화학 구조에 의한 분류로 아조계, 니트로, 산화물 등 9종류로 분류된다. 인간 눈의 감지 영역인 가시광선(400~750 nm) 파장에서 투과 및 흡수(예: 적색염료는 적색광은 투과하고 그 외는 흡수)에 의해 색상이 발현된다.

2) 레이크(lake) (HS 3205)

물에 용해되는 염료를 칼슘, 황산알루미늄, 황산지르코늄 등으로 불용화시킨 것이다.

3) 유기 안료(organic pigment) (HS 3204)

유기 안료는 구조 내에 가용성 기를 갖지 않고 물, 오일에 용해되지 않는 유색 분말로 아조(azo)계, 인디고(indigo)계, 프탈로시아닌(phthalocyanine)계로 분류한다. 레이크에 비해 착색력, 내광성이 우수하여 립스틱, 볼연지 등의 색조 화장품에 널리 사용된다.

5.5.2. 천연색소 (HS 3203)

천연색소는 동, 식물에서 유래된 것과 미생물로부터 유래된 것이 있으며 β -카로틴(carotene), 시코닌(shikonin), 카카오(cacao)색소, 클로로필(chlorophyll), 루틴(rutin) 등이 있으며 착색력, 내광성, 내약품성이 떨어져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5.5.3. 무기 안료(inorganic pigment)

광물성 안료라 부르며 천연의 광물을 분쇄하여 사용하며 이들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어 선명하지 못한 색상과 균일한 품질 유지 어려움으로 현재 합성 무기 화합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내광, 내열성이 우수하나 색상의 선명도는 떨어진다.

1) 체질 안료

희석제로서 색조를 조정하고 제품의 제형을 유지하며 사용성이나 광택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점토광물인 마이카(HS 2525), 탈크(HS 2526), 카올린(HS 2507)등이 여기에 속한다(그림 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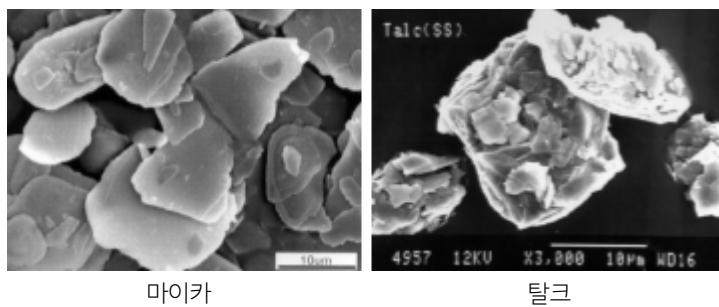


그림 5.13 마이카 및 탈크

2) 백색 안료

피부의 결점을 은폐하고 백색도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티타늄다이옥사이드(HS 2823), 징크옥사이드(HS 2817)가 있으며 티타늄다이옥사이드는 굴절률이 커서 은폐력이 우수하며 입자 크기가 작은 초미립자 티타늄다이옥사이드는 색상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투명성이 우수하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그림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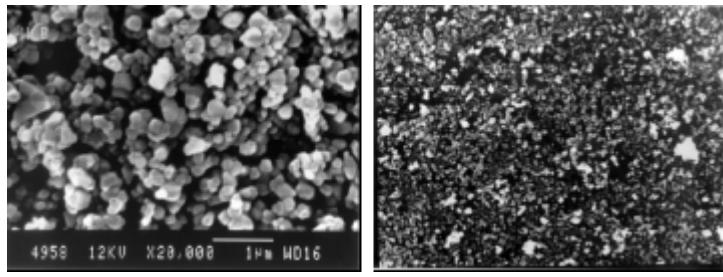


그림 5.14 티타늄다이옥사이드와 초미립자 티타늄다이옥사이드

3) 착색 안료 (HS 2530)

제품의 색상 부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적색산화철, 흑색산화철, 황색산화철은 철 화합물로 반응조건을 조절하여 3종류의 산화철을 제조한다. 이외에도 군청, 감청 등도 있다(그림 5.15).



그림 5.15 산화철의 종류

4) 진주광택 안료

제품에서 진주광택 무지개 채색 또는 금속성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수한 광학적 효과가 있는 안료이다(그림 5.16).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펄광택 안료는 티타늄다이옥사이드 피복 운모(운모 티탄)로 티타늄다이옥사이드의 두께 조절에 의해 색상이 달라지며 두꺼워지면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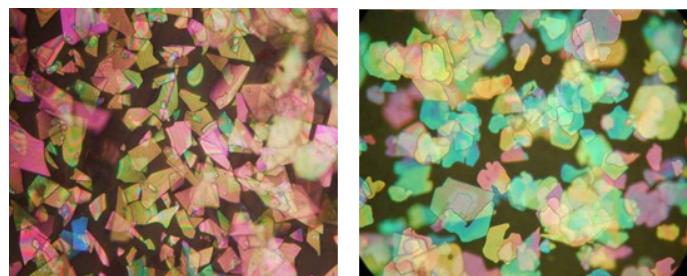


그림 5.16 진주광택 안료

5) 가능성 안료

색조 화장품에서 지금까지의 안료를 그대로 배합시켜서는 사용성 개선은 물론 메이크업 화장품의 기능개량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최근 새로운 기능성 안료의 개발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보론 나이트라이드(boron nitride), 합성 마이카 등은 매끄러움 우수, 은폐력, 감촉, 투명감 등이 개선된 안료이다. 또한 광조사에 의해 색 변화, 명도 변화 가역적인 광감응성 안료(photochromic pigment) 등이 있다. 마이카/티타늄다이옥사이드/흑색산화철의 분체를 적층하여 정면광은 정반사시키고 측면 광은 확산 반사시켜 보다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주는 분체도 있다(그림 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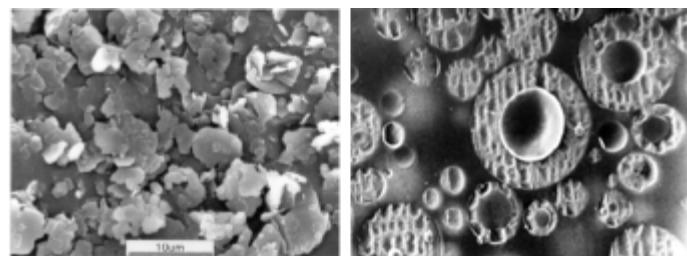


그림 5.17 기능성 안료

5.5.4. 고분자 안료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 분체는 미립구상분체로 퍼짐성을 좋게 하는 데 사용되는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및 평균 입경이 5μm이고 내열성 및 내용제성이 우수하며 분쇄 시 충격에도 변형되지 않는 나이론 분말 등이 있다(그림 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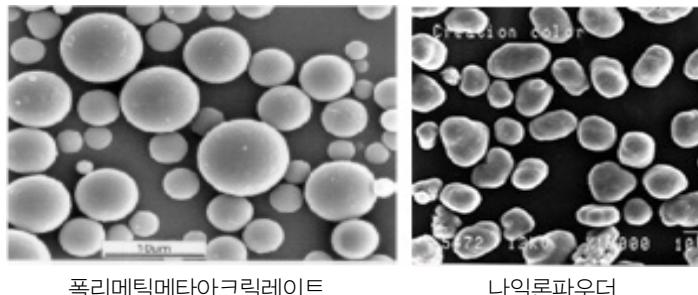


그림 5.18 고분자 안료

5.6 향료 (HS 3301, HS 3302)

향료는 예전에는 미라 보존, 방부 효과, 종교 의식이나 행사에 사용되었으며 현대에는 기분을 좋아지게, 풍요롭게, 심신 안정, 향기 치료에도 이용되는 성분이다. 화장품에서 역할은 배합된 성분 냄새를 차폐하거나 이미지 창조, 생리 및 심리적 작용을 한다.

5.6.1. 기초 화장품의 향료

1) 화장수

화장수는 일반적으로 투명 액상의 화장품으로 피부 청정효과와 함께 피부의 보습 균형을 유지하여 피부 정돈 효과를 같이 부여한다. 화장수는 보통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을 가용화시켜 외관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안정화 기술이 발달하여 반투명의 화장수도 있다. 화장수의 향료 부향율은 매우 낮아 0.05~0.15% 정도지만 향료의 용해성은 알코올의 함량과 관계가 깊다. 화장수에서는 향료의 가용화뿐만 아니라 향료에 의하여 제품의 변색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유액 및 크림

유액 및 크림은 피부의 유, 수분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유연효과를 주며 유화 형태에 따라 O/W, W/O형이 있으며 크림은 용도에 따라 에몰리언트 크림(영양크림, 수분크림), 마사지크림, 클렌징크림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유액 및 크림의 제조 방법은 정제수와 보습제를 포함한 수상과 왁스 및

오일 성분의 유상을 각각 75°C까지 가열 용해시키고 혼합하여 유화한다. 향료의 첨가는 45°C까지 냉각한 후에 행하며 부향율은 보통 0.05%~0.3% 정도이다. 향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화의 안정성에 기여하기도 하나 예멸전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남성용 화장품

기존에 여성용과 남성용의 향취 차이가 크던 것과는 다르게 90년대 후반부터 여성용과 남성용 향수가 공통의 향기 부분을 갖는 향수로 동일 브랜드 향수가 발매되는 경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남성의 청결 지향, 여성용 향수와 자매상품화 등의 경향에 영향을 받아 종래의 무거운 남성 전용의 향으로부터 가벼운 향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으며 부향율도 예전에는 0.3~1.0%이었으나 현재는 보통 0.5% 이하로 크게 감소되고 있다.

5.6.2. 색조 화장품의 향료

1) 백분류(파우더류)

백분류의 화장품으로는 페이스파우더(face powder), 콤팩트 파우더(compact powder), 리퀴드 파우더(liquid powder) 등으로 피부색의 조정 및 보정 등을 통하여 매력을 더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지금까지 많은 제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파운데이션(foundation)은 땀과 피지에 의한 번들거림을 커버하고, 화장의 지속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백분의 제형은 소량의 유분을 배합제로 배합하여 고형화시킨 것으로 여기에 색소와 향료 등을 첨가하여 기계적으로 분산하여 제품을 만든다. 백분류에는 향료를 첨가할 때 향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유의를 해야 하며 부향율은 약 0.1~0.3% 정도를 사용한다.

2) 립스틱

립스틱의 주요 용도는 화장의 마무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성들의 입술을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정리해 줄 뿐만 아니라 추위나 건조로부터 입술을 보호하고 입술 피부의 건강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한다. 립스틱은 먹을 수도 있으므로 먹을 수 있는 향료를 사용해야만 한다. 향조는 거의 과일 향취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부향율은 사용하는 오일, 왁스류의 정제 기술 향상에 힘입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 약 0.05~0.2% 정도이다.

5.7 보존제 및 기타 성분

5.7.1. 보존제 (HS 3808)

화장품은 미생물에 의해 변질되기 쉬우며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제가 사용된다. 보존제는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며 살균제는 짧은 시간 내에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작용을 한다. 사용할 수 있는 보존제 종류는 각 나라마다 서로 차이가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에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살균 및 보존제의 배합 한도를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1)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 (HS 2918)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존제로 무색, 무취의 비휘발성 물질로 넓은 pH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비교적 독성이 낮아 식품용 보존제로도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효모나 곰팡이에 강한 효과를 보인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에는 메틸파라벤(methylparaben), 에틸파라벤(ethylparaben),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부틸파라벤(butylparaben)이 있다. 물에 대한 용해도는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에칠파라벤<메칠파라벤 순이며 방부력과 인체 독성은 부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에틸파라벤>메칠파라벤으로 강하다. 사용량은 단일 성분 사용 시에는 0.4% 혼합 사용 시에는 0.8% 이하이다(그림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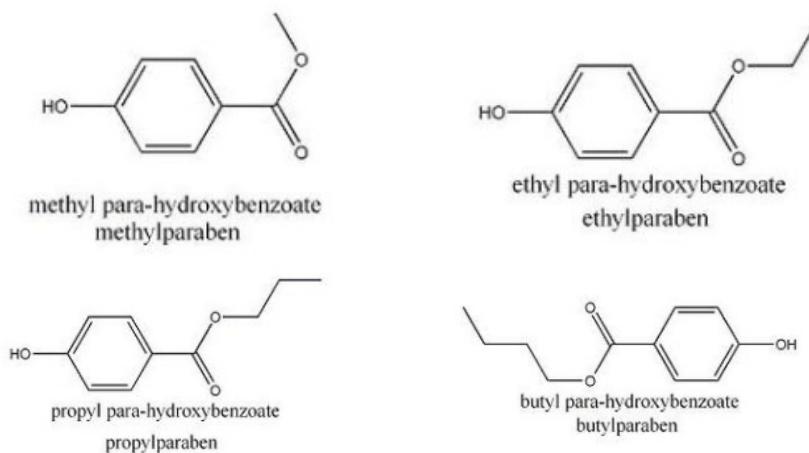


그림 5.19 파라옥시향산에스텔

2) 페녹시에탄올(phenoxyethanol) (HS 2909)

페녹시에탄올은 염색, 잉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물질로 투명한 액상으로 에탄올과 잘 섞인다(그림 5.20). 일반적으로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텔과 같이 사용될 때 그람 음성균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사용 농도는 0.5~1.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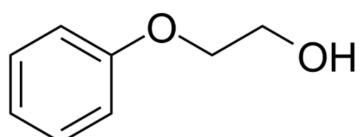


그림 5.20 페녹시에탄올

3) 1,2-헥산디올(1,2-hexandiol) (HS 2905)

1,2-헥산디올은 다른 방부 성분에 비해 피부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존제 역할 뿐만 아니라 보습 역할도 같이 해주는 무취, 무색의 액상 성분이다(그림 5.21). 하지만 다른 보존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방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배합 함량은 2~3% 정도로 많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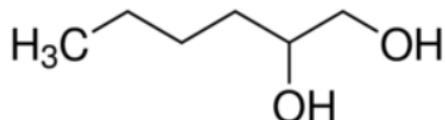


그림 5.21 1,2-헥산다이올

4) 살균제 (HS 3808)

살균제는 소독용 제품에 사용되며 에탄올, 트리클로란(triclosan)(HS 2909), 벤잘코늄클로라이드(benzalkonium chloride) 등이 있으며 트리클로란은 세정용 여드름 제품에 0.05~0.3% 농도로 사용 한다.



5.7.2. 기타 성분

1) 산화방지제(anti-oxidant)

유지나 유성 물질이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며 이는 산패에 의해 변질되기 쉬며 물,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한 산패를 방지하는 물질을 산화방지제라 한다. 토코페롤류(HS 2936), 아스코빅애씨드(HS 2936), 디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HS 2922) 등이 있다.

2) 자외선 흡수제(변색 방지제)

화장품은 자외선에 의해 탈색되거나 분해가 촉진되며 자외선 흡수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0.5% 이하로 사용되며 파라아미노 안식향산(HS 2922)과 그의 에스테르, 옥시벤존 등이 있다.

3) 금속이온봉쇄제(chelating agent) (HS 2922)

화장품에 금속이온이 혼입되면 유성 성분의 산화 촉진, 방부력 저하, 유효성분의 효능 저하, 변취, 침전 등이 발생된다. 금속이온을 불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속이온봉쇄제라 하며 대표적 금속이온봉쇄제는 다이소듐이디티에이(disodium EDTA), 트라이소듐이디티에이(trisodium EDTA)가 있다.

4) 비타민(vitamin) (HS 2936)

비타민은 인체의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부의 생리 기능의 유지에도 중요하다. 비타민의 결핍에 의한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주로 사용되는 비타민 A는 여드름 및 주름 제거 효과, 비타민 B군은 지루성 피부염, 습진, 혈행 촉진에 효과적이며 비타민 C는 미백효과가 있고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5) 항염증제(anti-inflammatory agent) (HS 1302)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며 주로 식물추출물이 많이 사용된다. 오행초 추출물, 병풀 추출물, 마트리카리아(chamomilla recutita(matricaria))추출물, 감초추출물 등이 많이 사용된다.

6) 수렴제(astringent)

모공축소를 위해 사용되며 징크옥사이드, 황산아연, 알란토인(allantoin)(HS 2933), 하이드록시 알루미늄, 탄닉애씨드(tannic acid)(HS 3201) 등이 있다.

7) 각질 박리제

과각화된 각질, 모공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으로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α -hydroxy acid, AHA), 살리실릭애씨드(salicylic acid, BHA)(HS 2918), 우레아(urea)(HS 3102) 등이 있다.

8) 청량화제(cooling agent)

피부에 시원한 감촉을 부여하는 것으로 멘톨(HS 2906), 캠퍼(HS 2914), 에탄올 등이 사용된다.

9) 식물추출물 (HS 1302)

식물 성분 또는 그와 관련된 성분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피부에 안전하고 자연 성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므로 화장품에 유효 성분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식물추출물이다.

(1) 미백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당귀, 상백피, 작약, 수세미, 녹차, 파슬리, 알로에, 대두, 양상추, 녹두, 도라지 등

(2) 주름방지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아보카도, 장미, 소나무, 당근, 로즈마리, 은행잎, 백합, 인삼, 너도밤나무 등

(3) 노화방지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떡갈나무, 조롱나무, 흥차, 황금, 녹차 등

(4) 보습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알로에, 대두, 금진화, 토마토, 오이, 율무, 쌀겨, 부활초, 마로니에, 파슬리 등

(5) 클렌징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파인애플, 해바라기, 수세미, 자작나무, 우엉, 소나무, 담쟁이덩굴 등

(6) 피지조절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금잔화, 양상추, 담쟁이덩굴, 마로니에, 사르비아, 팬지, 느타리버섯 등

(7) 탈모방지 및 모발보호 효과가 있는 식물추출물

양국화, 토끼풀, 포도나무, 보리수, 연명초, 당약, 국화 등



2장

원료물질 설명자료 및 품목분류 가이드



화장품 원료 물질 설명자료

«예시 - 석류추출물»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①피부컨디셔닝제	②석류추출물	③84961-57-9	④1302.19 ⑤1515.90 ⑥3301.90

- ① 대분류: 화장품 주요 용도
- ② 표준명: 한글명
- ③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Number): 화학물질에 부여되는 고유 번호
- ④ 식물성(석류) 추출물이 분류되는 6단위 세번
- ⑤ 비휘발성 식물성(석류) 지방과 기름이 분류되는 6단위 세번
- ⑥ 식물성 정유 추출시 얻은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가 분류되는 6단위 세번

화장품 원료 물질의 품목분류 가이드

❖ 추출물

- ▶ 식물성: 1302 → 기타 성분 조제(예: 부틸렌글리콜) ⇒ 3824.99
 - ▶ 동물성: 1603 → 기타 성분 조제(예: 프로필렌글리콜) ⇒ 3824.99
- ※ 단,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예: 덱스트린)을 첨가한 식물성 추출물은 제1302호에 분류함

❖ 오일

- ▶ 중성지방(Triglyceride): “글리세롤 1분자에 지방산 3분자가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형태”, 불휘발성 유지로서 보습제, 피부유연화제로 사용
- ① 동물성: 1501(돼지, 가금), 1502(소, 면양, 염소), 1504(어류), 1506(기타)
- 이들을 혼합시(예: 우지에 양지를 혼합) ⇒ 1518

② 식물성: 1507(대두) ~ 1515(기타)

- 이들을 혼합시(예: 해바라기씨유에 기타 식물유 또는 왁스) ⇒ 1518

③ 수소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1516

④ 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 등 화학적 변성한 것: 1518

▶ 정유(Essential oil): “복합성분이며 알코올·알데히드·케톤·페놀·에테르와 테르펜을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 대부분 휘발성으로 착향제로 사용

- 정유: 3301 → 정유 혼합물, 둘 이상의 방향성 물질 혼합물 ⇒ 3302

※ “방향성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물질

❖ 계면활성제

▶ 유기계면활성제는 음이온, 양이온, 비이온 활성제가 있으며 제3402호로 분류

제34류 주 3호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 계면활성제 특성이 없고 왁스 특성이 있으면 제3404호로 분류

- 왁스특성(HS해설서 제3404호)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Pa.s (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 글리세롤의 모노·디-와 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의 혼합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갖지 않는 것은 제3824호에 분류

❖ 색소(제32류)

▶ 식물성 · 동물성 착색제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3

- (예시) 치자 과실에서 추출하여 얻은 치자황색소(Crocin 50%), 프로필렌글리콜 등으로 혼합된 적색색 점조액상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3205

- (예시) 합성 유기착색제를 알루미늄염에 고정시킨 레이크안료에 Polyglyceryl-2 Triisostearate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상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



- (예시) Titanium dioxide(건조상태 중량 80%이상)를 Triethoxycaprylylsilane, Aluminium hydroxide로 표면처리(코팅)한 백색 분말상
-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 용매에 용해한 용액(용매 함유량이 100분의 50 초과하는 것, 콜로디온 제외): 3208
 - (예시) 아크릴레이트/디메치콘 공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인 Cyclopentasiloxane(50%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한 액상
※ 만약, 휘발성 유기용제가 50% 미만일 경우 제39류에 분류

❖ 유기화합물

-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제29류 분류(Cas No, ECICS 참조)
 - (예시) ①Decamethyltetrasiloxane의 투명한 액상(CAS NO 141-62-8): 2931
 - ②Dibutyl adipate의 무색투명한 액상(CAS No 105-99-7): 2917
 - ③백색 분말상의 Madecassoside(CAS No 34540-22-2): 2938

❖ 유기화합물 → 기타 성분 조제 ⇒ 3824.99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제3824호로 분류

❖ 무기화합물

- ▶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 제28류 분류(Cas No, ECICS 참조)
 - (예시) ①백색계 분말상의 실리카(CAS NO 7631-86-9): 2811
 - ②백색 가루상의 산화알루미늄(CAS No 1344-28-1): 2812

❖ 무기화합물 → 기타 성분 조제(예: Methicone 표면 처리) ⇒ 3824.99

※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제3824호로 분류

❖ 플라스틱류

- ▶ 성형·주조·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에 따라 종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 (예시) ①메틸페닐계 실리콘오일의 무색 투명한 액상: 3910
 - ②Polyethylene glycol의 백색 고상: 3907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	피부컨디셔닝제	가지열매추출물	84012-19-1	1302.19
2	피부컨디셔닝제	리마콩씨추출물	85085-22-9	1302.19
3	피부컨디셔닝제	리치과피추출물	91722-81-5	1302.19 3301.90
4	피부컨디셔닝제	마늘추출물	8008-99-9	1302.19
5	피부컨디셔닝제	마돈나백합비늘줄기추출물	84776-67-0	1302.19 3301.90
6	피부컨디셔닝제	가시칠엽수씨추출물	8053-39-2	1302.19 3201.90 3301.90
7	피부컨디셔닝제	구아바잎추출물	90045-46-8 91770-12-6	1302.19 1515.90
8	피부컨디셔닝제	마시멜로뿌리추출물	73049-65-7	1302.19
9	피부컨디셔닝제	쇠비름추출물	90083-07-1	1302.19 3301.90
10	피부컨디셔닝제	구아바열매추출물	90045-46-8 91770-12-6	1302.19 1515.90
11	피부컨디셔닝제	마테잎추출물	84082-59-7 73296-98-7	3301.29
12	피부컨디셔닝제	마텔추출물	84082-67-7	1302.19 3301.29 3301.90
13	피부컨디셔닝제	초마황추출물	85940-38-1	1302.19 3301.90
14	피부컨디셔닝제	필리핀오렌지껍질추출물	84929-38-4 90063-83-5	1302.19 3301.90
15	피부컨디셔닝제	필리핀오렌지추출물	84929-38-4	1302.19 3301.90
16	피부컨디셔닝제	당아욱꽃/잎/줄기추출물	84082-57-5	1302.19 3203.00 3301.90
17	피부컨디셔닝제	망고스틴껍질추출물	90045-25-3	1302.19 3824.9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8	피부컨디셔닝제	망고잎추출물	90063-86-8	1302.19
19	피부컨디셔닝제	구주물푸레잎추출물	84625-28-5	1302.19
20	피부컨디셔닝제	망고추출물	90063-86-8	1302.19 1515.90 3824.99
21	피부컨디셔닝제	메도우스위트꽃추출물	84775-57-5	1302.19
22	피부컨디셔닝제	메도우스위트잎추출물	84775-57-5	1302.19
23	피부컨디셔닝제	메도우스위트추출물	84775-57-5	1302.19
24	피부컨디셔닝제	우단담배풀추출물	84012-25-9 90064-13-4	1302.19
25	피부컨디셔닝제	구주소나무잎추출물	84012-35-1	1302.19 3301.29 3301.90
26	피부컨디셔닝제	암브레트추출물	84455-19-6	1302.19 3301.29 3301.90
27	피부컨디셔닝제	멜론추출물	90063-94-8	1302.19 3301.90
28	피부컨디셔닝제	모란껍질추출물	223747-88-4	1302.19
29	피부컨디셔닝제	모란뿌리추출물	223747-88-4	1302.19
30	피부컨디셔닝제	목향추출물	84012-20-4	1302.19
31	피부컨디셔닝제	중국당귀뿌리추출물	299184-76-2	1302.19
32	피부컨디셔닝제	무추출물	84775-94-0	1302.19
33	피부컨디셔닝제	무화과나무열매/잎추출물	90028-74-3	1302.19 3301.90
34	피부컨디셔닝제	무화과추출물	90028-74-3	1302.19 3301.90
35	피부컨디셔닝제	물냉이꽃/잎추출물	84775-70-2	1302.19 3301.29
36	피부컨디셔닝제	칡뿌리추출물	223748-08-1	1302.19
37	피부컨디셔닝제	바닐라열매추출물	84650-63-5 8024-06-4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38	피부컨디셔닝제	불가리스매자뿌리추출물	8054-40-8 84649-92-3	1302.19
39	피부컨디셔닝제	콘민트잎추출물	90063-97-1	1302.19 3301.29
40	피부컨디셔닝제	코치닐선인장꽃추출물	90082-21-6	1302.19
41	피부컨디셔닝제	가는범꼬리뿌리추출물	84012-36-2	1302.19
42	피부컨디셔닝제	아메리카베스우드꽃추출물	90063-53-9	1302.19 3301.29
43	피부컨디셔닝제	별꽃추출물	90131-34-3	1302.19
44	피부컨디셔닝제	병풀잎추출물	84696-21-9	1302.19 3301.90
45	피부컨디셔닝제	병풀추출물	84696-21-9 84776-24-9	1302.19 3301.90
46	피부컨디셔닝제	보리뿌리추출물	85251-64-5	1302.19
47	피부컨디셔닝제	보리씨추출물	85251-64-5	1302.19
48	피부컨디셔닝제	보리잎추출물	85251-64-5	1302.19
49	피부컨디셔닝제	발레이추출물	85251-64-5 94349-67-4	1302.19
50	피부컨디셔닝제	복사나무꽃추출물	84012-34-0	1302.19
51	피부컨디셔닝제	복사나무잎추출물	84012-34-0	1302.19
52	피부컨디셔닝제	봉작고사리잎추출물	84649-72-9	1302.19
53	피부컨디셔닝제	레스페데자 카피타타잎/줄기추출물	84837-05-8	1302.19
54	피부컨디셔닝제	부처스브룸뿌리추출물	84012-38-4	1302.19
55	피부컨디셔닝제	분꽃꽃/잎/줄기추출물	91722-88-2	1302.19
56	피부컨디셔닝제	분홍바늘꽃꽃/잎/줄기추출물	90028-31-2	1302.19
57	피부컨디셔닝제	분홍바늘꽃잎추출물	90028-31-2	1302.19
58	피부컨디셔닝제	블루플래그아이리스추출물	90045-93-5	1302.19
59	피부컨디셔닝제	검은뽕나무잎추출물	90064-11-2	1302.19
60	피부컨디셔닝제	상귀나리아뿌리줄기/뿌리추출물	84929-48-6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61	피부컨디셔닝제	비누풀잎/뿌리추출물	84775-97-3	1302.19
62	피부컨디셔닝제	비터오렌지껍질추출물	72968-50-4	1302.19 3301.12 3301.29
63	피부컨디셔닝제	사탕무뿌리추출물	89957-89-1 89957-90-4	1302.19
64	피부컨디셔닝제	비파나무잎추출물	91770-19-3	1302.19
65	피부컨디셔닝제	빌베리열매/잎추출물	84082-34-8	1302.19
66	피부컨디셔닝제	빌베리열매추출물	84082-34-8	1302.19
67	피부컨디셔닝제	사과나무잎추출물	85251-63-4 89957-48-2	1302.19 3301.29 3301.90
68	피부컨디셔닝제	사발팜열매추출물	84604-15-9	1302.19 3301.90
69	피부컨디셔닝제	야생딸기추출물	84929-78-2	1302.19 1515.90
70	피부컨디셔닝제	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	90106-68-6	1302.19 3301.90
71	피부컨디셔닝제	살구추출물	68650-44-2	1302.19 1522.00 3301.90
72	피부컨디셔닝제	삼색제비꽃추출물	84012-42-0	1302.19 3301.90 3824.99
73	피부컨디셔닝제	새삼씨추출물	89998-10-7	1302.19
74	피부컨디셔닝제	생강추출물	84696-15-1	1302.19 3301.90
75	피부컨디셔닝제	서던우드꽃/잎/줄기추출물	89957-58-4	1302.19
76	피부컨디셔닝제	서양고추나물꽃/잎/줄기추출물	84082-80-4	1302.19
77	피부컨디셔닝제	서양민들레뿌리줄기/뿌리추출물	68990-74-9 84775-55-3	1302.19
78	피부컨디셔닝제	서양민들레잎추출물	68990-74-9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79	피부컨디셔닝제	서양배추출물	90082-43-2	1302.19 3301.90
80	피부컨디셔닝제	서양벌노랑이꽃추출물	84696-24-2	1302.19 3301.90
81	피부컨디셔닝제	서양산사자추출물	84603-61-2	1302.19 3301.90
82	피부컨디셔닝제	검은서양송로추출물	85085-76-3	1302.19 3301.29
83	피부컨디셔닝제	서양송악잎/줄기추출물	84082-54-2	1302.19 3301.90
84	피부컨디셔닝제	서양자두추출물	90082-87-4	1302.19 1515.90
85	피부컨디셔닝제	프로방스장미꽃추출물	84604-12-6	1302.19 3301.29 3301.90
86	피부컨디셔닝제	서양톱풀추출물	84082-83-7	1302.19 3301.90
87	피부컨디셔닝제	둥근빗살현호색꽃/잎/줄기추출물	84625-41-2	1302.19
88	피부컨디셔닝제	석류나무껍질추출물	84961-57-9	1302.19 1515.90 3301.90
89	피부컨디셔닝제	석류추출물	84961-57-9	1302.19 1515.90 3301.90
90	피부컨디셔닝제	석창포뿌리/줄기추출물	91745-11-8	1302.19
91	피부컨디셔닝제	타임잎추출물	84650-52-2 84929-51-1	1302.19 3301.90
92	피부컨디셔닝제	타임추출물	84650-52-2 84929-51-1	1302.19 3301.90
93	피부컨디셔닝제	나이트블루밍세레우스꽃추출물	8007-78-1	1302.19
94	피부컨디셔닝제	보검선인장줄기추출물	90082-21-6	1302.19 3824.9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95	피부컨디셔닝제	보검선인장추출물	90082-21-6	1302.19 3824.99
96	피부컨디셔닝제	설탕단풍추출물	91770-22-8	1302.19
97	피부컨디셔닝제	레이디스맨틀추출물	84695-94-3	1302.19
98	피부컨디셔닝제	세네가뿌리추출물	8057-58-7 90082-95-4	1302.19
99	피부컨디셔닝제	여름세이보리추출물	84775-98-4	1302.19 3301.29
100	피부컨디셔닝제	살비아잎추출물	8022-56-8 84082-79-1	1302.19 3301.29 3301.90
101	피부컨디셔닝제	쥐오줌풀뿌리추출물	8057-49-6	1302.19
102	피부컨디셔닝제	아위뿌리추출물	90028-70-9	1302.19 3301.29
103	피부컨디셔닝제	연꽃꽃추출물	85085-51-4	1302.19 1515.90 3301.90
104	피부컨디셔닝제	오이풀뿌리추출물	84787-71-3	1302.19
105	피부컨디셔닝제	육계나무껍질추출물	84961-46-6	1302.19
106	피부컨디셔닝제	은행나무잎추출물	90045-36-6	1302.19 3301.90
107	피부컨디셔닝제	피멘토열매추출물	84929-57-7	1302.19
108	피부컨디셔닝제	홍삼추출물	72480-62-7 1449115-64-3	1302.19
109	피부컨디셔닝제	홍합추출물	94465-78-8	1603.00
110	피부컨디셔닝제	회향열매추출물	84625-39-8 85085-33-2	1302.19
111	피부컨디셔닝제	고추추출물	84625-29-6	1302.19 3301.90
112	피부컨디셔닝제	라즈베리추출물	84929-76-0	1302.19 1515.90 3301.9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13	피부컨디셔닝제	콘두란고껍질추출물	84787-66-6	1302.19
114	피부컨디셔닝제	서양민들레추출물	68990-74-9	1302.19
115	피부컨디셔닝제	소엽씨추출물	90082-61-4	1302.19 3301.29
116	피부컨디셔닝제	해안에린지움추출물	90028-44-7	1302.19
117	피부컨디셔닝제	페루기네움철쭉꽃추출물	90106-21-1	1302.19
118	피부컨디셔닝제	해안에린지움캘러스배양추출물	90028-44-7	1302.19
119	피부컨디셔닝제	아까시나무꽃/잎/줄기추출물	89957-93-7	1302.19 3301.90
120	피부컨디셔닝제	콘두란고뿌리추출물	84787-66-6	1302.19
121	피부컨디셔닝제	각시동굴레뿌리줄기/뿌리추출물	90082-98-7	1302.19
122	피부컨디셔닝제	가시오갈피추출물	84696-12-8	1302.19 3301.90
123	피부컨디셔닝제	태산목꽃추출물	85085-47-8	1302.19
124	피부컨디셔닝제	병풀잎/줄기추출물	84696-21-9	1302.19
125	피부컨디셔닝제	페퍼민트줄기추출물	84082-70-2	1302.19
126	피부컨디셔닝제	베르가못캘러스추출물	91722-89-3	1302.19 3301.29
127	피부컨디셔닝제	마시멜로꽃추출물	73049-65-7	1302.19
128	피부컨디셔닝제	마리아나가문비나무껍질추출물	91722-19-9	1302.19 3301.29
129	피부컨디셔닝제	에버라스팅꽃/줄기추출물	90045-56-0	1302.19 3301.29
130	피부컨디셔닝제	석류껍질추출물	84961-57-9	1302.19 1515.90 3301.90
131	피부컨디셔닝제	히비스커스열매추출물	84775-96-2	1302.19 1515.90
132	피부컨디셔닝제	큰노랑용담추출물	72968-42-4 97676-22-7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33	피부컨디셔닝제	창질경이씨추출물	85085-64-9	1302.19
134	피부컨디셔닝제	스위트아몬드나무껍질추출물	90320-37-9	1302.19 1522.00 3301.90
135	피부컨디셔닝제	삼뿌리추출물	89958-21-4	1302.19
136	피부컨디셔닝제	프로방스장미줄기추출물	84604-12-6	1302.19 3301.29 3301.90
137	피부컨디셔닝제	펠라르고니움 로세움잎추출물	90082-55-6	1302.19 3301.29
138	피부컨디셔닝제	안젤리카캘러스추출물	84775-41-7	1302.19 3301.29
139	피부컨디셔닝제	옻나무추출물	90028-66-3	1302.19 1515.90
140	피부컨디셔닝제	오미자가지추출물	90028-66-3	1302.19 1515.90
141	피부컨디셔닝제	바위솔꽃/잎/줄기추출물	90028-66-3	1302.19 1515.90
142	피부컨디셔닝제	만다린나무추출물	8008-31-9	3301.19
143	피부컨디셔닝제	쓴박하꽃/잎/줄기추출물	84696-20-8	1302.19
144	피부컨디셔닝제	레이디스맨틀꽃/잎/줄기추출물	84695-94-3	1302.19
145	피부컨디셔닝제	카우슬립꽃추출물	84787-68-8	1302.19
146	피부컨디셔닝제	입술연지수선화캘러스추출물	90064-26-9	1302.19 3301.90
147	피부컨디셔닝제	단삼잎추출물	90106-50-6	1302.19
148	피부컨디셔닝제	참식나무열매추출물	84837-05-8	1302.19
149	피부컨디셔닝제	머루/포도교배종씨추출물	8024-22-4	1515.90
150	피부컨디셔닝제	황차추출물	84650-60-2	1302.19 3301.90 3824.99
151	피부컨디셔닝제	블래더랙추출물	84696-13-9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52	피부컨디셔닝제	명자나무씨추출물	90106-03-9	1302.19 1515.90
153	피부컨디셔닝제	푸르푸레움등꽃/잎/줄기추출물	90028-55-0	1302.19
154	피부컨디셔닝제	마텔오일	8008-46-6	3301.29
155	피부컨디셔닝제	필리핀오렌지껍질 오일	8008-31-9	3301.19
156	피부컨디셔닝제	몰약오일	8016-37-3	3301.29
157	피부컨디셔닝제	미네랄오일	8012-95-1 8020-83-5 8042-47-5	2710.19
158	피부컨디셔닝제	밀배아오일	8006-95-9 68917-73-7	1522.00
159	피부컨디셔닝제	바닐라열매오일	8024-06-4 84650-63-5	3301.90
160	피부컨디셔닝제	양까막까치밥나무씨오일	97676-19-2	1516.20
161	피부컨디셔닝제	비타민나무오일	90106-68-6	1302.19 3301.90
162	피부컨디셔닝제	살구씨오일	68650-44-2 72869-69-3	1302.19 1522.00 3301.90
163	피부컨디셔닝제	생강오일	84696-15-1	1302.19 3301.90
164	피부컨디셔닝제	유채씨오일	8002-13-9	1514.11 1515.90
165	피부컨디셔닝제	타임꽃/잎오일	8007-46-3 84650-52-2	3301.29
166	피부컨디셔닝제	마리아나가문비가지/잎오일	91722-19-9	1302.19 3301.29
167	피부컨디셔닝제	페퍼민트꽃/잎/줄기오일	8006-90-4 84082-70-2	1302.19 3301.24 3301.9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68	피부컨디셔닝제	편백잎오일	91745-97-0	1302.19 3301.29 3301.90
169	피부컨디셔닝제	레몬유칼립투스잎/잔가지오일	85203-56-1	3301.29
170	피부컨디셔닝제	에버라스팅꽃/잎/줄기오일	90045-56-0 8023-95-8	1302.19 3301.29 3301.90
171	피부컨디셔닝제	캐모마일꽃/잎/줄기오일	8015-92-7	3301.29
172	피부컨디셔닝제	클레리꽃/잎/줄기오일	84775-83-7	1302.19 3301.29 3301.90
173	피부컨디셔닝제	올스파이스열매오일	84929-57-7	1302.19
174	피부컨디셔닝제	레몬밤잎/줄기오일	84082-61-1 8014-71-9	1302.19 3301.29 3301.90
175	피부컨디셔닝제	블랙라즈베리씨오일	68915-99-1	1302.19
176	피부컨디셔닝제	파스향나무꽃/잎/줄기오일	90045-28-6	1302.19 3301.29
177	피부컨디셔닝제	리날루리페라녹나무잎오일	91745-89-0	1302.19 3301.29
178	피부컨디셔닝제	삼씨오일	8016-24-8	1302.19
179	피부컨디셔닝제	류신	328-39-2 61-90-5	2922.49
180	피부컨디셔닝제	리놀레닉애씨드	463-40-1	3823.19
181	피부컨디셔닝제	리놀레익애씨드	342889-37-6	2916.15
182	피부컨디셔닝제	리보플라빈	83-88-5	2936.23
183	피부컨디셔닝제	리파아제	9001-62-1	3507.90
184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글루코네이트	3632-91-5	2918.16
185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나이트레이트	10377-60-3	2834.29
186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락테이트	18917-93-6	2918.11
187	피부컨디셔닝제	구아노신	118-00-3	2934.9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188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시트레이트	144-23-0	2918.15
189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아스코빌포스페이트	113170-55-1 114040-31-2	2932.20
190	피부컨디셔닝제	마그네슘아스파테이트	18962-61-3 2068-80-6	2922.49
191	피부컨디셔닝제	만니톨	87-78-5 69-65-8	2905.43
192	피부컨디셔닝제	필리핀오렌지수	84929-38-4	1302.19 3301.90
193	피부컨디셔닝제	말토덱스트린	9050-36-6	3505.10
194	피부컨디셔닝제	망고씨버터	90063-86-8	1302.19 1515.90 3824.99
195	피부컨디셔닝제	망고즙	90063-86-8	1302.19 1515.90 3824.99
196	피부컨디셔닝제	메티오닌	63-68-3 59-51-8 348-67-4	2930.40
197	피부컨디셔닝제	메티콘	63148-57-2 9004-73-3	3910.00
198	피부컨디셔닝제	메틸글루코오스세스퀴스 테아레이트	68936-95-8	2940.00
199	피부컨디셔닝제	메틸니코티네이트	93-60-7	2933.39
200	피부컨디셔닝제	메틸소이에이트	67784-80-9 68919-53-9	3826.00
201	피부컨디셔닝제	메틸카프로에이트	106-70-7	2915.90
202	피부컨디셔닝제	메틸코코에이트	61788-59-8	3826.00
203	피부컨디셔닝제	메틸펠라고네이트	1731-84-6	2915.90
204	피부컨디셔닝제	1-메틸하이단토인-2-이미드	60-27-5	2933.29
205	피부컨디셔닝제	멜리바이오스	585-99-9	1702.90 2940.0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206	피부컨디셔닝제	무화과추출물	90028-74-3	1302.19 3301.90
207	피부컨디셔닝제	무화과수	90028-74-3	1302.19 3301.90
208	피부컨디셔닝제	미리스틸에틸헥사노에이트	72201-45-7	2915.90
209	피부컨디셔닝제	밀배아글리세라이즈	68990-07-8	3824.99
210	피부컨디셔닝제	귀리발효효소	65072-01-7	3507.90
211	피부컨디셔닝제	바닐라열매수	84650-63-5 8024-06-4	3301.90
212	피부컨디셔닝제	바이오틴	58-85-5	2936.29
213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우신	475-81-0	2939.79
214	피부컨디셔닝제	베타-시토스테롤	83-46-5	2906.13
215	피부컨디셔닝제	다이펩타이드-15	556-50-3	2924.19
216	피부컨디셔닝제	벤질니코티네이트	94-44-0	2933.39
217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이코젠	9005-79-2	3913.90
218	피부컨디셔닝제	복승아즙	84012-34-0	1302.19
219	피부컨디셔닝제	부톡시에틸스테아레이트	109-38-6	2915.70
220	피부컨디셔닝제	부틸에틸프로판다이올	115-84-4	2905.39
221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이콜다이스테아레이트	627-83-8 91031-31-1	2915.70 3824.99
222	피부컨디셔닝제	브로멜라인	9001-00-7 37189-34-7	3507.90
223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이콜스테아레이트	111-60-4	2915.70
224	피부컨디셔닝제	비사보롤	72691-24-8 23089-26-1 515-69-5	2906.19
225	피부컨디셔닝제	비스나딘	477-32-7	2932.20
226	피부컨디셔닝제	비즈왁스	8012-89-3	1521.90
227	피부컨디셔닝제	사이아노코발아민	68-19-9	2936.26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228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카민	488-43-7	2922.19
229	피부컨디셔닝제	사이클로메티콘	69430-24-6	3910.00
230	피부컨디셔닝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556-67-2	2931.90
231	피부컨디셔닝제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541-02-6	2931.90
232	피부컨디셔닝제	사이클로헥사실록세인	540-97-6	2931.90
233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코노락톤	90-80-2	2932.20
234	피부컨디셔닝제	사코신	107-97-1	2922.49
235	피부컨디셔닝제	산소	7782-44-7	2804.40
236	피부컨디셔닝제	살리실릭애씨드	69-72-7	2918.21
237	피부컨디셔닝제	생강추출물	84696-15-1	1302.19 3301.90
238	피부컨디셔닝제	서브틸리신	9014-01-1	3507.90
239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코오스	50-99-7	1302.39 1702.30 2912.49
240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코오스옥시다아제	9001-37-0	3507.90
241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쿠로노락톤	32449-92-6	2932.20
242	피부컨디셔닝제	글루쿠로닉애씨드	6556-12-3	2932.99
243	피부컨디셔닝제	글루타믹애씨드	56-86-0 617-65-2 6893-26-1	2922.42
244	피부컨디셔닝제	세럼알부민	9048-46-8	3502.90
245	피부컨디셔닝제	글루타민	56-85-9 6899-04-3	2924.19
246	피부컨디셔닝제	세린	56-45-1	2922.50
247	피부컨디셔닝제	살비아잎수	8022-56-8	3301.29
248	피부컨디셔닝제	세틸리시놀레이트	10401-55-5	2918.19
249	피부컨디셔닝제	세틸에틸헥사노에이트	59130-69-7	2915.90
250	피부컨디셔닝제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52304-36-6	2924.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251	피부컨디셔닝제	젤라틴	9000-70-8	3503.00
252	피부컨디셔닝제	온콜로이드	7440-22-4	2843.10
253	피부컨디셔닝제	트라이메틸벤조일 다이페닐포스핀옥사이드	75980-60-8	2931.49
254	피부컨디셔닝제	아이소프로필티오잔톤	5495-84-1	2934.99
255	피부컨디셔닝제	다이메틸이미다졸리디논	80-73-9	2933.29
256	피부컨디셔닝제	아까시나무꽃수	89957-93-7	1302.19 3301.90
257	피부컨디셔닝제	1-나프탈렌아세틱애씨드	86-87-3	2916.39
258	피부컨디셔닝제	미르센	123-35-3	2901.29
259	피부컨디셔닝제	아세틸갈락토사민	1811-31-0	2932.99
260	피부컨디셔닝제	2-나이트로-p-페닐렌 다이아민설페이트	68239-83-8	2921.51
261	피부컨디셔닝제	멘데인카복사미도 에틸아세테이트	68489-14-5	2924.29
262	피부컨디셔닝제	살비아잎가루	84082-79-1	1302.19 3301.90
263	피부컨디셔닝제	폴리비닐리덴다이플루오라이드	24937-79-9	3904.69
264	피부컨디셔닝제	월계수잎/줄기수	84603-73-6	1302.19 3301.90
265	피부컨디셔닝제	레몬그라스잎수	89998-14-1	3301.29
266	피부컨디셔닝제	에스쿨레틴	305-01-1	2932.20
267	피부컨디셔닝제	에스에이치-폴리펩타이드-121	9007-34-5	3504.00
268	피부컨디셔닝제	에스알-히드라총폴리펩타이드-1	9007-34-5	3504.00
269	피부컨디셔닝제	보검선인장줄기	90082-21-6	1302.19 3824.99
270	피부컨디셔닝제	니코틴아마이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	1094-61-7	2934.99
271	피부컨디셔닝제	아이소부틸올리에이트	10024-47-2	2916.15
272	피부컨디셔닝제	사프란암술머리추출물	84604-17-1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273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이신아마이드에이치씨엘	1668-10-6	2924.19
274	피부컨디셔닝제	보검선인장열매추출물	90082-21-6	1302.19
275	피부컨디셔닝제	바질잎추출물	84775-71-3	1302.19 3301.29 3301.90
276	피부컨디셔닝제	다이팔미토일글리세로포스포콜린	63-89-8	2923.20
277	피부컨디셔닝제	디옥시콜릭애씨드	83-44-3	2918.19
278	피부컨디셔닝제	아이소보닐옥시에탄올	7070-15-7	2909.49
279	피부컨디셔닝제	삼줄기추출물	89958-21-4	1302.19
280	피부컨디셔닝제	부틸팔미테이트	111-06-8	2915.70
281	피부컨디셔닝제	레코플라본	203191-10-0 847909-44-8	2932.99
282	피부컨디셔닝제	살비아꽃/잎/줄기수	84082-79-1	1302.19 3301.90
283	피부컨디셔닝제	메코발라민	13422-55-4	2936.26
284	피부컨디셔닝제	아시바트렙	1005168-10-4	2935.90
285	피부컨디셔닝제	그래핀	1034343-98-0	2803.00
286	피부컨디셔닝제	아이소소바이드	652-67-5	2932.99
287	피부컨디셔닝제	메타크릴로일옥시에틸포스포릴콜	67881-98-5	2923.90
288	피부컨디셔닝제	하이드록시메톡시페닐데칸온	27113-22-0	2914.50
289	피부컨디셔닝제	아미디노글라이신	352-97-6	2925.29
290	피부컨디셔닝제	암브레트꽃/씨수	84455-19-6	1302.19 3301.29 3301.90
291	피부컨디셔닝제	1,2-헵タン다이올	3710-31-4	2905.39
292	피부컨디셔닝제	키토산에이치씨엘	9012-76-4	3913.90
293	피부컨디셔닝제	스퍼미딘	124-20-9	2921.29
294	피부컨디셔닝제	리그닌/셀룰로오스	9005-53-2	3913.90
295	피부컨디셔닝제	에스-대구울리고펩타이드-1	65113-99-7	2906.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296	피부컨디셔닝제	네롤	106-25-2	2905.22
297	피부컨디셔닝제	수박수	90244-99-8	1302.19 1515.90
298	피부컨디셔닝제	에스에이치-올리고펩타이드-127에스피	1627580-64-6	2937.19
299	피부컨디셔닝제	글라이콜라이드	502-97-6	2932.20
300	피부컨디셔닝제	당아욱꽃/잎/줄기수	84082-57-5	1302.19 3203.00 3301.90
301	피부컨디셔닝제	카바밀글루타믹애씨드	1188-38-1	2924.19
302	피부컨디셔닝제	테트라펩타이드-61	307297-39-8	2924.19
303	피부컨디셔닝제	엄벨리페론	93-35-6	2932.20
304	피부컨디셔닝제	아이소나이아신	55-22-1	2933.39
305	피부컨디셔닝제	레스아세토페논	89-84-9	2914.50
306	피부컨디셔닝제	에틸라우로일알지네이트	48076-74-0	2925.29
307	피부컨디셔닝제	하이드록시페닐아미노피리딘 메톡시벤젠설폰아마이드	141430-65-1	2935.90
308	피부컨디셔닝제	프렌치로즈꽃 추출물	84604-13-7	1302.19
309	계면활성제	미레스-3	26826-30-2	2909.49
310	계면활성제	미리스타민옥사이드	3332-27-2	2929.90
311	계면활성제	미리스탈코늄클로라이드	139-08-2	2923.90
312	계면활성제	미리스틱애씨드	544-63-8	2915.90 3823.19
313	계면활성제	미리스틸글루코사이드	54549-26-7	2940.00
314	계면활성제	세테스-2	9004-95-9	3402.42
315	계면활성제	세테스-3	9004-95-9	3402.42
316	계면활성제	세테스-4	5274-63-5 9004-95-9	3402.42
317	계면활성제	세테스-5	4478-97-1 9004-95-9	3402.42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318	계면활성제	세테스-6	5168-91-2 9004-95-9	3402.42
319	계면활성제	세테스-7	9004-95-9	3402.42
320	계면활성제	세테스-10	9004-95-9 14529-40-9	3402.42
321	계면활성제	세테스-15	9004-95-9	3402.42
322	계면활성제	세테스-16	9004-95-9	3402.42
323	계면활성제	세테스-20	9004-95-9	3402.42
324	계면활성제	세테스-23	9004-95-9	3402.42
325	계면활성제	세테스-24	9004-95-9	3402.42
326	계면활성제	세테스-25	9004-95-9	3402.42
327	계면활성제	세테스-30	9004-95-9	3402.42
328	계면활성제	세테스-40	9004-95-9	3402.42
329	계면활성제	세테아레스-2	68439-49-6	3824.99
330	계면활성제	세테아레스-3	68439-49-6	3824.99
331	계면활성제	세테아레스-4	68439-49-6	3824.99
332	계면활성제	세테아레스-5	68439-49-6	3824.99
333	계면활성제	세테아레스-6	68439-49-6	3824.99
334	계면활성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57-09-0	2923.90
335	계면활성제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112-02-7	2923.90
336	계면활성제	세틸알코올	36653-82-4	2905.17 3823.70
337	계면활성제	C12-15알케스-12	68131-39-5	3402.42
338	계면활성제	소듐구아이아졸렌설포네이트	6223-35-4	2904.10
339	계면활성제	C12-15알케스-5	68131-39-5	3402.42
340	계면활성제	C9-11알케스-8	68439-46-3	3402.42
341	계면활성제	라우라미노프로필렌글라이콜	821-91-0	2922.19
342	계면활성제	C12-15알케스-9	68131-39-5	3402.42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343	계면활성제	C9-11알케스-3	68439-46-3	3402.42
344	계면활성제	C9-11알케스-6	68439-46-3	3402.42
345	계면활성제	C12-15알케스-11	68131-39-5	3402.42
346	착향제	아라비안자스민꽃추출물	91770-14-8	1302.19
347	착향제	치스투스 몬스펠리엔시스추출물	93165-05-0	1302.19
348	착향제	미모사 테누이플로라나무껍질추출물	93685-96-2	1302.19
349	착향제	미모사 테누이플로라잎추출물	93685-96-2	1302.19
350	착향제	바질꽃/잎추출물	84775-71-3	1302.19
351	착향제	서양산딸기추출물	84787-69-9	1302.19
352	착향제	샤프란꽃추출물	84604-17-1	1302.19
353	착향제	석류나무추출물	84961-57-9	1302.19
354	착향제	율금뿌리추출물	84775-52-0	1302.19
355	착향제	호두나무열매껍질추출물	84012-43-1	1302.19
356	착향제	호프콘추출물	8060-28-4	1302.13
357	착향제	바닐라콩추출물	8024-06-4	3301.90
358	착향제	향기풀잎/줄기추출물	89957-44-8	1302.19
359	착향제	대왕소나무잔가지/잎추출물	97435-14-8	1302.19
360	착향제	흰전나무잎추출물	90028-76-5	1302.19
361	착향제	라다념잔가지추출물	89997-74-0	1302.19
362	착향제	만수국꽃추출물	91722-29-1	1302.19 3301.29
363	착향제	만수국아재비꽃추출물	91770-75-1	1302.19
364	착향제	매스틱타임허브추출물	84837-14-9	1302.19
365	착향제	센티드제라늄잎추출물	90082-51-2	1302.19 3301.29
366	착향제	카나다발삼잎추출물	85085-34-3	1302.19
367	착향제	리씨열매오일	68855-99-2	3301.29
368	착향제	구주소나무잎오일	8023-99-2	3301.2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369	착향제	콘민트오일	90063-97-1	3301.29
370	착향제	살비아오일	8022-56-8	3301.29
371	착향제	녹나무잎오일	92201-50-8	3301.29
372	착향제	들깨잎오일	90082-61-4	3301.29
373	착향제	클레리꽃오일	84775-83-7	3301.29
374	착향제	레몬밤꽃/잎/줄기오일	8014-71-9	3301.29
375	착향제	마조람꽃/잎/줄기오일	84082-58-6	3301.29
376	착향제	스페인오레가노허브오일	90131-59-2	3301.29
377	착향제	라반딘허브오일	91722-69-9	3301.29
378	착향제	스페니시세이지허브오일	90106-49-3	3301.29
379	착향제	비터오렌지오일 비터오렌지잎오일	72968-50-4	3301.12 3301.29
380	착향제	히솝꽃/잎/줄기오일	84603-66-7	1302.19 3301.29
381	착향제	펠라르고니움 로세움잎오일	90082-55-6	1302.19 3301.29
382	착향제	레몬그라스잎/줄기오일	8007-02-1	3301.29
383	착향제	아라비안자스민꽃오일	91770-14-8	1302.19 3301.90
384	착향제	니그라소나무잔가지/잎오일	90082-74-9	1302.19 3301.29
385	착향제	무고소나무잔가지오일	90082-72-7	1302.19 3301.29
386	착향제	분비나무잎오일	91697-89-1	3301.29
387	착향제	서양측백나무줄기오일	90131-58-1	1302.19 3301.29
388	착향제	유향나무 추출물	89957-98-2	1302.19
389	착향제	솔잣나무가지/잎오일	8013-86-3	3301.29
390	착향제	셀필룸오일	84776-98-7	1302.19, 3301.2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391	착향제	마편초잎 추출물/오일	84961-67-1	1302.19 3301.29
392	착향제	베이럼트리 추출물/오일	85085-61-6	1302.19 3301.29
393	착향제	구아바잎 추출물/오일	91770-12-6	1302.19 3301.29
394	착향제	타히티라임껍질오일	8008-26-2	1515.90
395	착향제	벤조인나무수지오일	84929-79-3	3301.29 3301.90
396	착향제	회향열매오일	84625-39-8	1302.19
397	착향제	다미아나꽃/잎/줄기오일	84696-52-6	1302.19
398	착향제	매스틱타임허브오일	84837-14-9	1302.19
399	착향제	대왕소나무잔가지/잎오일	8002-09-3	3805.90
400	착향제	리날룰	78-70-6	2905.22
401	착향제	리날릴아세테이트	115-95-7	2915.39
402	착향제	리모넨	138-86-3	2902.19
403	착향제	구아이아줄렌	489-84-9	2902.19
404	착향제	말레이익애씨드	110-16-7	2917.19
405	착향제	말릭애씨드	636-61-3 6915-15-7 97-67-6	2918.19
406	착향제	매스틱 추출물/정유	90082-82-9	1302.19 3301.29
407	착향제	메틸다이-t-부틸하이드록시하이드로신 나메이트	6386-38-5	2918.29
408	착향제	메틸다이아이소프로필프로피온 아마이드	51115-67-4	2924.19
409	착향제	메틸다이하이드로자스모네이트	24851-98-7	2918.30
410	착향제	메틸벤조에이트	93-58-3	2916.31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411	착향제	4-메틸벤즈알데하이드	104-87-0	2912.29
412	착향제	메틸살리실레이트	119-36-8	2918.23
413	착향제	메틸셀룰로오스	9004-67-5	3912.39
414	착향제	메틸아세테이트	79-20-9	2915.39
415	착향제	메틸안트라닐레이트	134-20-3	2922.49
416	착향제	메틸2-옥ти노에이트	111-12-6	2916.19
417	착향제	메틸유제놀	93-15-2	2909.30
418	착향제	메틸파라벤	99-76-3	2918.29
419	착향제	메틸페닐부탄올	103-05-9	2906.29
420	착향제	멘톨	1490-04-6 2216-51-5 89-78-1	2906.11
421	착향제	멘틸살리실레이트	89-46-3	2918.23
422	착향제	벤조익애씨드	65-85-0	2916.31
423	착향제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2916.31
424	착향제	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	2918.23
425	착향제	벤질신나메이트	103-41-3	2916.39
426	착향제	벤질알코올	100-51-6	2906.21
427	착향제	복사나무꽃 추출물	84012-34-0	1302.19
428	착향제	부틸메타크릴레이트	97-88-1	2916.14
429	착향제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80-54-6	2912.29
430	착향제	글루코닉애씨드	526-95-4	2918.16
431	착향제	생강수	84696-15-1	1302.19 3301.90
432	착향제	글루코오스펜타아세테이트	3891-59-6 604-68-2	2940.00
433	착향제	석시닉애씨드	110-15-6	2917.19
434	착향제	살비아수	8022-56-8	3301.2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435	착향제	글루타티온	70-18-8	2930.90
436	착향제	연꽃꽃수	85085-51-4	1302.19 1515.90 3301.90
437	착향제	아이소프로필알코올	67-63-0	2905.12
438	착향제	테오브로민	83-67-0	2939.79
439	착향제	라우랄데하이드	112-54-9	2912.19
440	착향제	시스-자스몬	488-10-8	2914.29
441	착향제	노난알	124-19-6	2912.19
442	착향제	메틸-옥타하이드로-다이메틸아졸레닐에틸아세테이트	134-28-1	2915.39
443	착향제	5-메틸-알파-아이오논	79-69-6	2914.23
444	착향제	감마-데카락톤	706-14-9	2932.20
445	착향제	운데카날	112-44-7	2912.19
446	착향제	N-헵타데케인	629-78-7	2901.10
447	착향제	노네인	111-84-2	2901.10
448	착향제	γ -터피넨	99-85-4	2902.19
449	착향제	로즈케톤-4	23696-85-7	2914.29
450	착향제	아이소다이프렌	13466-78-9	2902.19
451	착향제	터피놀렌	586-62-9	2902.19
452	착향제	아이소아밀살리실레이트	87-20-7	2918.23
453	착향제	알릴헵타노에이트	142-19-8	2915.90
454	착향제	메틸신나메이트	103-26-4	2916.39
455	착향제	에틸2-메틸부티레이트	7452-79-1	2915.60
456	착향제	에틸아이소발레이트	108-64-5	2915.6
457	착향제	에틸부티레이트	105-54-4	2915.60
458	착향제	옥탄알	124-13-0	2912.19
459	착향제	로디놀	6812-78-8	2905.22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460	착향제	메틸바닐레이트	3943-74-6	2918.99
461	착향제	알파-아이오논	127-41-3	2914.23
462	착향제	유향나무검수	89957-98-2	1302.19
463	착향제	에틸살리실레이트	118-61-6	2918.23
464	염모제	2-메틸레조시놀	608-25-3	2907.29
465	염모제	4-하이드록시프로필아미노-3-나이트로페놀	92952-81-3	2922.50
466	염모제	염기성황색57호	68391-31-1	3204.13
467	염모제	염기성적색76호	68391-30-0	3204.13
468	염모제	염기성갈색16호	26381-41-9	3204.13
469	염모제	염기성청색99호	68123-13-7	3204.13
470	염모제	염기성자색2호	3248-91-7	3204.13
471	염모제	1-나프톨	90-15-3	2907.15
472	염모제	산성적색52호	3520-42-1	3204.12
473	염모제	황산톨루엔-2,5-디아민	615-50-9 6369-59-1	2921.51
474	염모제	염산2,4-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66422-95-5	2922.29
475	염모제	m-아미노페놀	591-27-5	2922.29
476	염모제	p-메칠아미노페놀	150-75-4	2922.29
477	염모제	1,5-디하이드록시나프탈렌	83-56-7	2907.29
478	염모제	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99-56-9	2921.51
479	염모제	2-메칠-5-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55302-96-0	2922.50
480	염모제	2-아미노-4-니트로페놀	99-57-0	2922.29
481	염모제	염산p-페닐렌디아민	624-18-0	2921.51
482	염모제	p-페닐렌디아민	106-50-3	2921.51
483	염모제	N-페닐-p-페닐렌디아민	68239-82-7	2921.51
484	염모제	황산p-니트로-o-페닐렌디아민	68239-82-7	2921.51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485	염모제	황산p-페닐렌디아민	16245-77-5 50994-40-6	2921.51
486	염모제	N,N-비스(2-히드록시에틸)-p-페닐렌디아민설페이트	54381-16-7 57524-61-5	2922.19
487	염모제	2,6-디아미노피리딘	831-52-7	2922.29
488	염모제	피크라민산나트륨	141-86-6	2933.39
489	염모제	황산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61702-44-1 6219-71-2	2921.51
490	염모제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	16867-03-1	2933.39
491	염모제	2-아미노-4-하이드록시에틸아미노아니솔설페이트	83763-48-8	2922.50
492	염모제	4-아미노-m-크레솔	2835-99-6	2922.29
493	염모제	N-페닐-p-페닐렌다이아민 에이치씨엘	56426-15-4	2921.51
494	염모제	염산2,4-디아미노페놀	137-09-7	2922.29
495	염모제	헤마테인	475-25-2	3203.00
496	염모제	p-메칠아미노페놀설페이트	55-55-0	2922.29
497	피막형성제	메틸메타크릴레이트/글라이콜다이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25777-71-3	3906.90
498	피막형성제	메틸메타크릴레이트크로스폴리머	25777-71-3	3906.90
499	피막형성제	발삼톨루수지	9000-64-0	1302.19 1301.90 3301.29
500	피막형성제	갈락토아라비난	9036-66-2	3913.90
501	피막형성제	브이에이/크로토네이트코폴리머	25609-89-6	3905.19
502	피막형성제	브이피/브이에이코폴리머	25086-89-9	3905.29 3905.91
503	피막형성제	브이피/헥사데센코폴리머	63231-81-2	3905.99
504	피막형성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25038-59-9	3907.61 3907.6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505	피막형성제	트라이메틸올프로판트라이아크릴레이트	15625-89-5	2916.12
506	피막형성제	다이에틸렌글라이콜다이메타크릴레이트	2358-84-1	2916.14
507	피막형성제	다이머로진	65997-05-9	3806.90
508	피막형성제	퍼플루오로프로필렌/비닐리덴다이플루오라이드코폴리머	9011-17-0	3904.69
509	피막형성제	다이메틸아크릴아마이드	2680-03-7	2924.19
510	향료	목서꽃추출물	92347-21-2	1302.19
511	향료	벤조인나무수지추출물	84929-79-3	3301.29 3301.90
512	향료	붉은토끼풀꽃추출물	85085-25-2	1302.19
513	향료	블랙체리나무껍질추출물	8000-44-0 84604-07-9	1302.19
514	향료	울금뿌리줄기오일	8024-37-1	3301.29
515	향료	리날루리페라녹나무목부오일	91745-89-0	1302.19 3301.29
516	향료	더치라벤더꽃/잎/줄기오일	92623-76-2	3301.29
517	향료	멘틸락테이트	59259-38-0	2918.11
518	향료	바닐린	121-33-5	2912.41
519	향료	벤즈알데하이드	100-52-7	2912.21
520	향료	메틸 페닐아세테이트 벤질아세테이트	101-41-7 140-11-4	2916.39 2915.39
521	향료	보르네올	507-70-0	2906.19
522	향료	편백수	91745-97-0	1302.19 3301.90
523	향료	아세틸세드렌	32388-55-9	2914.29
524	향료	아이소유제닐아세테이트	93-29-8	2915.39
525	향료	다이메틸페네틸아세테이트	151-05-3	2915.39
526	향료	로즈케톤-5	33673-71-1	2914.29
527	향료	시스-로즈케톤-2	23726-92-3	2914.2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528	향료	트랜스-로즈케톤-1	24720-09-0	2914.29
529	향료	트랜스-로즈케톤-2	23726-91-2	2914.29
530	향료	트랜스-로즈케톤-3	71048-82-3	2914.29
531	향료	트라이메틸사이클로펜테닐메틸아이소펜텐올	67801-20-1	2906.19
532	향료	산탈올	77-42-9 11031-45-1 115-71-9	2906.19
533	헤어컨디셔닝제	폴리쿼터늄-116	2303918-54-7	3906.90
534	헤어컨디셔닝제	메틸타이로시네이트에이치씨엘	3417-91-2	2922.50
535	헤어컨디셔닝제	메톡시피이지/피피지-7/3아미노프로필다이메티콘	298211-68-4	3910.00
536	헤어컨디셔닝제	비스-아미노프로필다이메티콘	106214-84-0	3910.00
537	헤어컨디셔닝제	비스-페닐프로필다이메티콘	203265-11-6	3910.00
538	헤어컨디셔닝제	비스-하이드록시/메톡시아모다이메티콘	831241-93-1	3910.00
539	헤어컨디셔닝제	글루코사민	3416-24-8	2932.99
540	헤어컨디셔닝제	세테아디모늄클로라이드	92129-33-4	3402.41
541	헤어컨디셔닝제	설퍼콜로이드	7704-34-9	2802.00
542	헤어컨디셔닝제	레드맹그로브추출물	90106-19-7	1302.19
543	헤어컨디셔닝제	라우릴아민다이프로필렌다이아민	2372-82-9	2921.29
544	헤어컨디셔닝제	칼슘L-트레오네이트	70753-61-6	2918.19
545	헤어컨디셔닝제	시엽감송뿌리오일	90064-28-1	1302.19
546	헤어컨디셔닝제	페오니딘클로라이드	134-01-0	2932.99
547	피부보호제	분꽃추출물	91722-88-2	1302.19
548	피부보호제	서던우드추출물	89957-58-4	1302.19
549	피부보호제	보검선인장잎세포추출물	90082-21-6	1302.19
550	피부보호제	호프줄기추출물	8060-28-4	1302.13
551	피부보호제	삼줄기추출물	89958-21-4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552	피부보호제	울금캘러스추출물	84775-52-0	1302.19 3301.90
553	피부보호제	분꽃캘러스추출물	91722-88-2	1302.19
554	피부보호제	백금가루(플라티늄)		7110.11
555	피부보호제	다이아몬드 더스트와 가루	7782-40-3	7105.10
556	피부보호제	피페로닐릭애씨드	94-53-1	2932.99
557	피부보호제	토마티딘	6192-62-7 77-59-8	2939.79
558	피부유연화제	보리지추출물	84012-16-8	1302.19
559	피부유연화제	브로콜리싹추출물	223749-36-8	1302.19
560	피부유연화제	보리지씨오일	225234-12-8	1515.90
561	피부유연화제	브라질넛씨오일	356065-50-4	1515.90
562	피부유연화제	브로콜리씨오일	223749-36-8	1515.90
563	피부유연화제	미レス-3미리스테이트	59686-68-9	2915.90
564	피부유연화제	미리스틸네오펜타노에이트	144610-93-5	2915.60
565	피부유연화제	미리스틸락테이트	1323-03-1	2918.11
566	피부유연화제	미리스틸알코올	112-72-1	2905.19
567	피부유연화제	미리스틸프로피오네이트	6221-95-0	2915.50
568	피부유연화제	벤질라우레이트	140-25-0	2915.90
569	피부유연화제	부틸스테아레이트	123-95-5	2915.70
570	피부유연화제	세틸아세테이트	629-70-9	2915.39
571	피부유연화제	세틸카프릴레이트	29710-31-4	2915.90
572	피부유연화제	펜타에리스리틸로지네이트	8050-26-8	3806.30
573	보습제	밀겨추출물	84012-44-2	1302.19 3504.00
574	보습제	밀배아추출물	84012-44-2	1302.19 3504.00
575	보습제	바오밥나무펄프추출물	91745-12-9	1302.19 1515.9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576	보습제	귀리커넬추출물	84012-26-0	1302.19 3504.00
577	보습제	중국그라운드오키드구근추출물	223748-10-5	1302.19
578	보습제	단향목부추출물	84787-70-2	1302.19
579	보습제	알로에베라잎추출물	85507-69-3 94349-62-9	1302.19 1515.90
580	보습제	도꼬마리열매/잎/줄기추출물	90028-66-3	1302.19
581	항산화, 보습, 진정	무화과나무잎추출물	90028-74-3	1302.19 3301.90
582	보습제	베티버뿌리오일	8016-96-4	3301.29
583	보습제	밀글루텐	8002-80-0	1109.00
584	보습제	밀효소 분말	65072-01-7	3507.90
585	보습제	귀리변성전분	9005-25-8	3505.10
586	보습제	발린	516-06-3 640-68-6 72-18-4	2922.49
587	보습제	베이베리열매왁스	8038-77-5	1515.90
588	보습제	베타인	107-43-7	2923.90
589	보습제	글라이신	56-40-6	2922.49
590	보습제	베헤닉애씨드	112-85-6	2915.90
591	보습제	글라이콜	107-21-1	2905.31
592	보습제	덱스판테놀	81-13-0	2936.24
593	보습제	사쿠라네틴	2957-21-3	2932.99
594	피부보습제	말토스	69-79-4	1702.90
595	피부보습제	말티톨	585-88-6	2940.00
596	산화방지제	서양산사자줄기추출물	8057-51-0	1302.19
597	산화방지제	인삼꽃추출물	72480-62-7 1449115-64-3	1302.19
598	산화방지제	보리싹추출물	85251-64-5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599	산화방지제	인삼잎/뿌리/줄기추출물	72480-62-7 1449115-64-3	1302.19
600	산화방지제	실론시나몬나무껍질추출물	84649-98-9	1302.19 3301.29
601	산화방지제	망가니즈다이옥사이드	1313-13-9	2530.90 2602.00 2820.10
602	산화방지제	멜라토닌	73-31-4	2937.90
603	산화방지제	미리세틴	529-44-2	2932.99
604	산화방지제	벤조구아나민	91-76-9	2933.69
605	산화방지제	4-부틸레조시놀	18979-61-8	2907.29
606	산화방지제	비에이치에이	25013-16-5	2909.50
607	산화방지제	비에이치티	128-37-0	2907.19
608	산화방지제	다마스크장미꽃수	90106-38-0	1302.19 3301.90
609	산화방지제	소듐포스피네이트	10039-56-2 7681-53-0	2835.10
610	산화방지제	제아잔틴	144-68-3	3203.00
611	산화방지제	트라이플루오로메틸 페네틸메슬라진	927685-43-6	2922.50
612	용제	메틸퍼플루오로부틸에터	163702-07-6	2909.19
613	용제	메틸퍼플루오로아이소부틸에터	163702-08-7	2909.19
614	용제	메틸프로판다이올	2163-42-0	2905.39
615	용제	메틸피롤리돈	872-50-4	2933.79
616	용제	부틸아세테이트	123-86-4	2915.33
617	용제	부틸알코올	71-36-3	2905.13
618	용제	t-부틸알코올	75-65-0	2905.14
619	용제	피이지-2페닐에터	104-68-7	2909.49
620	용제	1,4-부탄다이올	110-63-4	2905.3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621	용제	클로로트라이플루오로프로펜	102687-65-0	2903.79
622	용제	자일릴페닐에탄	6196-95-8	2902.90
623	용제	폴리(1,2-부탄다이올)-6프로필렌글라이콜	31923-86-1	3907.99
624	용해제	서틸레인	9001-92-7 12211-28-8	3507.90
625	유화안정제	세테아릴알코올	67762-27-0	3823.70
626	유화안정제	세라알바	8012-89-3	1521.90
627	유화제, 피부 연화	폴리글리세릴-10헵타노에이트		3402.42
628	자외선 차단제	메톡시페닐에테닐t-부틸 벤조에이트	910910-36-0	2918.99
629	자외선차단제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 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3597-45-1	2933.99
630	자외선차단제	4-메칠벤질리덴캠퍼	36861-47-9	2914.39
631	점도감소제	변성 에틸알코올	64-17-5	2207.20
632	점도감소제	부틸렌글라이콜	107-88-0 6290-03-5	2905.39
633	점도조절제	비닐다이메티콘	67762-94-1	3910.00
634	점도증가제	구아검	9000-30-0	1302.32
635	점도증가제	마그네슘클로라이드	7786-30-3 7791-18-6	2827.31
636	점도증가제	메틸스타이렌/비닐톨루엔 코폴리머	9017-27-0	3911.90
637	점도증가제	멜리식애씨드	506-50-3	2915.90
638	점도증가제	몬탄왁스	8002-53-7	2712.90
639	점도증가제	귀리커넬 단백질 추출물	134134-86-4	3504.00
640	점도증가제	부틸렌/에틸렌/스타이렌 고무	66070-58-4	4002.99
641	점도증가제	디우탄검	125005-87-0	3913.90
642	점증제	밀전분	9005-25-8	1108.11
643	정전기방지제	베헨알코늄클로라이드	16841-14-8	2923.9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644	정전기방지제	베헨트라이모늄메토설페이트	81646-13-1	2923.90
645	정전기방지제	베헨트라이모늄클로라이드	17301-53-0	2923.90
646	정전기방지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68424-85-1 8001-54-5	3402.41
647	제형 안정화	퍼플루오로트라이부틸아민	311-89-7	2921.19
648	중합체 원료, 안정화제	다이메틸이타코네이트	617-52-7	2917.19
649	중합체 원료, 안정화제	다이에틸이타코네이트	2409-52-1	2917.19
650	증량제	마그네슘설페이트	10034-99-8 7487-88-9	2833.21
651	증량제	마그네슘스테아레이트	557-04-0	2915.70(pure) 3824.99(crud e)
652	증량제	마그네슘실리케이트	1343-88-0	2839.90
653	증량제	마그네슘카보네이트	546-93-0	2836.99 3206.49
654	증량제	마그네슘카보네이트 하이드록사이드	7760-50-1 39409-82-0	2836.99
655	증량제	마그네슘트라이실리케이트	14987-04-3	2839.90
656	증량제	벤토나이트	1302-78-9	2508.10
657	진정제	베르가모트오일	8007-75-8	3301.19
658	진정제	베타-글루칸	53238-80-5	3913.90
659	착색제	마이카	12001-26-2	2525.20 3206.19
660	착색제	망가니즈바이올렛	10101-66-3	2842.90 3206.49
661	착색제	비스머스옥시클로라이드	7787-59-9	2827.49
662	착색제	비트루트레드	7659-95-2 89957-89-1	3203.00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663	착색제	아나토	1393-63-1 542-40-5 6983-79-5	3203.00
664	착색제	녹색3호	2353-45-9	3204.12
665	착색제	적색40호	25956-17-6	3204.12
666	착색제	청색2호	860-22-0	3204.12
667	착색제	카본	7440-44-0	3802.10
668	착색제	캡산틴/캡소루빈	465-42-9	3203.00
669	착색제	티타늄디옥사이드	13463-67-7	2823.00 3206.11 3206.19
670	착색제	카본블랙	1333-86-4	2803.00
671	착색제	코치닐	1343-78-8	3203.00
672	착색제	등색401호	6371-96-6	3204.17
673	착색제	클로로필	11006-34-1 8049-84-1	3203.00
674	착색제	피그먼트자색23호	6358-30-1	3204.17
675	착색제	피그먼트녹색7호	1328-53-6	3204.17
676	피부보호	카우슬립추출물	84787-68-8	1302.19
677	향균	에틸라우로일알지네이트아세틸페녹사이드	2851430-82-3	2923.90
678	향균, 진정	편백잎수	91745-97-0	1302.19, 3301.29, 3301.90
679	향균, 피지조절	매스틱잎추출물	90082-82-9	1302.19, 3301.29
680	향산화	빌리루빈	635-65-4	2933.79
681	향산화, 비타민C 공급	카카두플럼씨추출물	1542150-12-8	1302.19
682	향산화, 진정	블랙손꽃추출물	90105-94-5	1302.19, 3301.9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683	향산화, 진정	블랙손열매추출물	90105-94-5	1302.19, 3301.90
684	향산화, 진정	콘나루스세미데칸드루스잎추출물	84837-04-7	1302.19
685	향산화, 항노화	에피카테킨	490-46-0	2932.99
686	향산화제	밀추출물	84012-44-2	1302.19 3504.00
687	향산화제	굴껍질추출물	98106-71-9	1302.19
688	향산화제	백산자추출물	90063-39-1	1302.19 3301.29
689	향산화제	버독뿌리추출물	84649-87-6	1302.19 3301.90
690	향산화제	베르가모트추출물	89957-91-5	1302.19 3301.90
691	향산화제	베르게닌	477-90-7	2932.20
692	향산화제	베타-카로틴	7235-40-7	3204.18
693	향산화제	신코닌	118-10-5	2939.20
694	향염제	베이잎오일	8006-78-8	3301.29
695	향염제	베타-카리오플렌	87-44-5	2902.19
696	향균제	만델릭애씨드	17199-29-0 90-64-2	2918.19 2918.19
697	현탁화제	유리 프리트, 유리 플레이크	65997-17-3	3207.40
698	흡수제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이트	12199-37-0	2508.40 3802.90
699	흡수제	마그네슘옥사이드	1309-48-4	2519.90
700	흡수제	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	1309-42-8	2816.10
701	흡수제	마이크로크리스탈린셀룰로오스	9004-34-6	3912.90
702	흡수제	사이클로덱스트린	10016-20-3 17465-86-0	2940.00
703	흡수제	탈크	14807-96-6	2526.10 (not crushed) 2526.20 (crushed)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704	가소제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68515-48-0 28553-12-0	3812.20 2917.33
705	각질제거제	규조토	68855-54-9	3802.90
706	각질제거제	호모시스테익애씨드	504-33-6	2922.49
707	감미제	복숭아추출물	84012-34-0	1302.19
708	감미제	사카린	81-07-2	2925.11
709	감미제	수크랄로오스	56038-13-2	2932.14
710	감미제, 항산화	루부소사이드	64849-39-4	2938.90
711	결합제	베헤닐알코올	661-19-8	2905.19
712	결합제	세레신 약스	8001-75-0	2712.90
713	결합제	라놀린알코올	8027-33-6	1505.00
714	결합제	메틸에틸셀룰로오스	9004-59-5	3912.39
715	결합제	비스-(메타크릴로일옥시에틸) 포스페이트	32435-46-4	2919.90
716	점증제	암모늄에이엠피에스	58374-69-9	2924.19
717	점증제	2-아크릴아미도-2-메틸프로판 설포닉애씨드	15214-89-8	2924.19
718	네일컨디셔닝제	비닐트리스(2-메톡시에톡시) 실레인	1067-53-4	2931.90
719	네일컨디셔닝제	알루미늄트리스-하이드록시 나이트로소아닐린	15305-07-4	2929.20
720	모발고정제	브이피/아크릴레이트/라우릴 메타크릴레이트코폴리머	83120-95-0	3906.90 3905.91
721	모발컨디셔닝제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 메톡시페닐트리아진	187393-00-6	2933.69
722	미끄럼개선제	보론나이트라이드	10043-11-5	2850.00
723	미백제	베어베리잎추출물	84776-10-3	1302.19
724	미백제	베이베리열매추출물	84929-34-0	1302.19
725	발열제	바닐릴부틸에터	82654-98-6	2909.5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726	벌킹제	징크클로라이드하이드록사이드	12167-79-2	2827.39
727	변색방지제	멘틸안트라닐레이트	134-09-8	2922.49
728	변색방지제	벤조페논-1	131-56-6	2914.50
729	변색방지제	벤조페논-2	131-55-5	2914.50
730	변색방지제	벤조페논-3	131-57-7	2914.50
731	변색방지제	벤조페논-4	4065-45-6	2914.79
732	변색방지제	벤조페논-8	131-53-3	2914.50
733	변색방지제	벤조페논-9	76656-36-5	2914.79
734	변색방지제	벤조페논-10	1641-17-4	2914.50
735	변색방지제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70356-09-1	2914.50
736	변색방지제	글라이콜살리실레이트	87-28-5	2918.23
737	보존제	마그네슘살리실레이트	18917-89-0	2918.21
738	보존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2682-20-4	2934.10
739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26172-55-4	2934.10
740	보존제	벤제토늄클로라이드	121-54-0	2923.90
741	보존제	부틸파라벤	94-26-8	2918.29
742	보존제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30007-47-7	2932.99
743	보존제	2-브로모-2-나이트로프로판 -1,3-디올	52-51-7	2905.59
744	보존제	엠이에이-살리실레이트	59866-70-5	2922.11
745	보존제	칼슘살리실레이트	824-35-1	2918.21
746	보존제	포타슘살리실레이트	578-36-9	2918.21
747	보존제	포타슘설파이트	10117-38-1	2832.20
748	분사제	부탄(crude) 부탄(pure)	106-97-8	2711.13 2901.10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749	불투명화제	구아닌	73-40-5	2933.59
750	불투명화제	바룸설페이트	7727-43-7	2511.10 2833.27 3206.49
751	불투명화제	세륨옥사이드	1306-38-3	2846.10
752	산화제	과붕산나트륨	11138-47-9 7632-04-4 10332-33-9 15120-21-5	2840.30
753	살균보존제	메텐아민	100-97-0	2933.69
754	살균보존제	미르트라이모늄브로마이드	1119-97-7	2923.90
755	살균보존제	o-사이멘-5-올	39660-61-2	2907.19
756	수렴제	브로콜리추출물	223749-36-8	1302.19
757	수렴제	비타민나무추출물	90106-68-6	1302.19
758	수렴제	서양인삼뿌리추출물	90045-38-8	1302.19
759	수렴제	달맞이꽃꽃추출물	90028-66-3	1302.19
760	수렴제	달맞이꽃꽃/잎/줄기추출물	90028-66-3	1302.19
761	수렴제	달맞이꽃추출물	90028-66-3	1302.19
762	수분증발차단제	망고씨오일	90063-86-8	1515.90
763	수분증발차단제	미리스틸미리스테이트	3234-85-3	2915.90
764	수분증발차단제	미리스틸스테아레이트	17661-50-6	2915.70
765	수분증발차단제	비터오렌지꽃추출물	72968-50-4	1302.19
766	스크럽제	망고추출물	90063-86-8	1302.19
767	스크럽제	몬모릴로나이트	1318-93-0	3824.99
768	스크럽제	부석	1332-09-8	2513.10
769	안정제	바틸알코올	544-62-7	2909.49
770	안티에이징	굴추출물	94465-79-9	1603.00
771	안티에이징	팔라듐(가루모양 아닌 것)	7440-05-03	7110.29
772	연마제	보리추출물	85251-64-5	1302.19

순서	대분류	표준명	CAS No	품목번호
773	연마제	글라스비드	308076-03-1	7018.10
774	연마제	살구추출물	68650-44-2	1302.19
775	연마제	석영	14808-60-7	2506.10
776	연마제	다이아몬드가루	7782-40-3	7105.10
777	연마제	폴리에틸렌	9002-88-4	3901.10 3901.20
778	연마제	칼슘	7440-70-2	2805.12
779	연마제	마그네슘(순도 99.8% 이상)	7439-95-4	8104.11
780	연마제	4-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코폴리머	125495-90-1	3913.90
781	완충화제	마그네슘아세테이트	16674-78-5 142-72-3	2915.29
782	점도조절제	세피올라이트	63800-37-3	2530.90

6

Chapter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
1. 오류사례 요약
 2. 오류사례 본문





품목분류 오류사례 요약

번호	HS분류	국문명	HSK 2025
1	천연원료	귀리분말	1102.90-9000
2	천연원료	이눌린	1108.20-0000
3	천연원료	에스테르화 전분	3505.10-5090
4	천연원료	병풀	1211.90-1999
5	천연원료	황금뿌리 추출물	1302.19-9039
6	유지	카놀라유	1514.19-1000
7	유지	시어버터	1515.90-9090
8	유지	헴프씨드 오일	1515.90-9090
9	유지	리에스테르화 오일	1516.20-2090
10	유지	귀리커넬 오일	1515.90-9090
11	유지	수소첨가 경화 카놀라유	1516.20-1030
12	천연원료	사탕수수당(설탕)	1701.99-0000
13	천연원료	효모 폴리펩타이드	2102.20-1000
14	무기화합물	합성마이카 파우더	2842.10-9000
15	유기화합물	이소프로필 팔미트산	2915.70-1000
16	유기화합물	세틸 포스페이트	2919.90-1090
17	유기화합물	레시틴	2923.20-1000
18	유기화합물	데카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	2931.90-9090
19	유기화합물	사포닌	2938.90-3000
20	유기화합물	마데카소사이드	2938.90-3000
21	유기착색제	레이크 안료	3205.00-9000
22	무기안료	이산화티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3206.19-0000
23	무기안료	유리가루	3207.40-0000
24	혼합용액	시클로펜타실록산 혼합 용액	3208.90-9030
25	향료	그레이푸르트 에센셜 오일	3301.19-0000

번호	HS분류	국문명	HSK 2025
26	향료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3302.90-0000
27	방향제	실내용 방향제	3307.49-0000
28	화장품	마스크 팩	3307.90-4000
29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	3402.39-0000
30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	3402.42-9000
31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3402.49-0000
32	계면활성제	조제 계면활성제	3402.90-1000
33	계면활성제	조제 청정제	3402.90-3000
34	유화제	인조왁스(1)	3404.90-1090
35	유화제	인조왁스(2)	3404.90-1090
36	유화제	조제왁스(1)	3404.90-2000
37	유화제	조제왁스(2)	3824.99-9090
38	중합체	스티렌 중합체	3903.90-9000
39	중합체	폴리에스테르 중합체	3907.99-9000
40	중합체	실리콘 중합체(1)	3910.00-9010
41	중합체	실리콘 중합체(2)	3910.00-9090
42	화학조제품	화장품 보존제	3808.99-9000
43	화학조제품	코코 글리세라이드	3824.99-9090
44	화학조제품	에틸 스테아르산	3824.99-9090
45	화학조제품	운모 조제품	3824.99-9090
46	화학조제품	폴리옥시알킬렌 알킬 에테르	3824.99-9090
47	화학조제품	가수분해 실크 에틸 에스테르	3824.99-9090
48	화학조제품	펜타글리칸 조제품	3824.99-9090
49	화학조제품	파이토엑트 릴리퍼	1518.00-9090
50	화학조제품	보타니칼 릴리프 오일	1518.00-9090



분류사례

귀리분말

6.1 귀리 분말 OAT FLOUR



HSK 2025	1102.90-9000	결정세율	W1 5%, W2 800.3%
당초결정	-	신고세율	-

1. 물품설명

- ❖ 귀리를 사전젤라틴화하여 분쇄한 황색계 고운가루(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 80% 이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수수·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와 동물 사료의 제조와 섬유나 제지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귀리는 전분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5% 이하인 경우 제11류에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중략)... 또한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귀리를 사전젤라틴화하여 분쇄한 황색계 고운가루로 제1102호의 분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1102호는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시 고세율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주의
- ❖ 제11류 주 제2호 규정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1)	전분 함유량(2)	회분함유량(3)	체를 통과하는 비율	
			315마이크론(4)	500마이크론(5)
밀과 호밀	45%	2.5%	80%	-
보리	45%	3%	80%	-
귀리	45%	5%	80%	-
옥수수와 수수	45%	2%	-	90%
쌀	45%	1.6%	80%	-
메밀	45%	4%	80%	-



위원회결정사례

이눌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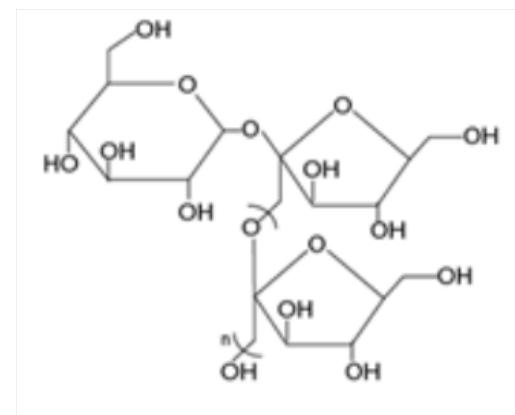
6.2 이눌린 Inulin-SC



HSK 2025	1108.20-0000	결정세율	기본 8% W1 8% W2 800.3%
경합세번	3907.2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설탕을 효소 합성하여 만든 백색 가루로 이눌린과 동일한 구조(과당이 $\beta 2 \rightarrow 1$ 결합으로 중합)를 가지고 있음
- ❖ 용도 : 화장품 첨가용(보습 또는 파우더 분산력 향상 등)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제1108.20-0000호에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를 기하면 청색 대신에 밝은 황갈색을 나타낸다. 이것은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s)·다리아 뿌리와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되며, 물에 오랫동안 끓여서 분해하게 되면 과당(laevulose)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이 이눌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 문헌상*에 ‘이눌린’은 “포도당을 말단으로 과당 분자가 $\beta(2\rightarrow1)$ 결합한 곧은 사슬모양의 과당중합체”로 중합도 범위를 DP 2~60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본건 물품은 여러 개의 과당 분자가 $\beta(2\rightarrow1)$ 결합한 과당의 중합체로서 중합도 3 이상의 다당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중합도는 DP 15이므로 이러한 범주에 부합됨

* 이눌린 참고문헌 : 영양학사전, 농업용어사전, 위키피디아, 생명과학대사전 등
- ❖ 또한, 식물에서 추출된 이눌린과 분자조성이나 화학구조도 유사하며, 상업적으로도 “Inulin-SC”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이눌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눌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8.20-000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 ❖ 자료조사(농업용어사전)

(C₆H₁₀O₅)_X, β -2,1-fructan, 분자량 약 5,200. 돼지감자, 다알리아 등의 뿌리와 줄기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저장 다당체의 하나로 주로 과당 32분자 전후가 중합된 다당. 이눌린은 동물체내에서 분해도 합성도 축적도 되지 않고, 더구나 무해하며 혈장단백질과 결합하지 않고, 신사구체에서 여과되고 사구체 여과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뇨세관에서의 재흡수 및 분비가 없으며, 신장 이외로부터의 배설도 없는 등 제성질을 나타내며, 게다가 정확한 정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의 clearance의 측정, 사구체 여과율의 측정에 이용됨.

- ❖ 제1108호는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시 고세율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주의



6.3

에스테르화 전분

Esterified starch



HSK 2025	3505.10-5090	결정세율	W1 8%, W2 385.7%
당초결정	-	신고세율	-

1. 물품설명

- ❖ 퀴노아 전분을 변성시킨 백색계 분말상의 에스테르화 전분(Sodium starch Octenylsuccinate)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가 분류되며, 제3505.10-50호에는 “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이 세분류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 : 열·화학물질(예: 산·알칼리) 또는 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텔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 (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중요한 그룹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텔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텔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 :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화장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에스테르화 전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5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505호는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시 고세율 품목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주의

6.4**병풀**

CENTELLA ASIATICA DRIED LEAVES



HSK 2025	1211.90-1999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1211.90-9090	신고세율	양허 6.6%

1. 물품설명

- ❖ 병풀(CENTELLA ASIATICA)을 건조한 것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병풀 추출물 제조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들은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원상의 것·절단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가루로한 것·비벼서 뭉갠 것·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식물(plants)과 수목(trees)·관목(bushes·shrubs)이나 그 밖의 식물의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한다)은 앞에서 설명한 목적에 직접 사용하거나 이를 목적에 적합한 추출물(extract)·알칼로이드(alkaloids)나 정유(essential oils)의 제조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병풀(Centella Asiatica)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1211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해당 여부
- ❖ 자료조사(세계 약용식물 백과사전)

- 병풀은 미나리과의 병풍속으로 한반도 남부의 섬이나 들에 흔히 나는 호랑이풀, 조개풀 등으로 불리며 화상이나 상처치유 및 보호로 피부질환에 널리 사용됨
 - 병풀에는 주로 트리테르페인노이드 사포닌, 트리테르펜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됨
 - 병풀의 잎과 줄기에 있는 마데카식산이란 성분이 염증을 낫게 하고, 종양과 궤양 등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연고나 치약, 화장품 등의 원료로도 많이 쓰임

6.5**황금 뿌리 추출물**

Skullcap extract powder



HSK 2025	1302.19-9039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1302.19-9099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꿀풀과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의 뿌리를 물로 추출하여 건조한 황색계 분말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흄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상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황금의 뿌리를 물로 추출하여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39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1211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에 해당 여부

- ❖ 자료조사(식품과학사전)

- 황금(Skullcap plant)
 -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Scutellaria baicalensis*). 높이는 20~60센티미터이며, 잎은 피침 모양이다. 뿌리는 식용하거나 약용한다. 산지에서 자란다.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 자료조사(몸에 좋은 산야초)

- 황금(Skullcap plant)
 - 성분 : 뿌리에 우고닌(Woogonin)과 바이칼린(Baicalin)을 함유
 - 약효 : 해열, 이뇨, 소염, 소종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설사로 인한 열을 다스려 주고 담낭을 보해준다.

6.6**카놀라유**

Rape oil



HSK 2025	1514.19-1000	결정세율	기본 5%
당초결정	1516.20-203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투명한 황색 오일상의 정제 카놀라유(에루크산의 함유량이 2% 미만)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4호에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514.1호에는 "저에루크산 유채유와 그 분획물"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 HS해설서 제15류 소호주 제2호에는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란 에루크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1507.10호 해설서에 "압착법에 의하여 채취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의 비휘발성 식물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유(粗油 : crude oil)'로 간주한다. 즉, 기울여 따르기 (decantation)·원심 분리법(centrifugation)이나 여과법(filtration)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과, 고체 상태의 입자에서 기름을 분리하기 위해서 흡착식 여과 처리법·분획화나 그 밖의 물리적이나 화학적 처리를 제외한 비중(gravity)·압력(pressure)이나 원심분리력(centrifugal force)과 같은 기계적인 힘만 가지고 처리한 것의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한 카놀라유로 에루크산 함유량이 2%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4.19-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수소첨가 여부 등 조제 여부 확인 필요



분류사례

시어버터

6.7 시어버터 Shea butter



HSK 2025	1515.90-9090	결정세율	기본 5%
당초결정	-	신고세율	-

1. 물품설명

- ❖ 시어나무(학명: Vitellaria paradoxa)의 열매핵을 압착하여 얻은 미황색 불투명한 반고상의 시어버터(Shea Butter)
- ❖ 용도 : 화장품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 HS 해설서 제15류 총설(B)에서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성 오일인 '시어버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오류사례

햄프씨드 오일

6.8

햄프씨드 오일

Hemp oil



HSK 2025	1515.90-9090	결정세율	기본 5%
당초결정	1515.90-9090	신고세율	기본 5%

1. 물품설명

- ❖ 대마의 주요 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을 함유한 녹색계 점조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대마(Cannabis sativa L)"에 해당하여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
- ❖ "칸나비놀(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 -Tetrahydrocannabinol), 칸나비디올(Cannabidiol)"은 대마의 주요 성분



2. 유의사항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대마의 주요 성분 함량 기준 고시

❖ 식품공전(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 (종전 규격) 11)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 -9-Tetrahydrocannabinol) 기준
 - 대마씨앗: 5mg/kg 이하
 - 대마씨유: 10mg/kg 이하
- (신설 규격) 고시 일부 개정 (2020.10.16.)
 - 삼(대마)씨앗: THC 5mg/kg 이하, CBD 10mg/kg 이하
 - 삼(대마)씨유: THC 10mg/kg 이하, CBD 20mg/kg 이하

※ 캔나비노이드(cannabinoid)는 대마초, 대마수지, 대마종자 등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THC, 캔나비디올, 캔나비놀, 캔나비크로멘, 캔나비게롤, 캔나비발린, 캔나비디발린 등이 있음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캔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오류사례

리에스테르화 오일

6.9

리에스테르화 오일

Re-esterified oil; MEDIUM CHAIN TRIGLYCERIDES



HSK 2025	1516.20-209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2915.90-9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팜핵유에서 얻은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의 무색 투명한 오일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 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16.20호에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이 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 “(B)-(2) 리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에스텔화한 지방과 기름이라고도 한다) : 이것은 유리(遊離) 지방산의 혼합물이나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를 가진 글리세롤(glycerol)에서 직접 합성하여 얻어진 트리글리세라이드(triglycerides)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내에서의 지방산 라디칼(fatty acid radicals)의 배열은 정상적으로 천연유(natural oil)에서 발견되는 배열과 상이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팜핵유에서 얻은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6.20-2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유지의 제조 공정에 따라 HS 결정
- ❖ 자료조사(화학대사전)

- Medium-Chain Triglyceride (MCT) : Lauric acid보다 짧은 지방산으로 구성된 유지류로 주로 탄소원자가 8~10개인 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고, 용점이 낮고, 가수분해율이 빠르고, 담즙산이 덜 필요하고, 물에 쉽게 퍼지며 간에 저장되는 경향이 있음. 식이치료에 유용함
 - 카프릴산 : 버터 지방, 팜유, 야자유 등 속에 글리세리드로서 비교적 다량 존재하고 어유, 해조유 등에서도 소량 함유되어 있다.
 - 카프르산 : 많은 유지에 글리세리드로서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느릅나무의 종자유는 총 지방산의 50%에 달한다. 그 외에 팜유, 야자유에 비교적 많다.



오류사례

귀리커넬오일

6.10

귀리커넬 오일

Oat kernel oil; AVENA SATIVA



HSK 2025	1515.90-9090	결정세율	기본 5%
당초결정	1302.90-909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Oat Kernel을 추출(초임계 추출 및 에탄올 추출)한 후 여과, 정제한 황색계 오일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그 밖의 비휘발성인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에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 단일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그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관세율표 제15류 총설에 "(B) 이 류의 제1507호부터 제1515호까지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 지방과 기름(즉, 성질이 다른 지방과 기름을 혼합하지 않은 것)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중략)...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이나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가공하지 않은 지방과 기름과 그들의 분획물을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귀리 알곡을 추출(초임계 추출 및 에탄올 추출)한 후 여과, 정제한 것으로 특정 유효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추출물이 아닌 오일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제1507호부터 제1514호까지 열거되지 않은 비휘발성 식물성 지방에 해당함
- ❖ 따라서, 본 물품은 Oat kernel oil의 황색계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5.90-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특정 성분의 추출 여부 확인

(추가의견) Oat kernel을 각각 CO₂ 초임계 추출하여 CO₂를 제거한 것(25%)과 에탄올 추출한 후 에탄올을 제거한 것(75%)을 혼합, 여과, 정제의 과정을 거친 물품으로 비록, 서로 다른 추출법(특정 유효성분을 얻기 위한 공정이라고 추측)을 통해 얻은 물품이지만 물에 용해되지 않는 것과 다양한 분석(지방산 조성, 지방 함량, 단백질 함량)을 통해 지질(Lipid)로 구성된 오일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외 유효성분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공정을 거치는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는 다른 물품에 해당



오류사례

경화 카놀라유

6.11

수소첨가 경화 카놀라유

Hydrogenated Rapeseed oil



HSK 2025	1516.20-1030	결정세율	기본 36%
당초결정	1516.20-2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카놀라유에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백색 분말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6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수소첨가는 지방과 기름을 촉매(보통 미세한 니켈) 존재 하에서 적당한 온도와 압력에서 순수한 수소와 접촉하여 행하여지는데 불포화 글리세라이드(glyceride)[예: 올레산(oleic acid) · 리놀레산(linoleic acid) 등]을 높은 용융점의 포화 글리세라이드[예: 팔미트산(palmitic acid) · 스테아린산(stearic acid) 등]로 변형시켜 줌으로써 순지방의 용점이 높아지게 하고 기름의 경도를 증가시켜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놀라유에 수소를 첨가하여 만든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6.20-103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유지의 제조 공정에 따라 HS 결정



오류사례

사탕수수당(설탕)

6.12

사탕수수당(설탕)

Other sugar; SUGAR CANE FOR COSMETICS



HSK 2025	1701.99-0000	결정세율	기본 30%
당초결정	1701.14-2000	신고세율	기본 3%

1. 물품설명

- ❖ 백색계 결정상의 설탕 (편광도수: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 $99.98^{\circ}Z$)
- ❖ 편광도수는 「ICUMSA Methode GS1/2/3/9-1」에 의거 시험한 결과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보습제 용도)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1호에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표 제17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 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이상인 물품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1.9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설탕 편광도수(당도) 시험결과에 따라 HS가 결정되며, 편광도수에 따라 세율차 발생 유의

- ❖ 제17류 소호주 제1호

1. 소호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에서 “조당(粗糖)”이란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 ❖ 제17류 소호주 제2호

2. 소호 제1701.13호는 원심분리법을 거치지 않고 얻어진 사탕수수당 중에서 건조 상태에서 중량 기준으로 자당(蔗糖)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69도 이상 93도 미만인 것만을 포함한다. 이 물품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비정형인 천연 타형(他形) 미세결정만을 함유하는데, 이러한 미세결정들은 당밀(糖蜜)과 그 밖의 사탕수수의 구성요소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 ❖ 제17류 국내주

1. 제1701호에서 당(糖)의 편광도수 시험방법은 국제설탕분석통일위원회(ICUMSA)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른다.



분류사례

효모

6.13

효모 폴리펩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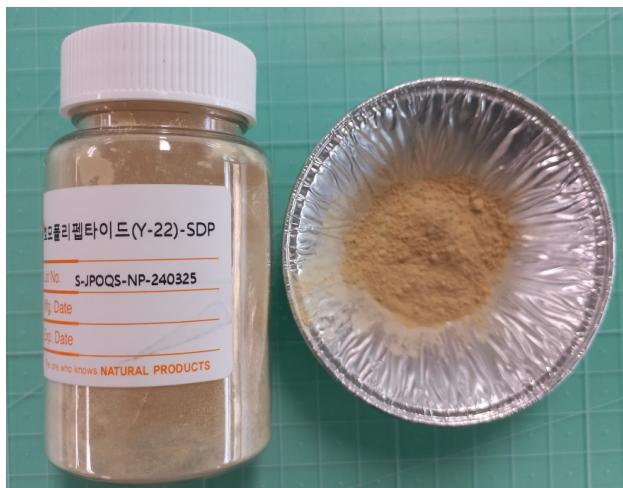
Inactive yeast, dried



HSK 2025	2102.20-100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효모(Saccharomyces 속)를 배양하여 멸균 및 농축 후 건조한 갈색계 분말
- ❖ 용도 : 화장품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이 분류되며, 제2102.20-1000호에는 "불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불활성 효모(inactive yeast) : 보통 양조나 종류공업 등에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활성을 가진 양조증류나 베이커리 효모를 건조하여 얹어진 것이다. 이들은 식용(비타민B의 원천)이나 동물사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조 효모는 특별히 조제한 활성효모에서 직접 생산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불활성 건조효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2.20-1000호에 분류함



오류사례

합성 마이카

6.14

합성 마이카 파우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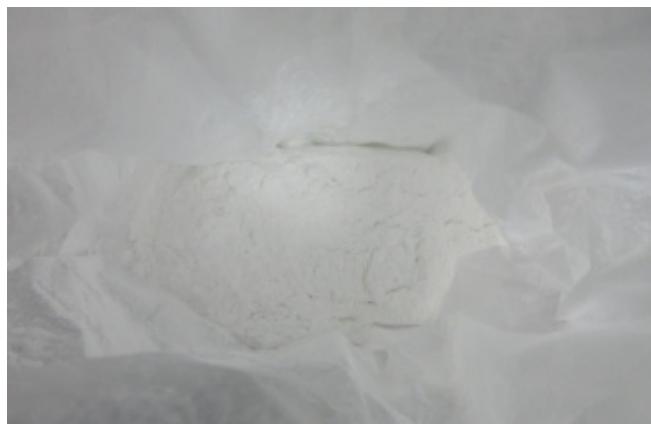
Synthetic mica powder



HSK 2025	2842.10-9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206.4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Synthetic mica(Synthetic Fluorphlogopite)의 백색 분말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착색 안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842호에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알루미노실리케이트(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하며, 아지드화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2842.10호에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L) 규산염의 겹염이나 칙염, 이 그룹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이 알루미노실리케이트(aluminosilicate)를 포함한다. 알루미노실리케이트는 유리공업과 절연체·이온 교환체·촉매·분자 여과기 등에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일반식 $M_2/nO \cdot Al_2O_3 \cdot ySiO_2 \cdot wH_2O$ [M은 n가(價)의 양이온(일반적으로 나트륨·칼륨·마그네슘이나 칼슘)을, y는 2 이상을, w는 물 분자 수를 의미한다]로 표시되는 합성 제오라이트(synthetic zeolit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제5호에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칙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Synthetic mica 단일 성분의 백색 분말로 기타 규산의 칙염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42.1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되지 않은 단일한 성분인지의 여부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성분명 :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 영문명 : Synthetic Fluorphlogopite
- CAS no. : 12003-38-2
- 분자식 : $Mg_3K[AlF_2O(SiO_3)_3]$
- 배합목적 : 벌킹제(증량제), 점도증가제(수성)

- ❖ 자료조사(ECICS; EU 화학물질 목록)

- IUPAC Name: magnesiumpotassiumdifluoridotris[metasilicato(2-)-κO](oxido)aluminate(7-) (3/1/1)
- fluorphlogopite
- CAS no : 12003-38-3
- CN code : 2842.1000



오류사례

이소프로필 팔미트산

6.15

이소프로필 팔미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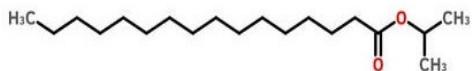
Isopropyl palmitate



HSK 2025	2915.70-1000	결정세율	양허 5.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Isopropyl alcohol과 Palmitic acid를 에스테르화하여 제조한 Isopropyl palmitate의 무색 투명한 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 IUPAC name : Propan-2-yl hexadecanoate
- Other names : Hexadecanoic acid isopropyl ester
- CAS No.: 142-91-6
- Molecular formula C19H38O2
- Molar mass 298.511g/mol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환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들의 무수물(...)"가 분류되며, 제2915.70 소호에는 "팔미트산·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Isopropyl palmitat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70-100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Isopropyl palmitate
 - CAS 142-91-6
 - 이 원료는 이소프로필알코올과 팔미틱애씨드의 에스터이다.
 - 배합목적 : 결합제, 칙향제,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6.16

세틸 포스페이트

Cetyl phosphate



HSK 2025	2919.90-1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Cetyl Phosphate의 백색계 플레이크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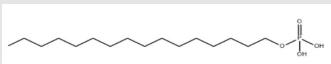
- ❖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 분류되며, 제2919.90-1090호에 “기타의 인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총설 (A)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이 비(非)금속(non-metals)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다만, 비(非)금속(non-metals) 무기폴리염기산(황산·인산·규산 등)의 에스테르(esters)에서만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세틸알코올과 무기산인 인산을 축합하여 만든 인산에스테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9.90-109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Cetyl Phosphate(CAS 3539-43-3)
 - 이 원료는 포스포릭애씨드(phosphoric acid) 및 세틸알코올(Cetyl alcohol)의 에스터 복합혼합물이다.
 - 배합목적 : 계면활성제-유화제

- 구조식 :





분류사례

레시틴

6.17

레시틴

Lecithins



HSK 2025	2923.20-1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	신고세율	-

1. 물품설명

- ❖ 레시틴에 미량의 산화방지제가 혼합된 황색계 반고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유화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23호에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2)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phosphoaminolipid) : 이들은 글리세린인산이 올레산·팔미트산과 그 밖의 지방산과의 복합물과 콜린과 같은 유기질소염기로부터 얻어진 에스테르(ester)(인지질 : phosphatide)이다. 일반적으로 황갈색 왁스질의 괴상으로서 에탄올에 가용성이다. 레시틴(lecithin)은 알의 노른자위(오보레시틴)과 동물과 식물조직에 함유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에 포함되는 상거래 관습상의 레시틴(lecithin)은 대두 레시틴이 많으며 이는 아세톤에 녹지 않는 인지질(일반적으로 전 중량의 60%에서 70%까지)·대두유·지방산과 탄소화물의 혼합 구성물이다. 상거래 관습상의 대두 레시틴은 밝은 갈색이며 다소간 점성질이고, 만약 대두유를 아세톤으로 추출하면 황색의 알갱이 모양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총설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제2923호의 레시틴과 기타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예시하고 있고,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레시틴에 물품의 보존을 위해 미량의 산화방지제가 혼합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3.20-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29류에 보존이나 수송을 안정제(고결방지제) 등 첨가물인지 확인 필요

- ❖ 자료조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시틴(위키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산, 콜린, 지방산, 글리세롤, 당지질,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인지질로 구성된 동식물 조직에서 발생하는 흉갈빛 지방 물질군을 두루 가리키는 용어이다. - 레시틴은 1846년 프랑스의 화학자 시어도어 고블 리가 분리해냈다. 1850년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 choline)을 레시틴으로 명명했다. - 레시틴은 화학적(헥세인, 에탄올, 아세톤, 벤질 등)으로나 기계적으로 쉽게 분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콩, 달걀, 젖, 해산물, 유채, 목화씨, 해바라기와 같은 곳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수용성이 낮은 편이나 뛰어난 유화제이다. • 레시틴(두산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리세린 인산을 포함하고 있는 인지질의 하나이다. 알코올, 에테르에 용해되며 물과는 에멀션을 만든다. 가수분해하여 콜린, 인산, 글리세롤, 지방산을 생성한다. 지방산은 주로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올레산, 리놀레산 등이다. |
|--|



6.18

데카메틸시클로펜타실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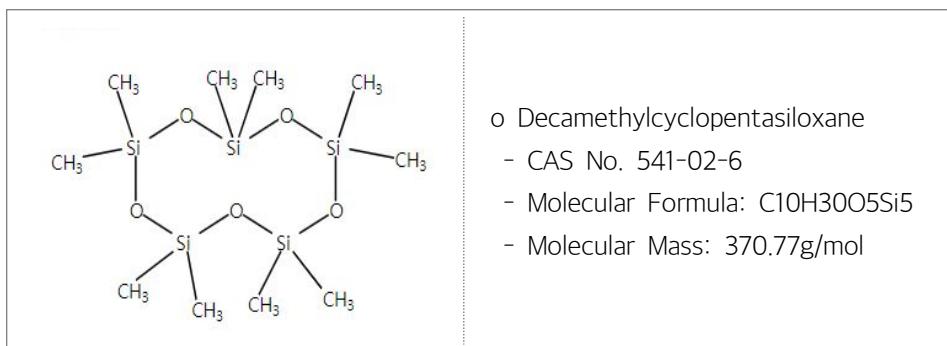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HSK 2025	2931.90-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910.00-9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Decamethylcyclopentasiloxane의 무색투명 액상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유기-규소화합물 : 이들은 규소원자가 라디칼(radical)의 최소 한 개의 탄소 원자에 직접적으로 결합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은 유기 실란(silanes)과 실록산(siloxanes)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 물품은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 중합된다.

- ❖ 실란(silanes)은 클로로실란(예: 디메텔디클로로실란)·알코옥시실란(예: 메틸트리메톡시실란)·알킬이나 아릴 실란(예: 디페닐실렌디올, 테트라메틸실란) 그리고 다른 다(多)기(아미노·니트릴·옥시라닐·옥시모·아세톡시 등)실란을 포함한다. 실록산(siloxanes)은 헥사메틸디실록산·옥타메틸트리실록산·옥타메틸시클로테트라실록산·데카메틸시클로트리실록산과 도데카메틸시클로헥사실록산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헥사메틸디실라제인과 유기-디실란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Decamethylcyclopentasiloxane으로 규소 원자가 탄소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형태의 것이므로 그 밖의 유기-무기 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1.90-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단일한 성분인지, 합성중합체(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인지 해당여부 검토
- ❖ 제39류 주 제3호 규정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가.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종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울레핀(제3901호 · 제3902호)

나. 고중합체가 아닌 쿠마론-인덴계 수지(제3911호)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마.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



오류사례

사포닌

6.19

사포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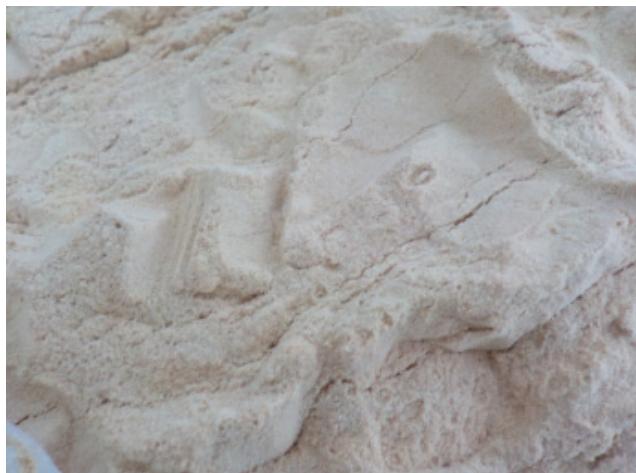
Saponins



HSK 2025	2938.90-3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402.19-0000 (現 3402.49-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카멜리아(Camellia)씨의 사포닌 성분을 알코올로 추출하여 건조한 연한 갈색분말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38.90-3000호에는 “사포닌”이 세분류되고 있음

- ❖ 같은 표 제29류 주1호 다목에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이 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제2938호 해설서에는 “사포닌(saponins) : 식물계에 매우 풍부한 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s)이며 ;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수용액은 흔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의약·세척제 제조·거품 소화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카멜리아 씨에서 추출한 사포닌 성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3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되지 않은 단일한 성분인지 여부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Most tea saponins are extracted from the *Camellia oleifera* seed meal.
- Tea saponin is triterpenoid saponin substance abstracted from wild camellia fruit.
- 동백나무속(*Camellia*)식물 차나무과(茶一科 Theaceae)에 속하는 약 80종의 상록관목과 교목으로 이루 어진 속.
 - 사포닌(CTFA 등재): 다양한 식물 종류에서 천연으로 얻을 수 있는 수용성 고분자 glycosidal 물질



오류사례

마데카소사이드

6.20

마데카소사이드

Madecassoside



HSK 2025	2938.90-3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1302.19-9099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병풀(Centella asiatica)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하여 정제를 거친 후 농축, 건조하여 얻은 백색 분말상의 Madecassoside(CAS No. 34540-22-2)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8호에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8.90-3000호에 “사포닌”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글리코시드(glycoside)는 주로 식물계에 존재한다. 보통은 산·염기나 효소의 작용으로 당(糖) 부분과 비당(非糖) 부분(아글리콘)으로 분해된다. 이들 부분은 당의 아노메 탄소

원자(anomeric carbon atom)를 통하여 서로 결합하고 있다. …(중략)… (5) 사포닌(saponin) : 식물계에 매우 풍부한 무정형(無定形) 글리코시드(glycoside)이며 ; 재채기를 유발하는 성질이 있다. 이 수용액은 흔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의약·세척제·제조·거품 소화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HS해설서 제29류 총설에서 “(C)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하는 물품 : 제29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에 정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다. 이들 예외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제2938호 - 글리코시드(glycoside)와 그 유도체”를 예시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1302호의 해설서에서 “추출물은 최초의 용매 추출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의 화합물이나 화합물 군(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이나 정제공정(예: 크로마토그래피 정제)을 거치지 않는다. …(중략)… 이들 물품이 예를 들어,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한외여과(限外濾過 : ultrafiltration), 또는 최초 추출 후의 추가적인 추출 사이클(예: 액체-액체 추출)을 통해 고도로 정제(refined or purified)된 경우에도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건 물품은 병풀을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한 후 추가적인 정제를 통해 트리테르페노이드 사포닌인 Madecassoside의 함량을 증가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8.90-3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되지 않은 단일한 성분인지의 여부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Madecassoside
 - CAS No.: 34540-22-2
 - Synonyms: Asiaticoside A
 - Molecular Formula: C₄₈H₇₈O₂₀
 - Molecular Weight: 975.12
 - Solubility: H₂O, Organic solvent(ethanol, DMSO, dimethyl formamide)
 - Madecassoside is a triterpenoid saponin found in the tropical Asian plant



오류사례

화장품 색조용

6.21

레이크 안료
Lake preparations

HSK 2025	3205.00-9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206.4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합성 유기착색제를 알루미늄염에 고정시킨 레이크 안료에 Sodium sulf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 분말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색조 화장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5호에는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레이크 안료(colour lakes)는 (동물성·식물성) 천연착색제·합성 유기착색제(물에 녹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일반적으로 광물성 기본 재료(황산바륨·황산칼슘·산화알루미늄·차이나 점토·활석·규석·규산질토·탄산칼슘 등)에 고정시켜 얹어지는 물에 녹지 않는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이 호에는 또한 특정 재료를 착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이거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류의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레이크 안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5.0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 여부 및 착색제 사용 여부
- ❖ 자료조사(화학용어사전)

레이크 안료 : 산성 염료, 염기성 염료 등을 침전제(전자에는 염화바륨 등의 금속염, 후자에는 몰리브덴인산, 텅스텐인산 등)로 불용화한 안료. 단순히 레이크라고도 한다. 염료의 수용액 중에 다양한 체질 안료를 혼합하고 그 위에 염료를 침착시킨 염부 안료(염색 레이크)와 체질 안료를 사용하지 않는 토너라는 안료가 있다.



오류사례

화장품 색조용

6.22

이산화티타늄을 기본재료로 한 안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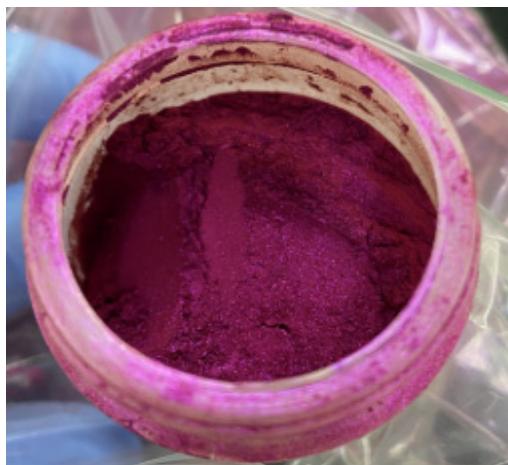
Titanium dioxide Pigment



HSK 2025	3206.19-0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206.4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이산화티타늄(건조기준 함량 80% 미만) 주성분에 Fluorophlogopite, 산화철 등으로 혼합 조제한 분홍색계 분말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색조 화장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206.1호에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착색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 표면처리하거나 황산칼슘·황산바륨이나 그 밖의 물질로 혼합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또한 안료로 사용하는데 적합하도록 하는 물리적 특성을 얻기 위하여 생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28류 주 제1호 가목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와 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제5호에 “제2826호부터 제2842호까지는 금속의 염, 암모늄염, 페록시염에만 적용한다. 겹염이나 착염은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제284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이산화티타늄(건조기준 함량 80% 미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Fluorophlogopite, 산화철 등으로 혼합 조제한 안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1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 여부 및 착색제 사용 여부

- ❖ 자료조사

-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산화력이 매우 크며, 흰색의 도료, 광촉매, 식품첨가제 등에 널리 쓰임
- Fluorophlogopite : 마이카 그룹에 해당하며, 화장품의 점도조절 및 분산제로 사용됨
- 산화철(Diiron trioxide): 화장품의 원료로 흑색, 황색, 적색의 형태로 사용됨



오류사례

화장품 색조용

6.23

유리 가루 Prepared glass powder



HSK 2025	3207.40-0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206.4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유리가루(Calcium aluminum borosilicate) 주성분에 Titanium dioxide, Tin oxide로 혼합 조제한 은백색 가루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색조 화장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7호에는 “조제 안료·조제 유백제(乳白劑)·조제 그림물감·법랑·유약·유약용 슬립·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에나멜공업·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207.40-0000호에는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알갱이·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 제(5)항에 “유리 프리트(glass frit)와 가루 상태·알갱이 상태·플레이크(flake) 상태의 여러 가지 유리[법랑·용융(鎔融 : fused)된 석영·그 밖의 용융(鎔融 : fused)된 실리카(silica)로 만든 유리를 함유하며, 착색이나 은백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요업·유리·금 속제품은 물론 그 밖의 목적용 도포제의 조제에 사용한다. (...) 그 밖의 여러 가지 유리 가루는 연마용·엽서의 장식용·크리스마스트리 장식용·착색 유리제품의 제조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리가루(Calcium aluminum borosilicate) 주성분에 Titanium dioxide, Tin oxide로 혼합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7.40-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착색제 사용 여부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lcium aluminum borosilic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65997-17-3 - 이 원료는 본래 칼슘 및 알루미늄실리케이트로 구성된 유리 - 배합목적 : 벌킹제 • Titanium dioxi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 13463-67-7 - 배합목적 : 착색제, 불투명화제, 자외선차단 |
|--|



오류사례

화장품 용제

6.24**시클로펜타실록산 혼합 용액**

Cyclopentasiloxanes solutions



HSK 2025	3208.90-903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910.00-9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휘발성 유기용제인 Cyclopentasiloxane(50% 초과)에 실리콘계 수지(Dimethicone)를 용해한 무색 투명 점조 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제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은 이 류의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성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을 제외한다]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휘발성 유기용제(Cyclopentasiloxane)에 실리콘계 수지를 용해한 것으로 휘발성 유기용제의 함량이 전 중량의 50%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 우선 검토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Cyclopentasiloxane(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 CAS No. 541-02-6
 - 배합목적: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용제
 - 품목번호: 2931.90호
 - Dimethicone(디메티콘)
 - CAS No. 63148-62-9
 - 배합목적: 기포방지제, 피부보호제, 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 용제
 - 품목번호: 3910.00호



오류사례

에센셜 오일

6.25

그레이프프루트 에센셜 오일

Grapefruit essential oil



HSK 2025	3301.19-0000	결정세율	기본 5%
당초결정	3301.29-0000 現 3301.29-9000	신고세율	기본 5%

1. 물품설명

- ❖ Grapefruit essential oil(자몽)의 갈색 투명 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방향성 물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1호에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앱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 분류되며, 소호 제3301.19호에는 "기타 감귤류의 정유"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유는 향료·식품과 그 밖의 공업에서 원료로 사용하며 그 원천이 식물이다. 보통 복합성분이며 알코올·알데히드·케톤(ketones)·페놀(phenols)·에스테르(esters)·에테르(ethers)와 테르펜(terpenes)을 여러 가지 비율로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정유는 테르펜(terpenes)의 제거로 방향성(芳香性)이 변성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대부분의 정유는 휘발성이며, 종이 위에 정유가 묻으면 곧 사라지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감귤류에 속하는 자몽으로부터 얻어진 정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1.1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01호의 정유 해당 여부
- ❖ 자료조사(Wikipedia & 두산백과)

- Grapefruit의 학명은 Citrus paradisi로서 Citrus fruit에 속함
- 자몽의 신선한 껍질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로 기분을 고양시키고 심신을 상쾌하게 만들어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전신이 나른하고 피로할 때 회복을 돋는 오일이다. …중략… 주요 화학성분은 리모넨(limonen), 베타-미르센(β -Myrcene) 등 모노테르펜계이다.



오류사례

방향성 조제품

6.26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HSK 2025	3302.90-0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301.29-0000 現 3301.29-9000	신고세율	기본 5%

1. 물품설명

- ❖ 방향성 물질인 Pentadecan-15-oxide(25~50%), Coumarine(10~25%), Vertivert essential oil(10~25%), Vertiverly acetate substance(5~10%), Linalool(1~5%), Vanillin(1~5%), Geranyl acetate(<1%)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점조 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방향성 조제품)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식품·음료공업(예: 과자·식품·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중략)...(5) 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레진·합성 향료)”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방향성 물질로 혼합 조제한 화장품 제조용 향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됨

3. 유의사항

- ❖ 제3301호의 정유인지, 제3301호로 조성된 방향성 조제품(제3302호)인지 검토

- ❖ 자료조사(wikipedia)

- Coumarine : 무색 결정 고체상으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바닐라향과 유사한 달콤한 향이 나거나 또는 다른 냄새에서 발현될 수도 있고 쓴맛 등을 낸다고 알려져 있다.
- Linalool : 많은 꽃과 향신료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발생 테르펜 알코올의 두가지 거울상 이성질체를 나타낸다.
- Vanillin : 바닐라빈에서 추출한 성분이다. 식품, 음료, 약품 등의 향료로서 합성 바닐린이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 Geranyl acetate : 무색의 액체이며, 향긋한 냄새나 과일향이 섞인 장미향이 나기도 한다. 농축된 액체는 약한 노란색을 띠기도 한다. 물에 불용이며, 몇 가지 유기 용제에 녹을 수 있다.
- Pentadecan-15-oxide : 안젤리카 뿌리 오일에서 소량 추출되며, 사향과 유사한 향으로 사용된다. 매우 비싼 동물성 사향의 대체품으로 사용된다.



오류사례

실내용 방향제

6.27

실내용 방향제

Preparations for perfuming rooms



HSK 2025	3307.49-000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3301.29-9000	신고세율	기본 5%

1. 물품설명

- ❖ Eucalyptus Globulus oil, Pine oil, Hinoki oil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액상을 갈색 병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450ml)
- ❖ 용도: 실내용 방향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호에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IV) 실내용 향을 첨가하거나 탈취한 조제품(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쿠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쿠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품은 정유의 혼합물을 소매포장한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4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실제 사용 목적 및 용도 확인

6.28**마스크팩**

Nonwoven articles, impregnated with cosmetics



HSK 2025	3307.90-4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304.9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부직포 원단을 얼굴 전체에 덮을 수 있도록 눈, 입 부분에 구멍을 뚫어 재단하여 화장품 성분(선인장줄기추출물, 정제수, 글리세린, 나이아신아마이드, 에탄올, 메칠프로판디올, 알란토인 등)을 함침시킨 마스크팩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매/pack)
- ❖ 용도 : 마스크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 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5)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표 제33류 주 제4호에서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을 침투·도포한 부직포의 마스크팩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7.90-4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3류 주 제4호 해당여부 검토

4.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 · 화장품 · 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

6.29

음이온 계면활성제

Anionic surface-active agents



HSK 2025	3402.39-000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3402.49-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음이온 계면활성제[N-(coconut oil acyl)-N-methyltaurine, sodium salts], 물로 혼합된 유백색 점조 액상
- ❖ 20°C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 이하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계면 활성 기능)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3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 제3402호 (1)항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 (중략)... 음이온(anionic) 활성제로서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알킬술폰화물·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alkylphenylethersulphonates); 알킬황산화물·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을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음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3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 유기계면활성제에 해당하는 성분인지의 여부

- ### ◆ 제34류 주 제3호 규정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다.

-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 ## ◆ 자료조사(환경공학용어사전)

- 음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표면 활성제, 아니온 계면활성제라고도 한다. 계면활성제 중에서 물에 녹으면 전리해 계면 활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음이온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수용액으로 했을 때 세정, 습윤, 유화, 기포, 가용화, 분산 등의 활성을 나타낸다. 황산에스텔염과 술폰산염류 등 그 종류도 다양하며 각종 공업에도 사용되고 있다. 배수 속에 흔입되면 거품이 발생하고 수질 오탁의 원인이 된다. 활성탄에 흡착시키거나 양이온성의 고분자 응집제로 사용하여 제거한다.

6.30**비이온 계면활성제**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HSK 2025	3402.42-900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3402.49-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계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의 무색 불투명한 반구상
- ❖ 20°C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 이하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402.42호에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지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종류수의 표면 장력을 4.5×10^{-2} N/m(45dyne/cm)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비이온(non-ionic) 활성제: 수용액 중에서 이온을 발생하지 않은 계면활성제이다. 이들의 물에 용해되는 성질은 분자 중에 친수성(親水性)이 강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와 지방성 알코올·지방산 또는 알킬페놀(alkylphenols)의 축합물; 지방산 아미드의 에톡시레이트(ethoxylate)"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3404호 해설서에 "계면활성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왁스성의 수용성 물품도 제외한다(제34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42-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유기계면활성제 해당 여부

- ❖ 자료조사(화학용어사전)

- 비이온 계면활성제
수용액 중에서 이온으로 해리하지 않고 분자 전체로서 계면활성을 나타내는 물질. 노니온 계면활성제라고도 한다. 폴리(옥시에틸렌) 알킬에테르와 다가 알코올을 친수기로 하는 고급 지방산 에스테르 등이 있다. 상온에서는 보통 물에 용해하고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여 탁해지는 것이 있다. 유화제, 분산제, 세정제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6.31**양쪽성 계면활성제**

Amphoteric surface agents



HSK 2025	3402.49-0000	결정세율	기본 8%
당초결정	3402.41-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Cocamidopropyl betaine(양쪽성 계면활성제) 수용액에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순물인 Sodium chloride가 소량 함유된 미황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 이하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49호에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종류수의 표면 장력을 4.5×10^{-2} N/m(45dyne/cm)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호 (Ⅰ)-(4) 해설서에 “양성(ampholytic) 활성제 : 용매의 조건에 따라 수용액 중에서 전리하여 음이온 활성제나 양이온 활성제의 성질을 나타내는 계면활성제이다. 이 이온의 작용은 광의의 양성 화합물(amphoteric compound)의 작용과 유사하다. 예: 알킬베타인(alkylbetaine)·술포베타인(sulphobetaine)을 함유하는 단백질·그 분해물·아미노카르복시산계 아미노-술폰산계·아미노황산계과 아미노인산계의 치환화합물”이라고 예시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양성 유기계면활성제인 Cocamidopropyl betain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402.49-0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유기계면활성제 해당 여부

❖ 제34류 주 제3호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 자료조사(화학용어사전)

- 양쪽성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음이온 계면활성제와 같은 무리의 이온성 계면활성제의 하나로, 양쪽성 전해질의 성질이 있는 계면활성제. 동일 문자 중에 음이온성과 양이온성의 해리를 갖고 일정한 등전점이 있다. 각종 양쪽성 전해질 구조를 갖는 유기화합물이 있어 샴푸, 린스, 유연제, 살균 소독제 등으로 사용된다.



오류사례

계면활성제

6.32

조제 계면활성제 Surface-active preparations



HSK 2025	3402.90-1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906.90-9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Acrylamide/Sodium Acryloyldimethyltaurate Copolymer 35~50%, C13-C14 Isoparaffin(유기용제) 20-30%, LAURETH-7 1-5% 물 등으로 혼합 · 조제한 불투명한 점조 액상의 조제 계면활성제
- ❖ 20°C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 45dyne/cm 이하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론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가 세분류됨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유기계면활성제는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화합물로서 섭씨 20°C에서 0.5%의 농도인 물에 혼합하여, 그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면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은 투명·반투명의 용액이나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하는 비율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친수기(親水基)와 소수기(疏水基)를 그 분자 중에 함유하고 있다(이 류의 주 제3호가목 참조). (...) 그러나 섭씨 20°C에서 농도 0.5%에 종류수의 표면 장력을 4.5×10^{-2} N/m(45dyne/cm) 이하로 낮출 수 없는 물품은 계면활성제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II)-(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계면활성제의 상호혼합물, 계면활성제를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분산한 것, 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을 포함하며,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 또는 분산성 때문에 각종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vii) 의료품과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제39류 주 제2호 바목에서 "제3402호의 유기계면활성제나 이들의 제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조제계면활성제 해당 여부

- ❖ 제34류 주 제3호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오류사례

계면활성제

6.33

조제 청정제 Cleaning preparations



HSK 2025	3402.90-3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402.90-1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Phosphoric acid, Citric acid, Mixed C8 Amphocarboxylates, 증점제,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무색투명 액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시설 세척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는 “(C) 청소나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 (i) 특히 위생용품·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 (...) 이 그룹의 물품은 소량의 비누나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 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3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계면활성제 첨가 여부 및 청정제 해당 여부



오류사례

인조왁스

6.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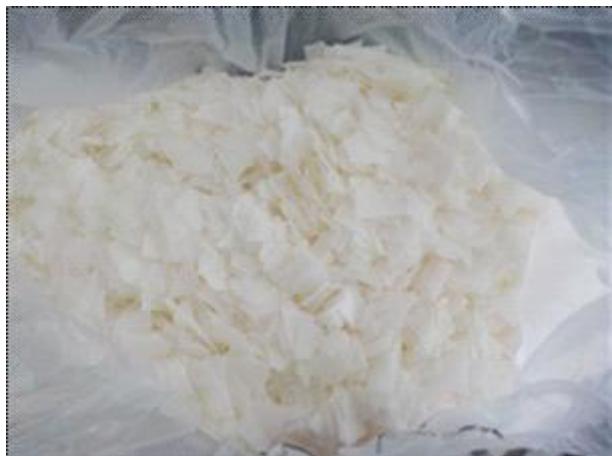
인조왁스 Other artificial waxes



HSK 2025	3404.90-1090	결정세율	양허 5.5%
당초결정	1521.90-2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혼합지방산(Palmitic acid, Stearic acid)과 글리세롤을 에스테르화하여 제조한 백색계 플레이크상
- ❖ 드롭핑 포인트 40°C 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 회전점도계 측정: 약 40.5cP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왁스는 「(1)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C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 보다 커서는 안된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 이 호에 포함되는 왁스로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s) · 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s)[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 · 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 · 지방성 아민 · 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를 예시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서 '그 밖의 인조 왁스'이므로 제3404.90-1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단일 지방산 여부 확인
- ❖ HS해설서 제2915호 제외규정 (c)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291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오류사례

인조왁스

6.35

인조왁스

Other artificial waxes



HSK 2025	3404.90-1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피토스테릴 알코올 및 지방성 알코올 혼합물과 Linoleic acid를 에스테르화하여 만든 불투명한 백색 반고상
- ❖ 드롭핑 포인트 40°C 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 용도: 화장품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10호에는 "인조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왁스는(1)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기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C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 보다 커서는 안된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 이 호에 포함되는 왁스로 "(5) 지방성 케톤(fatty ketones) · 지방성 에스테르(fatty esters)[예: 소량의 비누로 변성한 폴리에틸렌 모노스테아레이트 · 타르타르산과 아세트산에 의해서 에스테르화한(esterified) 혼합 글리세롤 모노디스테아레이트] · 지방성 아민 · 지방성 아미드의 혼합물로 구성된 왁스"를 예시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참고로, 제2915호에서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을 제2915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로서 "그 밖의 인조 왁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1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단일 지방산 여부 확인
- ❖ HS해설서 제2915호 제외규정 (c)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291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오류사례

조제왁스

6.36

조제왁스

Prepared waxes



HSK 2025	3404.90-2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Paraffin wax와 식물성 왁스 등으로 혼합 · 조제한 백색계 플레이크상의 조제왁스
- ❖ 드롭핑 포인트 40°C 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 용도: 화장품 첨가제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왁스는 「(1)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를 가져야 하며,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10°C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 (또는 10,000cP)보다 커서는 안된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제1521호에서 "(d) 동물성 왁스, 광물성 왁스나 인조왁스가 혼합된 식물성 왁스. 이들 혼합물은 일반적으로 제34류에 분류한다(보통 제3404호나 제3405호)."라고 제1521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Paraffin wax와 식물성 왁스 성분 등으로 만든 조제 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단일 지방산 여부 확인
- ❖ HS해설서 제1521호 제외규정 (d)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1521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d) 동물성 왁스 · 광물성 왁스나 인조왁스가 혼합된 식물성 왁스

- ❖ 관세율표 제3404호 왁스의 특성 해당여부 검토

HS해설서 제3404호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오류사례

조제왁스

6.37

조제왁스

Prepared waxes



HSK 2025	3404.90-2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402.49-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Arachidyl alcohol(wax), Behenyl alcohol, Arachidyl glucoside, Glucose 등으로 조성된 수불 용성 백색계 반구상의 조제 왁스
- ❖ 드롭핑 포인트 40°C 이상, 점도 10,000cP 이하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 왁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다목에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제 왁스를 규정하고 있음
-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성 물질·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 그러나 혼합하지 않은 동물성이나 식물성 왁스(정제하거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는 제외한다(제1521호). 혼합하지 않은 광물성 왁스나 광물성 왁스의 혼합물(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도 제외한다(제271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백색 반구상의 조제 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단일 지방산 여부 확인
- ❖ 관세율표 제3404호 왁스의 특성 해당여부 검토

HS해설서 제3404호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



오류사례

증합체

6.38

스티렌 중합체

Styrene-acrylate copolymer



HSK 2025	3903.90-9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402.19-0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Styrene-acrylate copolymer 주성분에 Coco-glucoside(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된 유백색 점조 액상의 에멀션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스티렌(styrene) -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共重合體)·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butadiene) - 스티렌(styrene)(ABS) 공중합체(共重合體)와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共重合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에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 · 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티렌-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에멀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9류 종합체에서는 '그 밖의 첨가제'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제39류 우선 검토
-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Primary form)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는 일차제품(primary form) 모양의 물품만을 분류한다. “일차제품(primary form)”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6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paste) 모양 : 이들은 완성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열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의한 “경화(curing)”가 필요한 기본적인 종합체이거나 경화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경화되어 있는 분산물(에멀션과 서스펜션) 용액이다. 이들 액체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에는 경화제(硬化劑 : hardener)(교차결합제)·공반응물과 촉진제 등의 “경화(curing)”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체 모양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의 것은 주형·압출성형 등에 사용하며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varnish)와 페인트의 기본 재료와 글루(glue)·농축제·엉김제 등으로도 사용한다.



오류사례

증합체

6.39

폴리에스테르 중합체

Other polyesters



HSK 2025	3907.99-9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Polyhydroxystearic acid의 미황색계 점조액상(증합도: 평균 5량체 이상)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5) 폴리에스테르(polyester)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상에 카복실산 에스테르 관능기(ester function)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 및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에 한정하여 적용된다."와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체나 페이스트(paste) [분산물(에멀션 ·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 해당 여부 검토
- ❖ 제39류 주 제3호 규정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오류사례

증합체

6.40

실리콘 중합체

Silicones



HSK 2025	3910.00-901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5.5%

1. 물품설명

- ❖ 폴리디메틸실록산(Polydimethylsiloxane)계 실리콘 오일의 미황색계 투명한 점조 액상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10.00-9010 호에 "실리콘 오일"을 세분류하고 있음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 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 그리스, 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의 범위에는 실리콘수지(제3910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 ·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가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오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1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 해당 여부 검토
- ❖ 제39류 주 제3호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오류사례

증합체

6.41

실리콘 중합체

Silicones



HSK 2025	3910.00-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824.99-9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실리콘 수지(Dimethicone), Disteardimonium hectorite, Triethyl citrate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페이스트상
- ❖ 용도: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0호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유한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실리콘은 안정성이 높고 액상, 반액상 또는 고형이며 실리콘유, 그리스, 수지 및 탄성중합체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라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의 범위에는 실리콘수지(제3910호)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 ·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가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 해당 여부 검토

- ❖ 제39류 주 제3호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오류사례

살균·소독제 조제품

6.42

화장품 보존제

Antiseptic agent



HSK 2025	3808.99-900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824.99-9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Sodium benzoate, Potassium sorbate, Water 등으로 혼합 · 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
- ❖ 용도 : 화장품 등의 보존제(곰팡이, 세균 등을 억제하는 방부제 역할)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주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걸죽한 액체 상태·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혼탁·분산되어 있거나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활성 물품을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녹인 것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벤조산나트륨과, 소르비탄 칼륨이 혼합된 것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해당하는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용 방부제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6.43

코코 글리세라이드

Coco-Glycerides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1516.20-201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혼합 지방산(C12-C18, 팜유 및 팜핵유)과 글리세린(유채유)이 에스테르 결합한 백색 알갱이상
- ❖ 드롭핑 포인트 40°C 미만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는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7)·(19)·(32)항 참조]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나 화합물은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설명한 조건 이외에,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약품에는 '(11) 글리세롤의 모노-·다-·트리- 지방산 에스테르(esters)의 혼합물 : 지방의 유화제(emulsifiers)로 사용. 단, 인조 왁스의 성격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제3404호)'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 특성을 가지지 않는 지방산 에스테르의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관세율표 제3404호 왁스의 특성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3404호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 보다 커서는 안 된다.

-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Hydrogenated Coco-Glycerides
 - CAS no. : 91744-42-2
 - 이 원료는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코코넛오일의 모노, 다이 및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혼합물이다.
 - 배합목적 : 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6.44

에틸 스테아르산

Ethylhexyl stearate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2915.70-209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Palmitic acid, Stearic acid와 Ethylhexyl alcohol을 에스테르 반응시켜 제조한 무색투명 액상의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
- ❖ 구성상 단일 성분이 아닌, Ethylhexyl stearate, Ethylhexyl Palmitate의 두 가지 성분 확인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물이 아닌 혼합물은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산 에스테르 혼합물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2-Ethylhexyl Palmitate(PubChem)
 - CAS NO: 29806-73-3
 - synonyms: Ethylhexyl palmitate, Palmitic acid, 2-ethylhexyl ester
 - MF: C₂₄H₄₈O₂
 - Molecular Weight: 368.6g/mol
- 2-Ethylhexyl Stearate(PubChem)
 - CAS NO: 22047-49-0
 - synonyms: Ethylhexyl stearate, Stearic acid, 2-ethylhexyl ester
 - MF: C₂₆H₅₂O₂
 - Molecular Weight: 396.7g/mol
- Fatty acids, C16-18(even numbered), 2-ethylhexyl esters(ECHA)
 - CAS NO. 91031-48-0
 - MF: C₂₄H₄₈O₂ TP C₂₆H₅₂O₂
 - Composition: UVCB(복합다성분물질)

6.45**운모 조제품**

Mica preparations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206.49-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운모(Mica)분말을 Triethoxycaprylylsilane으로 표면 처리한 회백색 고운 가루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화장품 충전재)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본 물품은 화장품 제조 시 충전재로 사용되는 것으로,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206호에 해당하지 않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Triethoxycaprylylsilane으로 표면처리한 운모(Mica) 분말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착색제로 사용되는지 여부 검토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
 -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6.46**폴리옥시알킬렌 알킬 에테르**

Polyoxyalkylene alkyl ether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402.42-9000	신고세율	양허 6.5%

1. 물품설명

- ❖ 무색 투명 액상의 Polyoxyalkylene alkyl ether
- ❖ 물에 용해되지 않으며, 평균 중합도는 약 3량체에 해당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 또한, 이 호에서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s) · 석유솔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을 제외하고 있음
-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서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 분류되는 그 밖의 합성중합체는 평균 5량체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중합도가 평균 5량체 이상의 합성중합체 해당 여부 검토

- ❖ 제39류 주 제3호

3.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라. 실리콘수지(제3910호)

- ❖ 제34류 주 제3호(물에 용해성 여부)

3.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

6.47**가수분해 실크 에틸 에스테르**

Ethyl ester of Hydrolyzed Silk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504.00-209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Ethyl ester of hydrolyzed silk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투명 액상
- ❖ 단백질 함량(건조물 기준) : 약 89.9 %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헤어케어 제품 제조용)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본 물품은 Ethyl ester of hydrolyzed silk에 에탄올을 혼합하여 헤어 에센스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제한 것임
- ❖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504호의 "그 밖에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에는 조제품은 분류되지 않음
- ❖ 제3504호의 용어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자료조사(화장품성분사전)

-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에틸에스터
 - 영문명: Ethyl ester of hydrolyzed silk
 - 이 원료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와 에틸알코올의 에스터이다
 - 배합목적 : 헤어컨디셔닝제, 피부컨디셔닝제(기타)
- 하이드롤라이즈드실크
 - 산, 효소 혹은 다른 가수분해 방법으로 얻은 실크 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이다.

6.48**펜타글리칸 조제품**

Pentaglycan preparation



HSK 2025	3824.99-9090	결정세율	양허 6.5%
당초결정	3504.00-209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Glycosaminoglycan, Sodium Hyaluronate, Benzoic acid, Phenoxyethanol, Dehydroacetic acid,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투명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 ❖ 용도: 화장품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3. 유의사항

- ❖ 제3504호는 펩톤과 기타 단백질계 물질이 분류되므로 화학적으로 단일 하지 않은 물품이 혼합된 것은 제3824호를 검토
- ❖ HS해설서 제2915호 제외규정 (c)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2915호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중략)…

(c) 글리세롤 모노-(mono-), 디-(di-)와 트리스테아레이트(tristearates)의 혼합물의 지방 유화제(인조 왁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3404호, 그 밖의 것은 제3824호)

- ❖ 관세율표 제3404호 왁스의 특성 해당 여부 검토

HS해설서 제3404호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 그리고
-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 보다 커서는 안 된다.

6.49

파이토액트 릴리퍼

PhytoAct Reliever



HSK 2025	1518.00-9090	결정세율	기본 8%
경합세번	1302.19-9099	신고세율	기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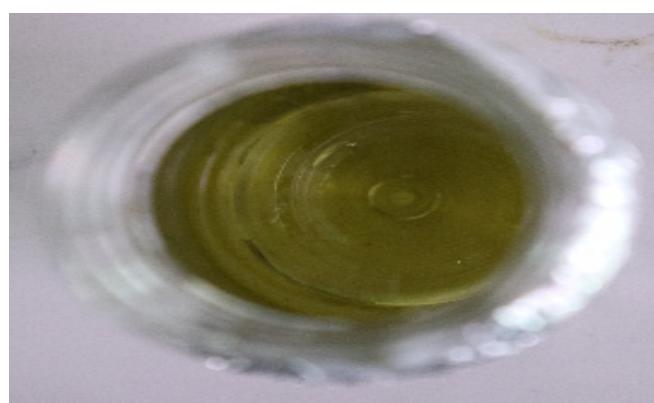
1. 물품설명

- ❖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오일*에 녹두와 귀리를 혼합 · 침적한 후 여과하여 보존제를 첨가한 녹황색 오일**

* Caprylic/Capric Triglyceride : 글리세린과 카프릴릭산 및 카프릭산의 혼합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된 트리글리세라이드

** Caprylic/Capric Triglyceride 90%이상(피부컨디셔닝제), Phaseolus Radiatus Seed Extract(피부컨디셔닝제), Avena Sativa (Oat) Meal Extract(피부컨디셔닝제), Phenoxyethanol(착향제, 보존제), Ethylhexylglycerin(보존제)로 구성

- ❖ 제조공정 : 오일, 녹두, 귀리 비율을 2:1:1로 혼합한 후 65°C에서 3시간 방치→ 침적 → 여과→ 혼합(여과액 98.9%, 보존제] → 검사 → 포장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고,
- ❖ 본건 물품은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오일”에 녹두와 귀리 성분이 보강된 “화장품 원료용 오일”로서,
- ❖ 주성분인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은 자체가 피부컨디셔닝(수분차단제)용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일이 단순히 용매로 작용하여 녹두와 귀리의 특정 성분만을 추출한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로 분류하기보다는 제15류의 “오일 조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화장품 원료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유지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6.50**보타니칼 릴리프 오일**

EL-5-Botanical Relief Oil



HSK 2025	1518.00-9090	결정세율	기본 8%
경합세번	1516.20-2090 1517.90-9000	신고세율	기본 8%

1. 물품설명

- ❖ 팜액유에서 얻어진 Caprylic acid와 Capric acid를 글리세린과 리에스테르화시켜 제조한 중쇄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99.59%에 아르간커넬오일 0.1%, 녹차씨오일 0.1%, 달맞이꽃 오일 0.1%, 동백나무씨 오일 0.1%, 비타민나무 열매 오일 0.01%를 혼합한 무색투명 오일상
- ❖ 용도 : 화장품 제조용 원료





2.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됨
- ❖ 본건 물품은 리에스테르화한 오일에 달맞이꽃 오일, 녹차씨 오일, 동백나무씨 오일 등을 첨가하여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1518호의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에 해당함
-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성 기름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3. 참고사항

- ❖ 2024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

7

Chapter

참고자료

-
1. 품목분류 관련 검색자료
 2. 화장품 종별코드 및 유형





참고

품목분류 검색 방법 조회 안내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검색엔진 조회가능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CLIP). At the top, there are search bars for '종합검색' (General Search) and '세번·상품검색' (Search by Number or Product), both with magnifying glass icons. Below the search bars are several menu tabs: '법령·판례 등' (Law and Judgments), '관세정보' (Customs Information), '세계HS' (Worldwide HS), '관세평가' (Customs Evaluation), '편의기능' (Convenience Functions), '새소식' (Newspaper),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and '전체메뉴' (Full Menu). A large central banner features the text '모든 관세법령정보를 이곳에!!!' (All customs law information is here!!!) with a hand pointing at a laptop displaying a digital interface. Below the banner are several circular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services: 관세 관련법령, 무역 관련법령, 외국인 관련법령, 세관장 확인, 내국세 관련법령, 행정 관련법령, 통합광고, and 행정규칙. Below these are more service icons: 빠른서비스 (Quick Service), 수입통관, 수출통관, 환급, FTA, AEO, 특수목적, 여행자용품, 국제우편물, 이사용품, and 별도. At the bottom, there are links for '최신법령', '최신판례·결정례', '최신품목', and '최신평가'. There is also a section for '행정예고' (Administrative Notice) with links for '법령질의' (Law Inquiry) and '평가질의' (Evaluation Inquiry). A footer note states: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 dated 2023-04-03,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dated 2023-04-06, and the period '2023.04.02~2023.04.08'.

❖ 관세율표(속견표)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속견표' (Tariff) search results page for Korea in 2025. The left sidebar includes a '세계HS' (Worldwide HS) section with a tree icon and a 'HS정보' (HS Information) section with a star icon.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table of tariff rates for various commodity codes. The columns include the code number (e.g., 0, 1, 2, 3, 4, 5, 6, 7, 8, 9) and descriptions such as '산동물' (Live animals), '육과식용설육' (Meat and edible offal), '어패류' (Crustaceans), '낙농품·조란·천연' (Dairy products, eggs, and natural), '기타 동물성 생산물' (Other animal products), '산수육·꽃채소' (Mountain lamb, flowers), '채소' (Vegetables), '과실·건과류' (Fruit, dried fruit), and '커피·향신료' (Coffee, perfume). The right side of the table includes flags of various countries and a link to 'Home > 세계HS > HS정보 > 속견표'.

❖ 관세율표 HS 코드 조회

관세법령정보포털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통합검색 | | 세면·상품검색 | | 상세검색

법령·판례 등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세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국내관세율 상세목록(UI-ULS-0201-005Q)						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HS정보	제06부 화... 해설서 > 제3304호 미... 해설서 > 제3304호 미... 해설서						<input type="text" value="검색 3304"/>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건표 HS해설서 관세율표 HS비교 세계HS개정표 HS협약 개정자료 품목분류 자료실 HS길라잡이 <p>HS 가이드</p> <p>품목분류 국내사례</p> <p>품목분류 외국사례</p> <p>FAQ</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품목번호</th> <th colspan="2">품명 [] 한국 2025년]</th> <th rowspan="2">기본세율</th> <th rowspan="2">단위 양허 세율</th> </tr> <tr> <th>한글</th> <th>영문</th> </tr> </thead> <tbody> <tr> <td>3304</td> <td>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pedicure)용 제품류</td> <td>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td> <td></td> <td></td> </tr> <tr> <td>3304 10</td> <td>입술화장용 제품류</td> <td>Lip make-up preparations</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10 1000</td> <td>립스틱</td> <td>Lipsticks</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10 9000</td> <td>기타</td> <td>Other</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20</td> <td>눈화장용 제품류</td> <td>Eye make-up preparations</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20 1000</td> <td>아이섀도</td> <td>Eye shadows</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20 9000</td> <td>기타</td> <td>Other</td> <td>8%</td> <td>C 6.5% E1 4.6%</td> </tr> <tr> <td>3304 30</td> <td>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td> <td>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td> <td></td> <td></td> </tr> <tr> <td>3304 30 1000</td> <td>네일에나멜</td> <td>Nail enamels</td> <td>8%</td> <td>C 6.5%</td> </tr> </tbody> </table>						품목번호	품명 [] 한국 2025년]		기본세율	단위 양허 세율	한글	영문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pedicure)용 제품류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Lip make-up preparations	8%	C 6.5% E1 4.6%	3304 10 1000	립스틱	Lipsticks	8%	C 6.5% E1 4.6%	3304 10 9000	기타	Other	8%	C 6.5% E1 4.6%	3304 20	눈화장용 제품류	Eye make-up preparations	8%	C 6.5% E1 4.6%	3304 20 1000	아이섀도	Eye shadows	8%	C 6.5% E1 4.6%	3304 20 9000	기타	Other	8%	C 6.5% E1 4.6%	3304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 30 1000	네일에나멜	Nail enamels	8%	C 6.5%
품목번호	품명 [] 한국 2025년]		기본세율	단위 양허 세율																																																						
	한글	영문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 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pedicure)용 제품류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and preparations for the care of the skin (other than medicaments), including sunscreen or sun tan preparations;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Lip make-up preparations	8%	C 6.5% E1 4.6%																																																						
3304 10 1000	립스틱	Lipsticks	8%	C 6.5% E1 4.6%																																																						
3304 10 9000	기타	Other	8%	C 6.5% E1 4.6%																																																						
3304 20	눈화장용 제품류	Eye make-up preparations	8%	C 6.5% E1 4.6%																																																						
3304 20 1000	아이섀도	Eye shadows	8%	C 6.5% E1 4.6%																																																						
3304 20 9000	기타	Other	8%	C 6.5% E1 4.6%																																																						
3304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3304 30 1000	네일에나멜	Nail enamels	8%	C 6.5%																																																						

❖ HS 코드에 대한 HS해설서 내용

제3301호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
제3302호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
제3303호 향수와 화장수
**제3304호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
제3305호 두발용 제품류
제3306호 구강·치과·위생용 제품류[...
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

3304 99 3000 어린이용 제품류	Baby cosmetics	8%	C 6.5%
3304 99 9000 기타	Other	8%	C 6.5%

제3303호 | 제3305호 | 주요세율보기

자료출처 : 2022년도 WCO 해설서

통칙 부 해설 류 해설 **호 해설** 국문 영문 기타

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20 - 눈화장용 제품류
3304.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 기타
3304.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4.99 - 기타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판(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조품
(2) 아이섀도·마스카라·눈썹 그리는 연필과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얼굴용 파우더(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텁텁파우더(talcum powder)를 포함한다)·그 밖의 파우더와 그리스 페인트·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클린싱크림(cleansing cream)·스킨푸드(skin food)·얼굴로얼걸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skin tonic)이나 보디로션·소매용 포장에 넣은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적(적)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아드를방지용 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한다)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이지만 여드름에 대한 일자적인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의 활성(active) 성분을 충분하게 넣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식초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안내

관세법령정보포털 CUI(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통합검색 | 세변·상품검색 | 상세검색

법령·판례 등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세계HS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HS정보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HS가이드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전자전자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해외 품목분류 해설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관세율표 용어 가이드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품목분류확인방법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품목분류 국내사례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품목분류 외국사례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FAQ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제목 품목분류 확인방법(UI-ULS-0404-009Q)

Home > 세계HS > HS 가이드 > 품목분류확인방법

제작일 2023-06-26

제작부서 관세청 관세법령정책과

제작자 관세청 관세법령정책과

제작내용

I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를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 인 효력을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최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I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 수출입을 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사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관세청전자등록시스템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건본 등 우편 접수처: 우305-501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당자 앞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 항목

- (필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서식 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서식 읍지) 물품설명서
 - (필수) 신청물품의 견본

원칙

-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분말) 300~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1점 이상

예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 미제출 사용서 / 대체사진 3매(컬러)

❖ 산업별 가이드북 조회 화면

관세법령정보포털 CUI(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통합검색 | 세변·상품검색 | 상세검색

법령·판례 등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세계HS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HS정보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HS가이드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전자전자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반도체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해외 품목분류 해설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관세율표 용어 가이드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품목분류 국내사례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품목분류 외국사례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FAQ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제목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UI-ULS-0404-025Q)

Home > 세계HS > HS 가이드 >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제작일 2023-06-26

제작부서 관세청 디스플레이 관리과

제작자 관세청 디스플레이 관리과

제작내용

I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전자제품은 첫 인상인 디스플레이(Display)는, OLED 세계시장 점유율은 83% 등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제기준 신설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22.1.1.부터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국제기준이 신설(제8524호)되어,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1권>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22년 새롭게 바뀐 '디스플레이 모듈(제8524호)'와 이를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원부자재 등 총 285종의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K)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수출입 통관이나 무역거래, 다양한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작성 등에 필수적인 정보로, 기존 품목번호(HSK)와 물품 정보가 있다면 이 지침서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빠르게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1.1. 기준으로 작성되어 향후 HSK 개정이나 품목분류 해석이 변경되는 경우 HSK 2022 내용 부분이 달라 질 수 있음

<2권> 디스플레이 기술정보 / 표준용어집
 품목분류를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상품 정보로, 디스플레이 기초 상식을 비롯해 최신 기술정보와 국내 최고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편집한 '디스플레이 표준용어집 (한국디스플레이 산업협회 제공)'을 함께 담고 있어 수출입 기업은 물론 대학생 등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권

2권

▶ 버튼을 누르시면 2권으로 이동합니다.

❖ 품목분류 국내사례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CILP search interface for domestic case law. The left sidebar has a red box around the '제품분류 국내사례' (Domestic Case Law by Product Classification) section. The main search area has fields for '검색번호' (Search Number), '시행일자' (Effective Date), '품명' (Product Name), and '결정사유' (Reason for Decision). Below these are tabs for '전체' (All), '위원회 결정사항' (Decisions by Committee), and '협의회 결정사항' (Decisions by Conference). A note at the bottom says '첨네일 기능주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앤시파일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Ctrl + F5)'.

시행일자	시행기관	참조번호	결정세번	이미지건수	품명
2016-06-15	관세평가분...	품목분류2과...	3304 99-1000	1	Skin care cosmetic; LIQUID BODY LUFRA; 18102717; U.S.A
2013-10-11	관세평가분...	품목분류2과...	3304 91-900...	0	Skin care cosmetics, powder; SPIRULINA COOLING MASK(BULK)

시행일자	시행기관	참조번호	결정세번	이미지건수	품명
2016-05-04	관세평가분...	품목분류2과...	3304 99-1000	0	Skin care cosmetics; Ultra Facial Oil-Free Cleanser 30ml

❖ 품목분류 해외사례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CILP search interface for international case law. The left sidebar has a red box around the '제품분류 외국사례' (International Case Law by Product Classification) section. The main search area has fields for '시행일자' (Effective Date), '참조번호' (Reference Number), and '검색어' (Search Term). Below these are tabs for '전체' (All), '미국' (USA), '유럽연합(EU)' (EU), '영국' (UK), '중국' (China), '일본' (Japan), '대만' (Taiwan), '칠레' (Chile), '호주' (Australia), and '태국' (Thailand). A note at the bottom says '첨네일 기능주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앤시파일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Ctrl + F5)'.

시행일자	참조번호	결정세번	이미지건수	최신
2025-04-17	NY N347026	3304 99.5000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urmeric Roll Cleanser Party Kit
2025-02-18	NY N345388	3304 99.5000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ei Fu Massage Lotion from the United States
2024-12-16	NY N344469	3304 99.5000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Glitter Mist Spritz and Glitterbug Set from the United Kingdom
2024-06-25	NY N340492	3304 99.5000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a facial serum and a facial cream from the United Kingdom
2024-04-24	NY N339203	3305.90.0000; 9903.88.03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Body Doodlers Face and Body Gel Crayons and Hair Doodlers H...
2023-08-23	NY N334319	3304 99.5000; 9903.88.03	0	RE: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Truly Clear Acne Patch from China



참고2

화장품 종별코드 및 유형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제공자료)



종별코드	유형
T001~T010	3세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
T001	영유아용 샴푸
T002	영유아용 린스
T003	영유아용 로션
T004	영유아용 크림
T005	영유아용 오일
T006	영유아 인체세정용 제품
T007	영유아 목욕용 제품
T011~T020	목욕용 제품류
T011	목욕용 오일
T012	목욕용 정제
T013	목욕용 캡슐
T014	목욕용 소금류
T015	버블 배스(bubble baths)
T02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T021~T030	인체 세정용 제품류
T021	폼 클렌저(foam cleanser)
T02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T023	액체 비누(liquid soaps)
T024	외음부 세정제
T025	물휴지. 다만, 위생용 물티슈와 의료용 물휴지 제외
T026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종별코드	유형
T030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T031~T040	눈 화장용 제품류
T031	아이브로(eyebrow) 제품
T032	아이 라이너(eye liner)
T033	아이 색도(eye shadow)
T034	마스카라(mascara)
T03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T036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eye-lash permanent wave)
T040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T041~T050	방향용 제품류
T041	향수
T044	콜롱(cologne)
T050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T051~T060	두발 염색용 제품류
T051	헤어 틴트(hair tints)
T05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K053	염모제
K054	탈염 · 탈색용제품
T060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T061~T080	색조 화장용 제품류
T061	볼연지
T06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T064	리퀴드 파운데이션(liquid foundation)
T065	크림 파운데이션(cream foundation)
T066	케이크 파운데이션(cake foundation)
T067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종별코드	유형
T068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T069	립스틱
T070	립라이너(lip liner)
T071	립글로스(lip gloss)
T072	립밤(lip balm)
T073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T074	분장용 제품
T075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T080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T081~T099, T381	두발용 제품류
T08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T082	헤어 톤ик(hair tonics)
T083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T084	헤어 크림
T085	헤어 로션
T086	헤어 오일
T087	포마드(pomade)
T088	헤어 스프레이
T089	헤어 무스
T090	헤어 왁스
T091	헤어 젤
T092	샴푸
T093	린스
T094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hair permanent wave)
T095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T096	흑채

종별코드	유형
T097	헤어 트리트먼트(hair treatment)
T098	헤어 팩(hair pack)
T099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T381	헤어 에센스(hair essence)
T100~T110	손발톱용 제품류
T100	베이스코트(basecoats)
T101	언더코트(undercoats)
T102	네일폴리시(nailpolish)
T103	네일에나멜(nail enamel)
T104	탑코트(topcoats)
T105	네일 크림
T106	네일 로션
T107	네일 에센스
T108	네일폴리시 · 네일에나멜 리무버
T109	네일 오일
T110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T111~T120	면도용 제품류
T11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T113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T114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T115	셰이빙 폼(shaving foam)
T120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T121~T140	기초화장용 제품류
T121	수렴 · 유연 · 영양 화장수(face lotions)
T122	마사지 크림
T123	에센스



종별코드	유형
T124	오일
T125	파우더
T126	바디제품
T127	팩
T128	마스크
T129	눈 주위 제품
T130	로션
T131	크림
T132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리무버
T133	클렌징 오일 메이크업 리무버
T134	클렌징 로션 메이크업 리무버
T135	클렌징 크림 메이크업 리무버
T136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T140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T201~T202	체취 방지용 제품류
T201	데오도런트
T20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T211~T220	체모 제거용 제품류
K211	제모제
T212	제모왁스
T220	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K001~K381 코드를 사용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



발 행 일 2025.12

발 행 인 관세청장 이명구

총 괄 심사국장 손성수

기 획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자 문 목원대학교 교수 양재찬

제작 및 편집 세원심사과 정상우, 임덕호, 유종숙, 이기범

감 수 · 지 원 관세평가분류원 조인순, 박광배, 중앙관세분석소 고동영
대한화장품협회 임종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주현, 이송희

